발간 등록 번호

11-B260003-0001-25-08

Happiness for ALL, with Global KOICA

2016 No.2

국제개발협력

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 한국국제협력단

WORLD FRIENDS KOREA

국제개발협력

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2016년 제2호

한국국제협력단

편집자의 글

지난 2015년 9월 UN총회에서 SDGs 16개 목표(goals)와 169개 세부목표(targets)가 공식 채택되고, 최근 3월 유엔통계위원회(UN Statistical Commission, 이하 UNSC)에서 동 SDGs 이행 및 평가를 위한 230개 최종지표를 발표하였다. 동 지표는 '경제성장, 사회발전, 환경보호'라는 3대 축을 중심으로 조화를 지향하고 있다. 아울러 SDG는 목표 이행 위한 후속조치 및 평가체계의 기본원칙, 그리고 글로벌지표 체계에 기초하여 주기적으로 SDGs 목표 이행을 점검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7월 11일부터 20일까지 뉴욕에서는 SDGs 이행 점검을 위해 유엔 산하의 고위급정치포럼(High-Level Political Forum, HLPF) 정부간 회의가 개최되었다.

따라서 금번 국제개발협력지 2호에서는 **'SDGs 최종지표와 모니터링체제: 변화와 도전과제'**라는 주제로, SDGs 최종지표의 변화된 특징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SDGs의 효과적인 이행과 모니터링을 위한 우리의 도전과제는 무엇인지를 고찰해봄으로써, 지난 2015년부터 개발협력포럼을 통해 논의를 진행해온 SDGs 체제 및 우리의 대응전략에 대한 논의의 마지막 장으로 기획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번 협력지에서는 SDGs 최종지표의 변화된 특징 및 이행가능성을 '경제성장, 사회발전, 환경보호'라는 3대 축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동시에, 이러한 SDGs의 이행에 대한 후속조치 및 평가(Follow-up and refview) 메커니즘은 무엇이고 한국의 SDGs 모니터링 및 보고 체계는 어떻게 준비되어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본 호의 첫 번째 원고인 **'SDGs 지표체계와 모니터링: 불평등성 완화 논의를 중심으로 (김지현)'**에서는 SDGs 지표의 수립과정을 정리하고, 기존에 제안되었던 지표들과 지난 3월 확정된 최종지표간의 변경 내용을 구성적 측면과 내용적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을 시도하였다. 특히 내용상에 있어 '2030 의제'의 핵심원칙이라 할 수 있는 불평등(Inequality) 해소에 있어 세부목표와 지표의 변경 사이의 간극에 초점을 맞추어 특징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SDGs 최종지표 내용과 이행의 실제: 환경보호 (홍은경)'**에서는 SDGs 17개 목표 중에서 환경과 관련한 목표는 무엇인지를 살펴봄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중요시하는 환경이슈를 파악하고 동 이슈관련 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세부목표와 이행지표는 무엇인지를 고찰하였다. 또한 현재 환경관련 목표체계가 갖는 한계점이 무엇이지를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SDGs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주요규범으로서 제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SDGs 세부목표와 이행지표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함을 주문하였다.

세 번째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점검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 모색 (박영실)'**에서는 '2030 의제'의 주요 4대 부문 중 하나인 '후속조치 및 평가' 부문에 초점을 맞추어, 앞으로 본격적인 SDGs 이행에 앞서 우리 정부를 비롯한 시민사회, 학계, 기업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나가는데 있어 고려해야할 핵심사항이 무엇인지를 고찰하였다. 아울러 신뢰할만한 세분화된 고품질의 데이터 생산 및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국제 흐름에 발맞추어 SDGs 데이터의 생산, 관리, 모니터링 역할을 맡고 있는 통계청의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섹터부문의 첫 번째 원고인 **'SDGs 지표 데이터 이용가능성(Data Availability) 분석 (김수진)'**에서는 SDGs 글로벌 지표체계 수립과정에서의 진행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취지로, SDGs 지표의 데이터 이용가능성과 실제 간의 간극(gap)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최근 3월 공개된 IAEG-SDGs 보고서에서 제시된 Tier1 지표들을 대상으로 데이터 접근성(dada accessibility), 국가포함범위(country coverage), 데이터빈도수(data frequency) 등에 대한 세부분석을 통해 데이터 이용가능성(data availability)에 대한 종합 분석결과를 도출하였다.

다음 원고인 **'해외긴급구호의 법적 기반 및 운영체계 연구: 일본, 호주, 스위스를 중심으로 (권구순, 홍문숙)'**에서는 중장기적으로 해외긴급구호대(KDRT) 운영의 질적 개선을 위해 주요 선진공여국 중 권역별로 일본(아시아), 호주(영미), 스위스(유럽)을 선정하여 인도적 지원 및 긴급구호의 법제와 정책, 운영내용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재난취약국 대상 국가협력전략(CPS) 수립시, 재난경감의 반영 및 민간섹터와 다양한 협력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시사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국제개발협력: 유니레버의 공유가치 창출 활동사례를 중심으로 (이효정)'**에서는 포용적인 경제, 사회, 환경발전을 위한 기업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SDGs 체제 하에서, 민간기업이 기업 고유 비즈니스 활동의 확장적 개념에서 어떻게 개발도상국의 개발협력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다국적 식품회사인 유니레버(Unilever)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추후 우리나라의 민관협력 사업의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번 2호는 '목표-세부목표-지표'라는 SDGs 체계가 갖추어진 현재, 우리가 앞으로 본격적으로 이행해나가야할 최종지표의 내용은 무엇이고, 이를 모니터링 및 평가하기 위한 메커니즘과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전반적으로 소개하고자 기획되었다. 본 호가 독자들로 하여금 향후 SDGs의 효과적인 이행 및 모니터링 방안에 대해 보다 폭넓은 고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2016년 7월

KOICA 연구개발팀

본 원고의 내용은 한국국제협력단의 공식적인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Contents

Ⅰ. 개발협력 이슈

1. SDGs 지표 체계와 모니터링: 불평등성 완화 논의를 중심으로…… 3
김지현 (KOICA 연구개발팀 선임연구원)

2. SDG 최종 지표 내용과 이행의 실제: 환경보호…… 15
홍은경 (KOICA 연구개발팀 선임연구원)

3.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점검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 모색…… 45
박영실 (통계청 통계개발원 통계사무관)

Ⅱ. 섹터

1. SDGs 지표 데이터 이용가능성(Data Availability) 분석…… 79
김수진 (KOICA 연구개발팀 연구원)

2. 해외긴급구호의 법적 기반 및 운영체계 연구: 일본, 호주, 스위스를 중심으로……115
권구순 (서울사이버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홍문숙 (글로벌발전연구원 ReDI 지속발전협력본부 본부장)

3.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국제개발협력: 유니레버의 공유가치 창출 활동사례를 중심으로……141
이효정 (KOICA 농어촌개발팀 과장)

Ⅲ. KOICA 개발협력자료 이용

1. 한국국제협력단(KOICA) ODA도서관 ····· 161
2. KOICA ODA도서관 2016년도 학술DB 목록 ····· 162
3. KOICA 2016년 4월~2016년 7월 발간물 목록 ····· 164
4. KOICA 통합원조정보공유시스템 이용 ····· 168
5.『국제개발협력』 원고 기고 방법 ····· 169
6.『국제개발협력』 원고 집필 규정 ····· 170

I

개발협력 이슈

1. SDGs 지표 체계와 모니터링: 불평등성 완화 논의를 중심으로
김지현 (KOICA 연구개발팀 선임연구원)
2. SDG 최종 지표 내용과 이행의 실제: 환경보호
홍은경 (KOICA 연구개발팀 선임연구원)
3.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점검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 모색
박영실 (통계청 통계개발원 통계사무관)

SDGs 지표 체계와 모니터링 : 불평등성 완화 논의를 중심으로

김지현 (KOICA 연구개발팀 선임연구원)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지표 수립과정과 주요 기관
Ⅲ. 지표의 구성
Ⅳ. 지표의 변경내용
Ⅴ. 지표의 특징: 불평등성 논의를 중심으로
1. 불평등성 논의
2. 지표, 글로벌 모니터링, 국가 간 비교
Ⅵ. 결론
참고문헌

Ⅰ. 들어가며

2016년 3월 UN 통계위원회 (UN Statistical Commission, 이하 UNSC)는 2030 지속가능개발 의제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이하 2030 의제)의 달성을 위한 17대 목표 및 169개 세부목표를 실천할 시작점으로 글로벌 지표체계를 수립하는데 합의했다. 동시에 탄탄하고 양질의 지표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속가능개발목표를 위한 기관 간 및 전문가 그룹 (Interagency and Expert Group for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IAEG-SDGs)의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임에도 합의했다.

3월 합의에 이어 IAEG-SDGs는 지난 4월 UN 통계위원회가 합의한 지속가능개발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의 글로벌 지표를 이행하기 위한 첫발걸음을 내딛었다. IAEG-SDGs는 멕시코시티에서 개최된 3차 회의에서 데이터 확보여부와 방법론에 따라 지표를 구분하고 향후 15년간 동 지표체계를 활용하기 위한 역량강화를 논의하기 시작했다. IAEG-SDGs는 향후 회원국들이 글로벌 지표의 수정을 위해 제안한 프로포절을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이러한 검토과정에서 방법론의 개방 및 정의와 기준 등을 정하여 그 계획과 결과를 보고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2016년 3월 UNSC의 합의와 4월 IAEG-SDGs의 향후 업무일정에 대한 발표는 SDGs를 이행해가는 퍼즐의 마지막 부분을 완성한 것이라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미완성의 지표체계와 지표와 세부목표 간의 불일치 문제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향후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글은 지표의 수립과정을 정리하고, 확정된 지표를 구성상의 완성도와 내용상 변경으로 나누어 분석을 시도하였다. 특히, 내용에 있어서 2030의제의 핵심원칙이라 할 수 있는 불평등의 해소를 중심으로 세부목표와 지표의 변경 사이의 간극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이 글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우선 II장에서는 SDGs 지표의 수립과정과 주요 기관들의 역할을 정리한다. III장에서는 지표의 구성을 Tier 체계로 나누어 분석하고, IV장에서는 기존에 제안되었던 지표들과 최종지표의 변경 내용을 정리하고, V장에서는 지표에 반영된 불평등성 논의를 중심으로 특징을 살펴보았다. VI장은 결론으로 향후 주요 일정을 포함하고 있다.

II. 지표 수립과정과 주요 기관

SDGs 지표 수립은 UNSC가 2015년 3월 구성한 IAEG-SDGs의 보고서를 UNSC가 승인하는 절차에 따라 수립되었다. IAEG-SDGs는 28개 국가[1]의 국가통계기관(National Statistics Organization, 이하 NSO)의 대표로 구성되었으며, 현재 MDGs의 글로벌 이행보고를 담당하고 있는 국제 및 지역기구, 지역위원회의 대표가 옵저버 자격으로 참여하여 기술자문 및 기술적 지원이 필요할 경우 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듣는 SDGs 수립과정의 기조에 따라 시민사회, 전문가 및 민간기업의 제안과 자문을 포함하도록 하여 이들이 지표의 개발과 혁신적인 데이터를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IAEG-SDGs, 2015).

1) IAEG-SDGs의 구성은 지역을 고려한 구성으로 구성국은 다음과 같다.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Uganda, United Republic of Tanzania, Botswana, Cameroon, Cabo Verde, Senegal, Algeria, Armenia, Bahrain, Egypt, China, India, Kyrgyzstan, Philippines, Fiji, Samoa, Cuba, Jamaica.

IAEG-SDGs는 연 2회 IAEG-MDGs의 선례를 참고하여 회의를 개최하며, 지표와 지표체계를 개발하여 UNSC에 보고 및 제안을 가장 큰 목적으로, 2030년까지 지표와 모니터링 체계 이행을 위한 기술적 지원, 정기적인 지표의 방법론과 관련 이슈에 대한 점검, SDGs 이행을 위한 중간보고서 (progress report)의 작성 및 발표, SDGs 통계 관련 각종 역량강화 활동 및 UNSC 사무국 주도의 데이터 수집과 활용에 관한 지원 및 대시보드 활동 점검과 지원 등을 주요 역할(mandate)로 활동하고 있다[2].

2015년 3월 Post-2015 개발의제를 글로벌 수준에서 모니터링하기 위한 지표체계를 개발하고 그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수립된 IAEG-SDGs는 2015년 1차 회의에서 지표개발 및 분류 확정계획을 수립하고, 세부지표 상호연계성 분석 및 데이터 세분화에 관한 원칙을 확인하였다. 이후 각 기관에서 제안된 지표제안서를 바탕으로 250~300여개의 지표체계를 검토하였고, 2015년 11월 버전의 제안서에는 지표분류를 Tier와 색깔로 구분하여 초안을 작성해갔다 (IAEG-SDGs, 2015). 초록-노랑-회색의 3개 그룹으로 나뉜 색깔 시스템에서 초록은 일반적으로 합의된 (또는 작은 수정제안) 지표로서 공개 자문 과정에서 응답자 중 우려 및 심각한 재고 필요의견 피력이 25% 이하이고, 회원국들의 심각한 반대(strong opposition)가 없고, 일부 지표는 이미 잘 수립이 되어있는 경우를 의미했다. 노랑은 해결되지 못한 이슈가 있거나 대안이 있는 경우, 회색은 좀 더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며 방법론적인 개발도 필요한 경우를 의미하여, IAEG-SDGs회의의 주요 관심사는 '회색(grey)' 지표를 지워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2차 회의 직후 159개의 지표가 녹색으로 분류되었다.

이후 검토과정을 거쳐 IAEG-SDGs는 2016년 3월 UNSC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총 230개의 지표를 3개의 Tier로 확정하였고, 이후 2016년 4월 제3차 회의를 통해 향후 Tier III 지표에 대한 개발일정을 확정하고 지역-공간 정보 작업반(Working Group on Geo-spatial Information), 모니터링 통합분석을 위한 SDG 통계 상호연계 작업반(Working Group on Inter-linkages of SDG Statistics to allow for Integrated Analyses in the Monitoring), SDMX 작업반(Working Group on SDMX)를 구성하여 SDGs 지표의 모니터링과 활용 및 점검을 강화해갈 예정이다.

지표를 구성하는데 직접적인 활동을 하는 IAEG-SDGs와 함께 UNSC의 활동을 지원하는 Post-2015 모니터링을 위한 파트너십, 조정 및 역량강화 고위급 그룹(High-level Group for Partnership, Coordination, and Capacity-Building for Post-2015, HLG)이 있다. HLG는 IAEG-SDGs의 구성국과 겹치지 않도록 구성되며 현재 23개국이 활동하고 있다. 지표의 개발을 주요 역할로 하고 있는 IAEG-SDGs와는 달리 데이터 수집을 위한 역량강화와 지표 관련 자원동

2) 좀 더 자세한 역할과 활동영역에 관한 정보는 http://unstats.un.org/sdgs/iaeg-sdgs/ 참조.

원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SDGs 이행과정 특히 통계 모니터링과 보고의 원활성 확보를 위한 전략적 리더십 차원에서 활용되고 있다(HLG, 2015).

이렇게 지난 1년 여간 개발되고 수립된 지표는 목표-세부목표 지표체계를 완성했다는 의의에도 불구하고 개별 지표를 살펴보면 아직도 전체 지표의 50% 이상이 수정되거나 새로 개발이 되어야 하며, 내용적으로도 여전히 합목적성 이슈가 제기되는 등 앞으로도 당분간은 검토와 수정과정에서의 쉽지 않은 여정을 예고하고 있다. 이어질 3장에서는 이러한 지표체계의 한계를 구성과 내용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Ⅲ. 지표의 구성

확정된 230개의 지표는 크게 3개의 Tier로 분류되어 있다. Tier I은 통계방법론이 수립되어있고(established) 데이터가 이미 쉽게 얻어질 수 있는(widely available) 지표, Tier II는 방법론은 수립되어 있으나, 데이터를 얻기 쉽지 않은(not easily available) 지표, Tier III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방법론(internationally agreed methodology)이 아직 개발되지 않은(not yet been developed) 지표들을 의미한다(UNSC, 2016).

〈표 1〉 목표별 지표 Tier의 구성

목표	목표내용	Tier Ⅰ	Tier Ⅱ	Tier Ⅲ	다중/미정
1	빈곤	25%	33%	33%	8%
2	기아	50%	14%	36%	0%
3	보건	58%	27%	12%	4%
4	교육	30%	40%	20%	10%
5	양성평등	21%	29%	43%	7%
6	물	55%	0%	45%	0%
7	에너지	67%	0%	33%	0%
8	일자리	59%	35%	6%	0%
9	산업	67%	8%	25%	0%
10	불평등	36%	0%	45%	18%
11	도시	13%	47%	40%	0%
12	SCP	8%	23%	62%	8%
13	기후변화	0%	29%	57%	14%
14	해양생태계	20%	0%	80%	0%
15	육상생태계	43%	7%	36%	14%
16	거버넌스	39%	30%	26%	4%
17	파트너십	60%	8%	20%	12%
전체		41%	21%	32%	6%

출처: PARIS21 (2016)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지표의 41%만이 Tier I에 해당하고, 50% 이상의 지표가 Tier II와 III에 해당되어 향후 완전히 개발이 되어 지표로서의 역할을 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표의 Tier 구성은 목표들 간에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목표 3, 8, 9의 경우 Tier I의 비중이 높으나, 목표 13의 경우 Tier I 지표가 전무하고,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관련 목표 12, 기후변화 목표 13, 해양생태계 목표 14의 경우 Tier III의 비중이 높아 동 목표들의 국제적 비교 및 이행상황 점검을 위한 데이터 구축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3].

아직 개발되어야 하는 지표가 다수 있다는 것은 비교를 해야 할 기초선 설정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며, 기타 Tier I/II 지표 가운데 데이터 접근성이 제한적인 지표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230개의 지표 세트는 완성된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Ⅳ. 지표의 변경내용[4]

글로벌 지표체계는 2015년 2월부터 12월까지 총 11개월 동안 수차례의 자문(consultation)과 수정을 거쳐 개발되었다. 지표들은 색깔로 분류되는 과정에서 '합의'되었고, 현재 활용 가능한 지표와 개발이 되어야 하는 지표 등으로 분류-재분류를 반복해왔다.

다수의 지표들이 2015년 후반에 합의가 되었으나, 80개의 지표는 합의가 없거나 좀 더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의 * 표시가 달려있는 채로 최종제안서로 제출되었다. 마지막 수정을 통해 대부분의 * 표기 지표는 제안서대로 또는 약간 수정된 상태로 채택되었다. 이와 함께, 10개 지표가 추가되었고, 5개는 삭제되었으며, 8개의 지표는 센다이 프레임워크와 연계가 표기(flagged) 되었다. 이러한 변경의 결과가 모두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경된 것이 있는 반면, 오히려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지표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우선 긍정적인 변화를 살펴보자. [세부목표 1.4: 2030년까지 모든 남성과 여성, 특히 빈곤층과 취약계층이 경제적 자원에 대한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기본공공서비스, 토지와 기타 형태의 자산 소유와 통제, 유산(遺産), 천연자원, 적정 신기술 및 소액금융을 포함한 금융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의 지표로 2015년 12월 버전의 제안서에서는 1.4.1은 "기초서비스 접근성이 있는

3) Tier와 지표의 데이터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동 협력지 〈섹터〉 김수진, "SDGs 지표 데이터 이용가능성(Data Availability) 분석" 논문 참조.

4) 이 글에 사용된 지표관련 번역은 김지현. 2016. "SDGs 지표 확정과 의의"『개발과 이슈』제 25호.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발간예정) 참조.

가구에 살고 있는 인구비율"만이 제안되었으나, 확정된 지표에서는 1.4.2 "성별, 토지권 종류별 법적으로 인정된 문서를 통해 안정된 토지권을 가졌거나, 토지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고 여기는 성인인구비율(Proportion of total adult population with secure tenure rights to land, with legally recognized documentation and who perceive their rights to land as secure, by sex and by type of tenure)"이 추가되어 세부목표가 추구하는 '동등한 권리'에 대한 강조를 강화하였다.

[세부목표 17.13 정책조율 및 정책일관성 등을 통해 글로벌 거시경제 안정 강화]를 위한 지표는 단순한 GDP 측정에서 "거시경제 대시보드(macroeconomic dashboard)"로 변경되었으며, [세부목표 12.2 2030년까지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및 효율적 사용 달성]을 위해 기존의 12.2.1 물질발자국 및 일인당/GDP당 물질발자국 이외에 12.2.2 국내물질소비와 일인당/GDP 당 국내물질소비(Domestic material consumption (DMC) and DMC per capita, per GDP)를 추가하여 다양한 관점을 반영하여 노력했다.

[세부목표 8.8 이주근로자, 특히 여성이주자 및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 있는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를 위하여 노동권을 보호하고, 안전하며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증진]을 측정하기 위해 제시되었던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이하 ILO) 협약 가입국 수에서 "노동권의 보장"을 강조하면서 "단체교섭과 교섭단체 구성의 자유" 등을 구체화시켜 세부목표가 지향하는 바를 분명히 하는 방향으로 수정되었다. 지속가능개발에 대한 정보와 이해증진과 관련한 [세부목표 12.8]의 지표에서는 기존 12.8.1의 내용에 기후변화교육이 추가되기도 하였으며[5],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성을 보장하고 기본적인 자유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세부목표 16.10]의 지표에서 16.10.2 "정보에 대한 국민의 접근을 위해 헌법상, 법적이거나 정책적인 보장방식을 도입하고 이행하는 국가의 수(Number of countries that adopt and implement constitutional, statutory and/or policy guarantees for public access to information)"가 추가되는 등 세부목표의 목표를 분명히 하기 위해 내용이 추가되거나, 보완되는 등의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수정을 일부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변경사항이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수정사항 중 일부는 오히려 세부목표의 의도를 제한하거나 왜곡하는 경우도 볼 수가 있다. [세부목표 10.5 글로벌 금융시장 및 기관에 대한 규제와 모니터링을 개선하고, 이와 같은 규제의 이행을 강화]에 대한 지표는 기존의 "글로벌 금융 이전세 (토빈세) 도입(Adoption of a financial transaction tax (Tobin tax) at the global

5) Extent to which (i)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and (ii)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cluding climate change education) are mainstreamed in (a) national education policies (b) curricula (c) teacher education and (d) student assessment

level)"이었으나, IMF의 금융건전성 지표로 변경되었다. 이러한 변경은 실제 규제와 모니터링을 개선하고 이행을 강화하려는 '방향(direction)'이 없는 지표로 변경, 제한되었다. 해안 및 연안 생태계를 지속가능하게 관리 보호하는 것을 명기한 [세부목표 14.2]의 지표는 "생태계기반 시스템"의 활용에 있어 '회복력있는 인간 커뮤니티의 수립'과 '양질의 일자리와 공평한 혜택의 나눔' 등에 대한 내용이 삭제되어[6], 이를 통해 활용되는 배타적 경제수역의 비율로 한정되었다.

부패와 뇌물 근절을 목표로 하는 [세부목표 16.5] 의 지표에서는 16.5.1인 공무원에 뇌물을 요구받거나 뇌물을 공여해본 적이 있는 인구 비율에서 '연령, 성별, 지역, 인구그룹'별 세분화된 데이터 수집이 삭제되어, 누가 뇌물요구에 취약한 지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지게 되었다. 16.7.2 지표가 "성별, 연령별, 장애여부별, 인구집단별 의사결절과정이 포용적이고 수용적(responsive) 하다고 느끼는 인구비율"로 채택된 것은 포용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강조하는 [세부목표 16.7]의 지향점을 고려하면 매우 긍정적이나, 2015년 12월 버전에서 제시되었던 "청년들의 여러 섹터에 걸친 니즈를 국가발전계획과 빈곤퇴치전략에 반영한 국가의 비율(Proportion of countries that address young people's multi-sectoral needs within their national development plans and poverty reduction strategies)"의 내용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대체되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긴다.

목표 17 하의 여러 지표들의 변경 역시 이러한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정책일관성 강화를 위한 세부목표 하의 지표 17.15.1는 기존의 "ODA 또는 차관, 국제투자합의, 지역무역합의 등에 내제되어있는 각종 제약의 수(Numbers of constraints that are embodied in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r loan agreements,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s, regional trade agreements, etc.)"에서 "개발협력주체가 제공한 기획관련 도구 및 국가가 보유한 결과프레임워크의 사용 정도(Extent of use of country-owned results frameworks and planning tools by providers of development cooperation)"로 '제약(constraints)'에 대한 내용이 삭제되어 채택되었다.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조한 [세부목표 17.16]에서도 시민사회가 제안한 "포용적 평가를 통해 강화된 개발협력주체들 간 상호책무성(Mutual accountability among development cooperation actors is strengthened through inclusive reviews)" 대신 "다중 이해관계자 개발효과성 모니터링 프레임워크 내에서 발전과정을 보고하는 국가의 수(Number of countries reporting progress in multi-stakeholder development effectiveness monitoring frameworks that support the achievement of the

6) 2015년 11월 제안서 원문: Percentage of coastal and marine development with formulated or implemented integrated coastal management/maritime spatial planning plans (that are harmonized where applicable), based on an ecosystem approach, that builds resilient human communities and ecosystems and provides for equitable benefit sharing and decent work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로 변경되었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많은 경우에 지표가 처음 제안되었을 버전에서 핵심내용이 삭제되는 방향으로 변경되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러한 지표의 변화는 '너무 다양하고 불분명한 세부목표'를 이유로 '세부목표를 분명하게 해줄 지표'를 주장했던 UN 총회의 SDGs 협상과정을 상기하게 한다. 결과적으로 지표를 통해 세부목표의 지향점을 분명히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부분적으로만 충족되었으며, 아직 개발을 해야 하는 80여 개의 Tier III 지표의 수립과정에서 이러한 논의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V. 지표의 특징: 불평등성 논의를 중심으로

글로벌 프레임워크 전체를 보면 일부 지표들은 그 영역을 확대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음이 보여진다. 특히 '권리(right)' 부분에 있어 그러한 경향을 강하게 볼 수 있는데, 모두를 위한(for all) 성평등이나 '양질의 일자리 (decent work)'를 측정하기 위한 과정들이 대표적이다. 이 지표들은 범분야적(cross-cutting)으로 지표체계 안에서 다루어지고 있으며, 고용의 권리, 노동의 권리, 동일노동 동일임금, 가사노동 및 무급의 돌봄 서비스에 대한 인식 및 가치부여, 소득 및 사회보호 영역에서의 불평등 감소, 더 나아가 경제적 자원 및 토지와 재산에 대한 권리 등으로 지표의 영역이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세부목표 10.3]은 기회의 균등 뿐만 아니라 그 결과까지 초점을 맞추고 있어 시민사회가 모니터링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영역을 열어주고 있다. 사람들이 이러한 세부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경험한 차별과 괴로움에 관한 지표는 2030 개발의제가 추구하고 있는 "누구도 뒤처지지 않는(No one left behind)" 발전을 위한 약속의 단면을 엿볼 수 있게 한다.

그러나 2030 개발의제가 명시한 우선순위에 비추어 글로벌 지표체계를 살펴보면, 여전히 몇몇 부분 - 예를 들어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CBDR)'의 원칙, 국제적 의무의 문제 등에서 그 간극을 확인할 수 있다.

1. 불평등성 논의

목표 5와 8의 세부목표와 지표들은 우선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의 '국내적' 불평등을 주요 이슈로 하고 있다. 즉, 지금 현재까지는 국가 간의 불평등을 측정하거나 이러한 불평등성을 고착화하는 정책들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없다.

또한 국내적 불평등 부분에 있어서도 2015년 2월 IAEG-SDGs 제안안에는 포함되어있던 지니계수(Gini coefficient) 및 팔머비율(Palmer ratio)등이 삭제되고, 두 번째 대안으로 제시되었던 실질가처분 소득 및 소비 기준 인구분포가 '하위 40% 인구의 일인당 소득'을 보는 것[7]으로 확정되었다. 세부목표 자체가 인구의 하위 40%만을 대상으로 한다면, 실제 소득불평등 논의에서 다루어 져야할 부유층 특히 상위 1~10% 인구에 대한 측정 및 이에 대한 정책논의도 사라지게 되어 소득불평등을 줄이겠다는 목표는 결국 제한적인 정책옵션을 제시하게 될 수도 있다.

정책과 관련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국가적 계획을 지원할 수 있는 효과적인 역량개발을 목표로 하는 세부목표 17.9의 지표는 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조합의 이행"을 목표로 함에도 불구하고 국가 간 불평등에 대한 언급없이 재정 및 기술지원의 달러화 가치에만 주목한 지표를 채택하였다.

이와 함께 소외된 집단과 영역이 국가평균 안에서 사라진 경향을 보여, 실제로 2030 의제의 '누구도 뒤처지지 않을' 발전에 대한 야심찬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분화된 데이터 보다는 통합적인(aggregated) 데이터를 글로벌 지표로 채택한 경우가 더 많아졌다. 이는 결국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의 정책 타겟이 불분명해지는 효과를 낳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2030 개발의제의 보편적인 프레임워크에도 불구하고 부유한 집단들(선진국의 국제개발협력활동 등을 포함)의 책임에 관한 논의는 여전히 프레임워크의 바깥에 존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실제로 일부 국가들의 경우 국가부채나 무역상황에 매우 취약하면서도 이러한 세계적인 질서를 논의하는데 목소리를 내기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음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글로벌 세금과 국내자원동원 등에 관한 논의에서도 마찬가지 상황에 마주할 수 있으며 이러한 국제정치경제적 역동성을 포착하지 않고서는 국가 간 불평등을 줄이려는 일련의 노력들은 실효를 거두지 못할 수도 있다.

2. 지표, 글로벌 모니터링, 국가 간 비교

UNSC는 IAEG-SDGs의 활동 범주 안에 지표가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글로벌 지표는 개선하고 개발하는 역할을 명기했다(IAEG-SDGs 2015). 그러나 UN 통계국(UN Statistical Division, 이하 UNSD)은 지속적으로 글로벌 지표는 전 세계 차원에서 후속조치와 평가를 위한 것으로 모든 국가와 지역 차원에서 적용 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7) 10.1.1 Growth rates of household expenditure or income per capita among the bottom 40 per cent of the population and the total population

(Statistics Divisions of UN/DESA and UN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2015). 또한 2030의제는 후속조치와 평가(Follow-up & Review, 이하 F&R)의 책임은 개별 정부에 있으며, 지속가능발전 고위급 정치포럼(High Level Political Forum on Sustainable Development, 이하 HLPF)는 그 과정을 관장하고 "시스템 차원의 일관성과 지속가능개발정책의 조율을 강화"하는 역할을 할 것이며, "정부 간 기구 및 포럼, 관련 UN기구, 지역기구, 주요그룹(major group)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의 견해를 참고하여(with inputs) 의제 이행에 관한 국별 평가와 주제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히고 있다(UNGA, para. 70).

이는 실제로 모든 국가와 지역 단위에서 적용 가능한 것이 아니라 글로벌 모니터링'만'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글로벌 지표를 통한 국가 간 비교는 결과적으로 모든 나라들이 글로벌 지표체계를 활용하도록 하는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개별국가 내에서의 특수성을 반영한 정책적 선택의 기회를 넓히려는 의도와는 상반되게 지표 만 고려한 정책수단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우려는 2030 개발의제가 '책무성'보다는 F&R을 강조하여 개별 국가의 보고의무를 완화함으로서 '누가' 수혜자이고, '누가' 책임이 있는지를 불분명하게 만들었다는 비판적인 시각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Luke 외 2016).

VI. 결론

2014년 UN 사무총장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데이터혁명에 관한 독립 전문가 자문그룹(Independent Expert Advisory Group on a Data Revolu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이하 IAEG-DR)"을 구성하여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데이터 혁명을 어떻게 이끌 것인지에 관한 제안을 주문했다. IAEG-DR의 결과보고서는 데이터 격차와 불평등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으며, 정부와 기타 개발파트너가 "주요 격차를 줄이고 데이터 사용 및 접근성을 강화하여 지속가능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정책과정에서 데이터를 활용해야 함을 강조했다(UN Data Revolution Group 2014:5).

SDGs의 지표 확정은 단순히 목표-세부목표-지표의 다층적 구조를 완성시키는 퍼즐조각(missing puzzle)이 아니라 이러한 데이터 활용의 시발점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아직은 내용적인 면이나 체계 면에서 완성도가 높다고 볼 수는 없으나, 지난 15년간 MDGs가 그러했듯이 지속적인 평가와 점검을 통해 지표를 개발해나갈 것이다.

당장 오는 7월 말까지 IAEG-SDGs는 Tier system을 완성하여 발표할 예정이며, 9월까지 데

이터 수집과 생성의 주체가 되는 국제기구가 제안한 Tier III 관련 방법론 개발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또한 2016년 하반기 4차 회의 개최 이후 2017년 제48차 UNSC 총회에 최종 지표를 제안할 예정이다. 최종지표 확정 이후에도 개별지표 및 전체 지표체계에 관한 점검은 계속될 예정이며, 특히 2020년과 2025년 검토에서는 ① 세부목표와 맞지 않는 지표, 세부목표를 반영하지 못하는 지표, 세부목표의 범위를 넘어선 지표, ② 유의미하게 측정이 될 수 없거나 구체적이지 않은 글로벌 지표체계에 포함되어 있는 지표, ③ 방법론 개발 또는 데이터 수집이 매우(significantly) 어려운 지표, ④ 새로운 방식이나 방법론 사용이 가능한 지표를 중심으로 지표체계 전반에 걸친 검토를 예고하고 있어, 5년 주기의 이행상황에 따른 지표의 변화도 예상해 볼 수 있다. 이렇듯 끊임없이 변화하는 SDGs 관련 내용들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며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과 이행방안을 강구해볼 필요가 있겠다.

〈참고문헌〉

김지현. 2016. “SDGs 지표 확정과 의의”『개발과 이슈』제 25호.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발간예정)

HLG. 2015. “Terms of reference for the High-level Group for Partnership, Coordination and Capacity-Building for post-2015 monitoring”

IAEG-SDGs. 2015. “Terms of reference for the Inter-agency Expert Group o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Indicators”

_____. 2016. “Provisional Proposed Tiers for Global SDG Indicators”

Lucks, Dorothy, Thomas Schwandt, Zenda Ofir, Kassem El-Saddik and Stefano D'Errico. 2016. “Counting Critically: SDG ‘follow-up and review’ needs interlinked indicators, monitoring and evaluation” Briefing. London: IIED, available at http://pubs.iied.org/17363IIED (접속일: 2016.7.1)

PARIS21. 2016. “Agenda 2030: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conference presentation at Agenda 2030 and the SIDS: Strengthening Statistical Capacity and Readiness (May 19-20, Paris)

Statistics Divisions of UN/DESA and UN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2015. “Results of the UNSD/UNECE Survey on organizational context and individual projects of Big Data”, Background document. UN Statistical Commission Forty-sixth session, available at http://unstats.un.org/unsd/statcom/doc15/ BG-BigData.pdf (접속일: 2016.7.1)

UN Data Revolution Group. 2014. “A World that Counts: Mobilizing the Data Revolu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echnical Report. UN Data Revolution Group, available at http://undatarevolution.org/wp-content/uploads/2014/11/ A-World-That-Counts.pdf (접속일: 2016.7.1)

UN General Assembly. 2015.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RES/70/1)

UN Statistical Commission. 2015. “Report of the High-level Group for Partnership, Coordination and Capacity-Building for Post-2015 Monitoring” (E/CN.3/2016/3)

_____. 2016. “Report of the Inter-Agency and Expert Group o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Indicators” (E/CN.3/2016/2/Rev.1)

SDG 최종 지표 내용과 이행의 실제: 환경보호

홍은경 (KOICA 연구개발팀 선임연구원)[1)]

목차

Ⅰ. 서론
Ⅱ. 지속가능발전 정의 및 논의 과정
Ⅲ. SDGs의 환경분야 내용
1. SDGs와 환경
2. SDGs 환경세부목표 및 지표
3. 환경영역 목표
Ⅳ. 결론

1) · 알래스카 주립대학교 기후변화 정책 및 평가 박사, Ph. D.(Interdisciplinary Ph. D. in Climate Change Policy and Assessment)
· 전 Alaska Center for Climate Assessment and Policy 연구원/ shireen@koica.go.kr 031-740-0565

초록(Abstract)

2015년 9월, 국제사회는 향후 15년간 인간, 지구, 번영, 평화, 파트너쉽이라는 5개의 영역에서 인류가 나아가야할 방향성을 17개의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로 제시하고 있는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에 합의하고 채택하였다. 채택된 SDGs는 새천년개발목표에서 다루지 않은 기후변화 및 자연보호에 대한 논의를 포함하여 해양자원 및 오염문제, 산림이슈, 사막화, 토지 황폐화 등과 같은 환경주제에 대해 7개의 목표로 구분되어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17개 목표 중에 7개 목표가 환경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환경 이슈가 차지하는 중요정도를 표현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SDGs에서 제시된 환경 관련 목표 고찰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중요시 하는 환경이슈를 파악하고 이의 세부목표와 이를 이행하기 위한 이행지표를 고찰하였다.

가장 두드러진 문제점으로는 7개 환경목표의 세부목표 대부분이 모호한 표현과 서술적이 묘사가 많아 그것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행수단과 이행목표가 혼합되어 제시되어 있는 경우가 있었으며, 여러 가지로 제시된 세부목표를 통합할 것을 제안하는 의견이 있는 경우도 존재하였다. 세부목표의 수정과 함께 이를 모니터할 글로벌 지표 프레임워크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한데 특히 환경 분야에서 티어 2와 3의 분포는 다른 분야에 비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SDGs는 비록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는 아니지만 국제사회의 개발관련 제도와 방향을 이끄는 주요 규범으로 그 영향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까지 제시된 SDGs는 양적으로 이슈 영역이 팽창한데 비해, 질적으로 이를 세분화하는 세부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제시된 지표에 대해 명확한 해법이 제시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SDGs가 국제사회에서 전 세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주요 규범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SDGs 세부목표와 이행지표에 대한 재검토와 재작업이 요구된다.

Ⅰ. 서론

2015년 9월, 국제사회는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 70차 유엔개발정상회의(UN Sustainable Development Summit)에서 「우리 세계의 변혁: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라는 주제의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에 합의하고 이를 채택하였다. 이 SDGs는 향후 15년간 인간, 지구, 번영, 평화, 파트너쉽이라는 5개의 영역에서 인류가 나아가야할 방향성을 17개의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로 제시하고 있는데 2016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SDGs 세부목표 이행 측정 및 모니터링을 위한 글로벌 지표 선정 작업은 2015년 3월, 제 46차 유엔통계위원회(UN Statistical Commission, 이하 UNSC)에서 창설된 지속가능발전목표 지표에 관한 기관 간 전문가 그룹(Inter-Agency and Expert Group o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Indicator, 이하 IAEG-SDGs) 주도로 작성되었는데, 지난 2016년 3월 뉴욕에서 개최된 제 47차 UNSC는 SDGs 글로벌 지표를 230개[2]로 합의하였다.

SDGs 의제수립과정은 크게 두 개의 축으로 나뉘는데 하나는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이하 MDGs) 이후(2015년 이후)의 개발목표를 수립하기 위해 UN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Post-MDGs(Post-2015) 설정 활동이고, 다른 하나는 2012년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UN 지속가능발전총회(UN Conference on Sustainable Development, 이하 UNCSD 혹은 Rio+20) Rio+20의 보고서와 결의안에서 시작된 SDGs 수립과정이라 할 수 있다(김지현, 2014; 임혜숙, 2015). 즉 Post-2015 의제와 SDGs 수립은 처음에는 별도의 프로세스로 진행되었으나, 두 의제에서 다루고 있는 이슈가 서로 관련됨에 따라 두 개발의제를 하나의 개발의제로 수렴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어(임혜숙, 2015) 2014년 9월 UN 총회에서 SDGs-OWG(Open Working Group) 보고서를 채택함에 따라 하나로 통합됨으로써 두 프로세스는 SDGs 하나로 수렴이 되었다.

2015년 9월 채택된 SDGs에 나타난 환경이슈는 아젠다 21, 코펜하겐 협약을 바탕으로 Rio+20에서 논의된 환경이슈가 세분화되어 7개의 목표에 확장되어 강조되고 있다(임혜숙, 2014). 즉 MDGs에서는 상대적으로 가볍게 다뤄졌던 환경관련 이슈들이 SDGs에서는 비중 있게 다뤄졌다. 총 7개 목표 61개 세부목표로 확장된 환경 관련 목표는 크게 ① 자연/자원과 관련된 환경지속성, ② 도시화와 식수위생, ③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을 포함하는 사회 환경 부문으로 나눌 수 있다(김지현, 2014).

2) 총 지표의 합계는 241개이나 중복지표를 제외하면 230개임.

SDGs의 17개의 목표 중 환경과 관련된 7개 목표는 '① 목표6: 모두를 위한 식수와 위생시설 접근성 및 지속가능한 관리 확립, ② 목표7: 지불가능하고 믿을 수 있으며 지속가능한 현대식 에너지원에 대한 접근성 확보, ③ 목표11: 포용적인 · 안전한 · 회복력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와 거주지 조성, ④ 목표12: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패턴 보장, ⑤ 목표13: 기후변화와 그 영향을 대처하는 긴급 조치 시행, ⑥ 목표1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해양·바다·해양자원 보존과 지속가능한 사용, ⑦ 목표15: 육상생태계 보호와 복원 및 지속가능한 수준에서의 사용 증진, 산림의 지속가능한 관리, 사막화 방지, 토지황폐화 중단 및 회복, 생물다양성 손실 중단'이다.

본 연구는 SDGs에서 7개 목표로 확장되어 강조되고 있는 환경 관련 목표 고찰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중요시 하는 환경이슈를 파악하고 현재 제시된 세부목표와 이행지표가 향후 15년간 전 지구적 환경규범으로서 현재 문제를 잘 대변하고 해결책을 효율적으로 제시하고 있는가에 대한 검토를 시행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2장에서는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정의와 국제사회에서 지속가능개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어 SDGs 수립에 이르게 되었는지 살펴본다. 특히 본 연구는 앞서 설명한 지속가능개발목표 의제수립과정의 두 줄기 중 Rio+20 축으로 형성된 SDGs 수립과정 및 논의 절차에 초점을 두었다. 3장에서는 SDGs에서 환경영역의 목표의 구성 및 내용, 그리고 모니터링 프레임워크를 설명한 뒤 환경영역 목표와 세부목표, 그리고 지표를 살펴보되, 제시된 세부목표와 지표의 문제점과 이를 보완할 방향을 논의하였다. 4장에서는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정리하고 향후 지표의 방향 및 보완점에 대해 강조하였다.

II. 지속가능개발 정의 및 논의 과정

환경과 관련한 국제사회에서의 논의는 1972년 스톡홀름 유엔인간환경회의(UN Conference on the Human Environment)에서 시작되었다. 이는 '환경(Environment)' 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한 국제회의로 이 회의에서 유엔환경계획(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이하 UNEP) 설치가 결정되고 환경적 위협에 맞서 전 세계적인 협력을 약속하는 스톡홀름 선언(Declaration of 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Human Environment)이 채택되었다.

국제사회에서 지속가능개발이 처음 정의된 것은 1887년 세계환경개발위원회(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이하 WCED)가 발간한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 보고서라고 보이는데 이 보고서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현재 세대의 필요성을 충족하는 개발[3]"로 정의하고 있다.

이후 1992년에 1972년 스톡홀름 유엔인간환경회의 20주년을 맞이하여 유엔환경개발회의(UN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이하 UNCED)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4]" 개념을 주창하면서 지속가능발전 개념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는데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The Rio Declarat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을 채택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의 27개 '리우원칙(Rio Principles)'을 제시하고, 지구환경보전행동계획인 의제 21(Agenda 21)을 채택하였다.

1992년 이후 20년이 지난 2012년에 또다시 리우에서 개최된 UNCSD는 빈곤퇴치와 지속가능발전 관점의 녹색경제(green economy)와 이를 위한 합의문인 "우리가 원하는 미래(The future We Want)"를 채택하고 SDGs 도입에 합의하였다. 그 결과 2015년 9월 제 70차 유엔개발정상회의에서 SDGs는 채택되어 2016년부터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인류가 나아가야할 방향성 제시하게 되었다.

Ⅲ. SDGs의 환경분야 내용

1. SDGs와 환경

SDGs 17개 목표 169개 세부이행과제는 인권의 실현과 양성평등 및 지속가능발전의 세 개의 축인 경제, 사회, 환경을 균형 있게 통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KEI, 2015). SDGs 17개 목표를 주제별로 분류할 경우 기관과 연구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 분류되기도 하는데 김지현(2014)과 KEI(2015)는 SDGs를 ① 인간 중심의 성장목표(경제성장)를 중심으로 ② 빈곤, ③ 사회영역(사회발전), ④ 환경영역 ⑤ 이행수단과 관련된 목표영역, 이렇게 크게 5가지 주제로 분류하고 있다(〈표 1〉 참조).

3) 주: "Sustainable development is development that meets the needs of the present without compromising the ability of future generations to meet their own needs"

4) 주: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표 1〉 SDGs의 주제별 분류

주제		SDGs 목표(세부목표 수)
빈곤 (2목표, 15세부목표)		1. 빈곤퇴치(7) 2. 기아해소와 식량안보(8)
사회발전 (5목표, 53세부목표)	보건	3. 보건증진(12)
	교육	4. 교육 보장과 평생학습(10)
	여성	5. 성평등과 여성역량 강화(9)
	사회/안보	10. 불평등 해소(10) 16. 평화로운 사회와 제도(12)
환경 (7목표, 61세부목표)	자연/ 자원환경	7. 에너지(5) 13. 기후변화(5) 14. 해양생태계(10) 15. 육상생태계(12)
	정주환경	6. 물과 위생(8) 11. 도시와 인간정주(10) 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11)
경제성장(2목표, 20세부목표)		8. 경제성장과 일자리(12) 9. 인프라와 산업화(8)
이행수단 (1목표, 19세부목표)		17. 이행수단과 글로벌 파트너쉽(19)

출처: 김지현 (2014, p.10), KEI (2015) 재구성

지난 15년간 국제사회는 범지구적 빈곤퇴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립된 MDGs 달성을 위해 노력하였고 가시적인 효과도 거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DGs는 가장 시급한 빈곤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MDGs 목표 중 환경영역은 목표 7인 '환경 지속가능성 확보(Ensure environmental sustainability)'에서만 다루고 있는 등 환경 이슈들을 종합적으로 다루지 못했다는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김태균 · 이성훈 · 허태욱 · 황원규, 2015). SDGs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SDGs에서 환경부문 목표는 7가지로 확대되어 종합적으로 제시되었는데 상기 〈표 1〉가 보여주듯 SDGs에서 환경분야 목표는 전체 17개 목표 중 7개 목표로 SDGs 안에 환경목표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지난 MDGs에서 상대적으로 경미하게 다루어졌던 환경관련 이슈들이 SDGs에서는 핵심영역으로 다루어지고 있다(김지현, 2014). 제시된 환경분야 7개 목표는 목표6(물과 위생), 목표7(에너지), 목표11(도시와 인간정주), 목표12(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목표13(기후변화), 목표14(해양생태계), 목표15(육상생태계)로서 이 각각의 목표들은 Rio+20에서 논의된 환경이슈가 세분화되어 SDGs에 반영된 것으로 여겨진다. 환경관련 목표들을 다시 구분하면 크게 에너지, 기후변화, 해양자원, 육상생태계를 내용으로 하는 자연/자원과 관련된 환경지속성과 물과 위생, 도시,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를 내용으로 하는 인간정주와 관련된 환경지속성으로 나눌 수 있다(〈표 1〉 참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SDGs는 MDGs에서 논의된 환경이슈들이 세분화되어 구체화되었는데 아래 〈표 2〉은 MDGs에서 나타난 환경(세부)목표가 SDGs에 어떻게 연계가 되고 있는지 보여준다. 지속가능발전원칙을 정책 및 계획에 내재화하는 내용의 7.a.의 경우 내용상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SDGs와의 목표는 없으나 '지속가능발전원칙의 정책으로의 내재화'라는 방향성에 있어서는 SDGs에 나타난 환경분야 모든 목표가 이를 추구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생물다양성 감소를 목표로 한 7.b.의 경우 SDGs 목표 15(육상생태계)에서 그 내용을 세분화하여 발전시키고 있으며(〈표 3〉 참조), 식수와 기초위생환경에 대한 접근성 확보를 내용으로 하는 7.c.의 경우 MDGs에서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SDGs 목표 6(물과 위생)에서 새로운 세부목표와 함께 다시 제시되고 있다. 빈민가 거주민의 삶의 향상을 목표로 했던 7.d.의 경우에도 이미 MDGs 목표는 달성되었지만 SDGs 목표 11(도시와 인간정주)에서 다시 새로운 목표와 함께 제시되었다.

〈표 2〉 MDGs 목표 7의 세부목표와 SDGs 와의 연계

목표 7. 환경 지속가능성 확보		SDGs 와의 연계
세부 목표	7.a. 지속가능발전원칙을 국가 정책 및 계획에 통합시키고 환경자원 손실을 복원	목표 6,7,11,12,13,14,15
	7.b. 생물다양성 감소를 억제하고 2010년까지 감소율을 현저하게 저하시킴	목표 15 (육상생태계)
	7.c. 2015년까지 안전한 식수 및 기초적인 위생환경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한 인구의 비율을 반으로 줄임	목표 6 (물과 위생)
	7.d. 2020년까지 적어도 1억 명의 빈민가 거주민의 삶을 현저하게 향상시킴	목표 11 (도시와 인간정주)

출처: 저자작성

2. SDGs 환경세부목표 및 지표

지난 2016년 3월, 제 47차 유엔통계위원회는 230개의 지표선정을 완료하였다. 지표선정이 완료됨에 따라 전세계 각국은 국내이행전략을 수립하게 되며, 유엔은 'SDGs 이행보고서'와 '글로벌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등을 통해 SDGs 이행과정을 모니터링하게 된다.

지난 4월에 열린 IAEG-SDGs에서는 글로벌 지표 프레임워크를 티어(Tier)체계로 구축하여 각각의 지표의 티어를 구분하여 표현하고 있다.

티어 1은 방법론이 구축되어 있고 데이터 이용 가능한 지표, 티어 2는 방법론이 구축되어 있으나 데이터 확보에 한계가 있는 지표, 티어 3은 국제적으로 합의된 방법론이 개발되지 않은 지표를 말한다(〈표 3〉 참조).

〈표 3〉 티어체계(Tier system) 내용

단계	내용
Tier Ⅰ	개념적으로 분명하고, 방법론과 기준이 수립되어 있어 국가별로 데이터가 정기적으로 생성되는 지표
Tier Ⅱ	개념적으로 분명하고, 방법론과 기준이 수립되어 있으나 국가별로 데이터가 정기적으로 생성되지는 않는 지표
Tier Ⅲ	방법론과 기준이 수립되지 않고 개발 중이거나 시험 중이 지표

출처: UN (2016, p.2) 재구성

〈표 4〉 각각의 목표와 티어체계

목표 / Tier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합계	%
Ⅰ	3	8	15	3	3	6	4	10	8	4	2	1	0	2	6	9	15	99	41.1%
Ⅱ	4	2	7	4	4	0	0	6	1	0	7	2	2	0	1	7	2	49	20.3%
Ⅲ	4	4	3	2	6	5	2	1	3	5	6	9	4	8	5	6	5	78	32.4%
미정/ 다중	1	0	1	2	1	0	0	0	0	2	0	1	1	0	2	1	3	15	6.2%
합계	12	14	26	11	14	11	6	17	12	11	15	13	7	10	14	23	25	241	

출처: 저자작성

〈표 4〉은 SDGs 각각의 목표와 그들의 티어체계을 보여준다. 전체 241개 지표 중 티어 1로 분류되어 있는 지표는 전체의 41.1%이며 데이터 확보와 방법론에 대해 아직 논의가 필요한 티어 2, 3단계 지표를 합하면 이미 52.7%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절반 이상의 지표가 아직 논의를 통해 구체화 되어야 하고 또한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아래 〈표 5〉는 전체 목표 중 환경관련 목표와 관련된 티어별 지표분표를 보여주고 있다. 전체 목표와 비교해 볼 때 환경관련 목표 중 티어 1은 27.6%로 이미 데이터가 확보되어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지표는 SDGs 전체 비율(41.1%)보다 훨씬 적은 상황이다. 티어 2와 3을 합하면 67.1%로 SDGs 전체 비율(52.7%)보다 훨씬 큰 수치로 환경관련 지표에 대해 재검토 및 방법론상의 논의가 특히 더 많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특히 목표 12(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은 13개 지표 중에 오직 한 개만이 티어 1 지표이며, 목표 13(기후변화)의 경우 티어 1 지표는 한 개도 없는 반면 7개 지표 중 4개 지표가 티어 3 지표로, 목표 12, 13은 지표에 있어서 추가적 논의가 특히 많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표 5〉 환경관련 목표와 티어체계

목표 / Tier	6	7	11	12	13	14	15	합계	비율 (%)
Ⅰ	6	4	2	1	0	2	6	21	27.6%
Ⅱ	0	0	7	2	2	0	1	12	15.8%
Ⅲ	5	2	6	9	4	8	5	39	51.3%
미정/ 다중	0	0	0	1	1	0	2	4	5.3%
합계	11	6	15	13	7	10	14	76	

출처: 저자작성

3. 환경영역 목표

1) 목표 6: 물과 위생

목표 6은 이행수단 2개의 목표를 포함한 8개의 세부목표와 11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표 2〉 참조), 물과 위생 목표는 기존 MDGs에도 나타나 있는데, MDGs 목표 7 중 3번째 목표에 해당하며 SDGs는 이를 좀 더 세부적으로 발전시킨 것으로 보인다. MDGs 7.c 세부목표는 크게 식수와 기초 위생 상태로 나뉘는데 MDGs 성과를 보면, 식수의 경우 전 세계 인구 중 개선된 식수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비율이 1990년 76%에서 2015년 91%로 이는 MDGs의 목표를 달성한 수치이다. 반면에 개선된 위생시설에 대한 접근성 비율 변화는 1990년 전 세계 인구 54%에서 2015년 68%로 그 비율은 증가하였으나 MDGs 목표 달성에는 미치지 못하였다(UN, 2015:58). MDGs 달성을 통해 환경지속성(식수와 기초 위생상태)이 개선되었음은 자명한 사실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세아니아,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지역, 북아프리카 지역은 식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고,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동남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및 캐리비안 지역은 기초 위생시설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다(UN, 2015). 이는 여전히 개도국 지역이라 여겨지는 지역은 식수와 기초 위생상태 개선의 노력이 지속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MDGs의 식수와 위생시설 목표 내용을 보면 MDGs는 식수와 위생시설의 서비스 보급의 보편적 접근에만 치중한 나머지 위생형태, 보급에 있어서 평등(여성 및 아동 같은 취약계층에 보급), 식수와 위생시설의 모니터링 및 안전성에 대한 고려 등은 배재되어 있는 듯 하며 이에 대한 한계점이 SDGs 목표6에서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ICSU and ISSC(2015)는 SDGs 목표 6에서 세부목표 6.4, 6.5, 6.6 이 세 개의 목표는 하나로 통합될 수 있으며[5] 6.a. 목표는 SDGs 목표 10(국가 내 국가 간 불평등 완화)에, 6.b. 목표

는 SDGs 목표 16(모든 수준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증진, 모두에게 정의에 대한 접근 제공 및 효과적이고 책임있으며 포용적인 제도 구축)에 통합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지표의 경우 티어 1이 6개, 티어 3이 5개로 물과 위생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지표의 방법론과 데이터의 가용성 여부에 대한 논의가 아직 많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각각의 목표와 명확한 관련이 있는 측정가능한 지표가 개발되어야 하며 각 국가데이타가 없어 글로벌데이터로 사용하게 될 경우 각 국가의 지표선(baseline) 설정에 대한 논의도 있어야 할 것이다.

5) ICSU and ISSC(2015)는 세 개의 세부목표를 '2030년까지 생태계를 포함한 수자원 보호, 통합적 수자원 관리를 통한 효율적인 수자원 사용과 거버넌스를 통해 물 부족으로 인해 고통 받는 인구를 절반으로 감소'로 통합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

〈표 6〉 SDG 목표 6: 물과 위생

목표 6: 모두를 위한 식수와 위생시설 접근성 및 지속가능한 관리 확립			
세부목표	지표	Tier	DATA 기관
6.1 2030년까지 모두에게 안전하고 저렴한 식수에 대한 보편적이고 평등한 접근 달성	6.1.1 안전하게 관리되는 식수서비스를 이용하는 인구비율	1	WHO/ UNICEF
6.2 취약한 환경에 있는 여성과 소녀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2030년까지 모두를 위한 적절하고 평등한 공중위생 및 개인위생에 대한 접근을 달성하고 노상배변을 종식	6.2.1 비누와 물이 있는 손씻기 시설 등을 포함하여 안전하게 관리되는 위생시설을 이용하는 인구비율	1	WHO/ UNICEF
6.3 2030년까지 오염 감축, 위험 화학약품 및 유해물질 투기 근절과 방출 최소화, 미처리 폐수 비율 절반 이하로 감소 및 재활용 및 재사용률을 증가시켜 수질 개선	6.3.1 안전하게 처리되는 하수 비율	3	UN Habitat WHO, UNSD
	6.3.2 양호한 주변 수질을 갖춘 수계 비율	3	UNEP
6.4 2030년까지 모든 분야에 걸쳐 물 사용의 효율성을 상당히 증가시키고, 물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담수의 지속가능한 취수와 공급을 보장하며, 물 부족으로 고통 받는 사람의 수를 상당히 감축	6.4.1 시간의 흐름에 따른 물사용 효율 변화	3	FAO
	6.4.2 물 스트레스 수준: 가용한 담수자원 비율로서의 담수취수	1	FAO
6.5 2030년까지 적절한 경우 초국경 협력 등을 통하여 모든 수준에서 통합된 수자원 관리를 이행	6.5.1 통합물관리(IWRM) 이행 정도 (0-100)	1	UNEP
	6.5.2 물 협력을 위한 운영체계를 가진 초국적 유역비율	3	UNESCO
6.6 2020년까지 산, 산림, 습지, 강, 암반 및 호수를 포함한 물 관련 생태계를 보호하고 복원	6.6.1 시간의 흐름에 따른 물 관련 생태계 규모의 변화	3	UNEP
6.a 2030년까지 집수, 담수화, 물 효율성, 폐수 처리, 재활용 및 재사용 기술을 포함한 물 및 위생 관련 활동과 프로그램에 있어서의 국제적 협력 및 개도국에 대한 역량구축 지원을 확대	6.a.1 정부 지출계획에 포함되어있는 물과 위생시설 관련 ODA 총액	1	OECD
6.b 물 및 위생 관리 개선에 있어 지역공동체의 참여를 지원하고 강화	6.b.1 물과 위생시설 관리에 관한 운영정책과 지역사회 참여제도가 확립되어 있는 지방행정조직의 비율	1	WHO/ UNEP

출처: 김지현(2016, 발간예정), UN(2016)을 참고하여 재구성

2) 목표 7: 에너지

에너지 목표는 2개의 이행수단목표를 포함한 5개의 세부목표와 6개의 지표로 이루어져 있다(〈표 7〉 참조). 에너지는 장기적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다른 개발목표를 달성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원동력으로 작용한다. 에너지는 생산적 목적, 성평등, 교육, 산업개발, 보건 등의 전 인류 목표 달성을 위한 도구일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따라서 에너지는 경제발전 뿐 아니라 전 분야 인간발전을 주도하면서 전 부문과 전 국가에 걸쳐 통합적으로 작용하는 요소이라고 할 수 있다.

에너지 분야는 MDGs에서는 다뤄지지 않은 새로운 분야라고 하겠는데 다만 MDGs 목표 7의 4번째 세부목표(7.d.)인 "2020년까지 최소 1억 명의 빈민가 거주민의 삶의 질을 현저히 향상"을 통해 지속가능한 에너지 차원에서 에너지의 보편적 접근성을 제공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고 확대해석해 볼 수 있다(김태균 외. 2015). 목표 7의 내용은 현대적 에너지 서비스, 재생가능에너지, 에너지효율성 등 이 세 가지가 중심이 되고 있는데 이는 UN 사무총장이 2011년부터 주도하고 있는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에너지(Sustainable Energy for All: SE4ALL)' 이니셔티브 달성 목표가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3가지 에너지 목표[6]와 내용적인 면에서 상당히 일치하는 것을 보이고 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에너지는 우리 생활에 여러 가지 관점에서 중요한 요소이므로 에너지 문제의 해결(혹은 에너지 목표 달성)은 삶의 질 향상, 에너지 문제로 발생되는 문제의 개선, 에너지 수급확보 및 에너지 안보 강화 등 여러 가지 삶의 편의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홍은경, 2013).

세부목표를 자세히 보면 5개 목표 중 앞의 세 개의 목표는 SE4ALL 과 내용적으로 일치하므로 지표에 있어서도 이미 상용되는 데이터를 쓸 수 있으므로 바로 적용에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 다만 내용에 있어서 명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가령 7.1.에서 '저렴하고 신뢰성 있는 현대적인 에너지(affordable, reliable and modern energy)'에 대한 정의와 7.2.에서 '상당한(substantially)'에 대한 정의 및 기준, 7.3.에서 '에너지효율개선(improvement in energy efficiency)에 대한 정의가 그것이다. 두 개의 이행수단목표에 대해서는 그 모니터링 지표가 둘 다 티어 3에 속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요구되나 그 내용을 7.1~3에서 광범히 하게 포함하고 있기에 이 두 개의 세부지표는 삭제되어도 무방하다고 보기도 한다(ICSU and ISSC(2015).

6) 목표 1. 현대적 에너지 서비스의 접근보장(Universal access to modern energy services), 목표 2. 에너지 효율성 향상 두 배 증가(Doubling global rate of improvement of energy efficiency), 목표 3. 글로벌 에너지 믹스에 대한 재생에너지 비율 두 배 증가(Doubling share of renewable energy in global energy mix)

〈표 7〉 목표 7: 에너지

목표 7: 지불가능하고 믿을 수 있으며 지속가능한 현대식 에너지원에 대한 접근성 확보			
세부목표	지표	Tier	DATA 기관
7.1 2030년까지 저렴하고 신뢰성 있는 현대적인 에너지 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 보장	7.1.1 전기접근성을 가진 인구비율	1	WB
	7.1.2 청정연료와 기술들을 주로 사용하는 인구의 비율	1	WHO
7.2 2030년까지 전 세계 에너지원 구성에서 재생에너지 비율을 상당히 증대	7.2.1 전체 최종 에너지 소비에서 재생에너지 비중	1	WB/UNSD
7.3 2030년까지 전 세계 에너지 효율성 개선율을 두 배 증대	7.3.1 일차에너지와 GDP 차원에서 측정한 에너지 집중도	1	WB/UNSD
7.a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성 및 진보된 청정 화석연료 기술을 포함한 청정에너지 연구와 기술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협력 강화 및 에너지 기반시설과 청정에너지 기술에 대한 투자를 증진	7.a.1 천만불 약정을 목표로 2020년부터 매년 동원되는 금액	3	OECD
7.b 2030년까지 개도국, 특히 최빈개도국, 군소도서개도국 및 내륙개도국에서 각국의 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현대적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서비스를 모두에게 공급하기 위한 기반시설을 확대하고 기술을 개선	7.b.1 GDP의 비율로 측정되는 에너지 효율에 대한 투자 및 지속가능개발 서비스인프라와 기술을 위한 금융거래 해외직접투자 규모	3	IEA

출처: 김지현(2016, 발간예정), UN(2016)을 참고하여 재구성

3) 목표 11: 도시

목표 11은 이행수단 3개의 목표를 포함한 10개의 세부목표와 15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목표 11은 앞〈표 2〉에서 보이듯이, 기존 MDGs에도 나타나 있는데 MDGs 7목표 중 4번째 목표(4.d.)에 해당하며 SDGs 목표 11은 이를 좀 더 세부적으로 구체화한 것으로 보인다. 2000년에서 2014년 동안 3.2억의 빈민 거주민들이 개선된 물, 위생, 주거지 등의 시설에 접근이 가능하게 되었는데 이는 '2020년까지 적어도 1억 명의 빈민가 거주민의 삶을 현저하게 향상'이라는 MDGs 목표치는 이미 상회한 수치이다(UN, 2015). 하지만 빠르게 증가하는 인구증가와 도시화로 인한 개도국의 주거 문제는 해결되지 못한 채 문제는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 세계 도시화 비율은 2014년 기준으로 51%를 넘어섰고, 또한 2050년에는 66% 정도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으며, 주목해야할 사실은 이러한 도시화 증가 현상이 주로 개도국에서 일어날 것이라는 데 있다(UN, 2014). 현재 인구증가와 함께 도시화가 개도국에서 심화됨에 따라 개도국의 주거수준은 악화되며 주거서비스를 공급할 수 없어 결과적으로 빈민가가 증가하고 그들의 주거 수준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앞으로 이러한 상황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SDGs 목표 11은 인구증가와 개도국 도시화 심화배경과 함께 설정되었는데 MDGs가 인구과도현상과 도시화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다루는데 효과적이지 못한 반면 SDGs 목표 11은 인류가 거주하는 도시를 확대하여 광범위하게 재해석하여 이 거주지는 포용적이며, 안전하며, 회복력이 있으며, 지속가능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SDGMUN, 2015). 또한 세부목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목표들은 주거지역, 교통수단, 도시화, 문화/자연적 문화제, 그리고 물과 관련된 자연재해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지표의 경우 티어 1이 2개, 티어 2가 7개, 티어 3이 6개로 목표 11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지표의 방법론과 데이터의 가용성 여부에 대한 논의, 용어의 정의와 범위 측면에서 내용적 보완이 필요하다. 특히 15개 지표 중 티어 1이 오직 2개 밖에 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지표에 대한 논의가 특히 요구되는 목표인데 몇 개의 지표의 경우는 지리공간정보 데이터 활용을 통한 데이터의 보완도 가능한 것으로 여겨진다(예: 11.3.1. 인구성장비율 대비 토지 소모 비율).

〈표 8〉 목표 11: 도시

목표 11: 포용적인 · 안전한 · 회복력 있는 · 지속가능한 도시와 인간 거주지 조성			
세부목표	지표	Tier	DATA 기관
11.1 2030년까지 모두에게 적절하고 안전하며 저렴한 주택 및 기초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고 빈민가를 개선	11.1.1 빈민가, 무허가 또는 적절하지 않은 주거지에서 거주하는 도시인구 비율	1	UN Habitat
11.2 2030년까지 취약계층, 여성, 아동, 장애인 및 노인의 수요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특히 대중교통 확대를 통하여 도로안전을 개선하여, 모두에게 안전하고 저렴하며 접근성이 좋으며 지속가능한 교통체제에 대한 접근을 제공	11.2.1 성별, 연령별, 장애여부별 대중교통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인구비율	2	UN Habitat
11.3 2030년까지 모든 국가에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화 및 참여적이고 통합적이며 지속가능한 인간 정주 계획 및 관리 역량을 강화	11.3.1 인구성장비율 대비 토지소모비율	2	UN Habitat
	11.3.2 정기적이고 인구구성비에 맞추어 운영되는 도시계획 및 관리에 시민사회가 구조적으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도시의 비율(%)	3	
11.4 세계 문화·자연 유산 보호를 위한 노력 강화	11.4.1 역사적 유산의 종류별 (문화, 자연, 복합, WHC 지정), 정부의 수준별 (국가, 지역, 지방자치),지출종류별(운영경비, 투자), 민간자금 종류별(현물기증, 민간비영리부문, 후원) 1인당 지출액	3	UNESCO-UIS
11.5 2030년까지 빈곤층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면서 물 관련 재난을 포함한 각종 재해에 의해 발생하는 사상자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인구를 대폭 축소하고 국내총생산량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제적 손실을 대폭 감소	11.5.1 인구 100,000당 재난의 영향으로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수	2	UNISDR
	11.5.2 주요 인프라에 대한 재난피해 및 기초서비스 붕괴를 포함글로벌 GDP 대비 재난으로 인한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	2	UNISDR
11.6 2030년까지 대기의 질과 도시 및 기타 폐기물 관리에 대한 중점관리를 통해 도시의 부정적인 1인당 환경 영향을 감축	11.6.1 도시에서 발생하는 전체 폐기물 중 정기적으로 수거되고 적합하게 최종 처리되는 도시 고체폐기물의 비율	2	UN Habitat, UNSD
	11.6.2 도시내 (인구가중치 적용) PM2.5 및 PM10 등으로 표기되는 연중 미세먼지 평균 수준	1	WHO
11.7 2030년까지 특히 여성, 아동, 노인과 장애인을 고려한 포괄적이고 접근 가능한 공공공간과 녹지환경 조성을 통해 안전하고 보편적인 접근권 제공	11.7.1 성별, 연령별, 장애여부 별 도시 내 대중에 개방되어있는 공공용지의 평균 비중	2	UN Habitat
	11.7.2 성별, 연령별, 장애의 정도 및 발생장소 별 지난 12개월 동안 신체적 또는 성적 추행의 피해자 비율	3	UNODC
11.a 국가적·지역적 개발계획 강화를 통해 도시, 도시근교 및 농촌지역 간 긍정적인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연계성 강화를 지원	11.a.1 인구증가예측과 소요자원을 통합하여 수립된 도시 및 지역개발계획을 이행하는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비율 (도시규모별)	3	UN Habitat
11.b 2020년까지 포용, 자원 효율성,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 재난 회복력을 위한 통합된 정책·계획을 채택·이행하는 도시와 정주지의 수를 상당히 증대하고, 2015-2030 센다이 재난위험경감 체계(Sendai Framework for Disaster Risk Reduction 2015-2030)에 따라 모든 수준에서 전체적인 재난위험관리를 개발·이행	11.b.1 『재난위험감축을 위한 2015-2030 센다이 프레임워크』과 궤를 같이 하는 지역재난위험감축전략을 채택하고 이행하는 지방정부의 비율	3	UNISDR
	11.b.2 국가 전체와 지방 재난위험감축전략을 보유한 국가의 수	2	UNISDR
11.c 현지 자재를 이용한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건축물을 확대하기 위해 최빈국에게 재정적, 기술적 지원 강화	11.c.1 현지 자재들을 활용하여 지속가능하고 회복력있고 자원효율적인 건축과 재건축에 배분되는 최빈국에 지원되는 재정지원 규모	3	UN Habitat

출처: 김지현(2016, 발간예정), UN(2016)을 참고하여 재구성

4) 목표 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증진

목표 12은 이행수단 3개의 목표를 포함한 11개의 목표와 13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지속가능소비 · 생산(Sustaina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이하 SCP)에 대한 개념은 시대별로 변천을 거듭하고 있으나 1994년 노르웨이 정부 주도로 개최된 오슬로심포지엄(Oslo Symposium on Sustainable Consumption)은 SCP를 "서비스와 제품의 사용이 기본적 요구에 부응하고 생활의 질을 높이되 서비스와 제품의 전생애주기에 걸쳐 자연자원과 유해물질의 사용 및 폐기물과 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고 미래세대의 요구 충족이 위협받지 않도록 하는 활동[7]"으로 정의하고 있다.

지속가능소비생산은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의 개념으로 1992년 리우 정상회의에서 처음으로 국제 정책의제로 언급이 되었으며 추후 리우+20 정상회담에서는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에 관한 10년 계획(10 Year Framework Programmes on Sustaina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Patterns)을 채택하였는데 이는 전 세계 지속가능소비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협력 체계로, 특히 개도국 대상 역량강화 및 기술적 · 재정적 지원을 제공한다[8].

10YFP는 현재 6개 우선분야에 대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전 세계 정부 및 이해관계자 간 협력을 촉진하고 있는데 ① 지속가능 공공구매, ② 소비자 정보, ③ 지속가능 관광, ④ 지속가능 빌딩과 건축, ⑤ 지속가능한 라이프스타일 및 교육, ⑥ 지속가능 식품체계 등이다[9].

〈표 9〉는 지속가능소비 및 생산 내용을 상기 설명한 10YFP 6개 프로그램 중심으로 나머지 SDGs 목표와의 관련성을 보여주고 있다. 표가 보여주듯이 지속가능소비 · 생산은 SDGs 전반에 걸쳐 관련이 있는 범분야 이슈이며, 지속가능한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이자 개개인 모두가 갖추어야하는 보편적 생활목표라고 여겨진다.

7) *the use of services and related products, which respond to basic needs and bring a better quality of life while minimizing the use of natural resources and toxic materials as well as the emissions of waste and pollutants over the life cycle of the service or product so as not to jeopardize the needs of further generations*

8) UNEP는 10YFP SCP의 이행을 총괄하는 사무국 기능을 담당하며 개도국의 지속가능소비 · 생산 프로그램 수립 및 이행을 지원한다.

9) http://www.unep.org/10yfp/Home/tabid/133135/Default.aspx

〈표 9〉 지속가능소비 및 생산과 SDGs 목표와의 연관성

10 YFP 프로그램	SDGs 목표
지속가능 공공구매	8. 경제성장과 일자리 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증진
소비자 정보	
지속가능 관광	8. 경제성장과 일자리 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증진
지속가능한 라이프스타일 및 교육	4. 교육 보장과 평생학습 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증진
지속가능 빌딩과 건축	7. 에너지 8. 경제성장과 일자리 11. 도시 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증진
지속가능 식품체계	2. 기아해소와 식량안보 3. 보건증진 4. 교육 보장과 평생학습 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증진

출처: 10YFP Board (2014) 재구성

세부목표의 경우 전반적으로 해석의 여지가 많은 언어와 모호한 목표를 가지게 되었다는 평가(ICSU and ISSC, 2015; 한국국제협력단, 2015:251)가 주를 이루고 있어 용어의 선정 및 정의에 있어서 재작업이 요구된다. 세부목표 중에는 목표임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목표치가 제시되지 않아 (가령, 12.2. '2030년까지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및 효율적 사용 달성') 이의 지표 역시 목표달성을 평가하기에 어려운 상황이 발생되기도 하였다. 세부목표 12.3, 12.6.-8.의 목표는 이행수단에 가까운 목표로 보이는 등 이행목표와 이행수단 간의 모호함 역시 존재한다(한국국제협력단, 2015:248). 지표의 티어에 있어서도 13개 지표 중 오직 1개만이 티어 1으로 목표 달성을 모니터하기에는 목포 12의 대부분의 지표에 대해 재검토 작업이 요구된다.

〈표 10〉 목표 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증진

목표 12: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패턴 보장			
세부목표	지표	Tier	DATA 기관
12.1 모든 국가들이 지속가능 소비와 생산을 위한 10개년 계획(the 10-Year Framework of Programme on Sustaina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Patterns)을 이행하되 이 과정에서 선진국들이 솔선수범하여 개도국의 개발단계와 역량을 고려	12.1.1 지속가능소비및생산(SCP) 국가이행계획 또는 국가정책에 우선순위 및 목표로 SCP가 주류화 되어 있는 국가의 수	미정	UNEP
12.2 2030년까지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및 효율적 사용을 달성	12.2.1 물질발자국 (MF) 및 일인당, GDP 당 MF	2	UNEP
	12.2.2 국내물질소비 (DMC)와 일인당/GDP 당 DMC	2	UNEP
12.3 2030년까지 소매 및 소비자 수준의 전 세계적인 1인당 식량 낭비를 반감(半減)하고, 수확 단계를 포함한 생산 및 공급사슬과정에서 발생하는 식량 손실 감축	12.3.1 글로벌 식품손실 지수	3	FAO, UNEP
12.4 2020년까지 합의된 국제적 체계에 따라 화학물질과 모든 폐기물에 대해 생애주기에 걸쳐 환경적으로 건전한 관리를 달성하고,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기, 물 및 토양에 대한 배출을 상당히 감축	12.4.1 유해화학물질과 폐기물에 관한 국제 다자간 환경협약 각각이 요구하는 정보제공에 관한 약속과 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국제다국간협정을 채결한 당사국의 수	1	UNEP
	12.4.2 처리방법당 일인당 유해폐기물, 유해폐기물의 처리비율	2	UNSD, UNEP
12.5 2030년까지 예방, 감축, 재활용 및 재사용을 통하여 폐기물 발생을 획기적으로 감축	12.5.1 국가전체의 재활용비율(ton)	3	UNSD, UNEP
12.6 기업, 특히 대기업 및 다국적기업으로 하여금 지속가능한 관행을 채택하고, 보고 주기에 지속가능성 정보를 통합시키도록 장려	12.6.1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발간하는 기업의 수	3	UNEP, GRI
12.7 국가 정책 및 우선순위에 따라 지속가능한 공공조달 관행을 추진	12.7.1 지속가능한 공공조달정책과 실행계획들을 이행하는 국가의 수	3	UNEP
12.8 2030년까지 세계 모든 곳에 있는 사람들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개발 및 생활방식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접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함	12.8.1 (i) 글로벌 시민교육과 (ii) 기후변화교육을 포함한 지속가능개발 교육이 국가 (a) 교육정책, (b) 교과과정, (c) 교사 교육 및 (d) 학생 평가에 주류화 정도	3	UNESCO
12.a 개도국이 보다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양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원	12.a.1 SCP 및 환경 친화적 기술관련 R&D 부문 개발도상국 지원량	3	UNEP, UNESCO, B
12.b 지역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유 문화·상품을 진흥하는 지속가능관광을 위해 지속가능 영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측정도구를 개발하고 추진	12.b.1 합의된 모니터링과 평가 기재가 있는 지속가능관광 전략 및 정책, 이행된 실행계획의 수	3	UNWTO
12.c 낭비적 소비를 조장하는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을 합리화하는 등 나라별 사정에 따라 시장 왜곡을 제거. 이 방안에는 개도국의 특정한 수요·여건을 온전히 고려하고, 빈곤층 및 영향을 받는 공동체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개도국 개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세제를 개혁하고 해로운 보조금이 존재하는 경우 환경적 영향을 반영하여 이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등의 방법 등이 포함	12.c.1 GDP 단위 당(생산과 소비) 화석연료 보조금 액수 및 화석연료에 대한 총 국가지출 대비 화석연료 보조금 비율	3	UNEP

출처: 김지현(2016, 발간예정), UN(2016)을 참고하여 재구성

5) 목표 13: 기후변화

목표 13은 이행수단 2개의 목표를 포함한 5개의 세부목표와 7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은 식량, 물, 에너지 안보, 이주 등 지구적인 여타 이슈와 상호 연계되어 있고 이로 인한 피해가 경제적인 피해로 가시화 되면서 국제사회에서 계속적으로 중요 의제로 논의되어 왔다. IPCC(2014)는 관측된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은 매우 크고 그 범위도 한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지구 시스템은 기후변화에 상당히 취약하며,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은 지역과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그 부정적인 영향이 증가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동시에 효율적인 적응을 통해서 이러한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따라서 효율적인 적응정책의 구축이 기후변화의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키는 핵심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기후변화의 원인을 바로잡고 부정정인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국제사회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이하 UNFCCC)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논의하여 왔다. 이에 지난 2015년 12월, 제 12차 파리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파리협정(Paris Agreement)를 채택하였는데 이는 2020년 만료 예정인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2020년 이후의 기후변화 대응을 약속한 국제협약이다. 파리협정은 선진국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었던 1997년 교토의정서와 달리 195개 당사국 모두에게 구속력 있는 보편적인 첫 기후합의라는데 그 의의가 있다.

기후변화 목표는 MDGs의 환경목표 7의 세부목표 4가지 중에는 포함되어있지 않은 새로운 목표이나 SDGs 의제 14번째 문단에서 기후변화를 “우리 시대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로 인식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모든 국가의 능력을 훼손시키는 부정적 영향”라고 말하고 있다[10]. 이를 통해서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 문제의 인식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다.

목표 13의 세부목표를 보면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국가단위 정책, 전략, 부문별 계획에 기후변화 대응책을 포함시킬 것을 세부목표를 통해 제안하고 있으며 또한 적응능력 향상을 위해 역량강화와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한 노력은 선진국 개도국의 구분 없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녹색기후기금’을 세부목표에 직접 언급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지원을 위해 설립된 기후재원인 녹색기후기금의 기금동원목표 달성을 국제사회에 촉구하고 있다.

목표 13의 세부목표를 목표치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세부목표가 목표치가 없이 모호하게 수사적인 표현으로 제시되어 있어 따라서 이를 모니터링하게 될 지표 역시 정확하게 정의되지 않았다. 지표의 경우 티어 1은 없으며, 티어 2가 2개, 티어 3이 4개로 목표 13

10) 14. Climate change is one of the greatest challenges of our time and its adverse impacts undermine the ability of all countries to achieve sustainable development...

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지표의 방법론과 데이터의 가용성 여부에 대한 논의에 있어 내용적 보완이 필요하다. 특히 13.1.1, 13.1.2.의 경우에는 범위의 설정이 모호하여 목표를 모니터링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세부목표와 지표 모두 용어의 정의와 범위 측면에서 내용적 보완이 필요하다.

〈표 11〉 목표 13: 기후변화

목표 13: 기후변화와 그 영향을 대처하는 긴급조치 시행			
세부목표	지표	Tier	DATA 기관
13.1 모든 국가에서 기후 관련 위험과 자연재해에 대한 회복력 및 적응 역량 강화	13.1.1 국가 전체와 지방 재난위험감축전략을 보유한 국가의 수	2	UNISDR
	13.1.2 인구 100,000당 재난의 영향으로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 수	2	UNISDR
13.2 기후변화 조치를 국가 정책, 전략 및 계획에 통합	13.2.1 식량생산을 위협하지 않으면서 기후변화의 부정적인 영향에 적응하고 기후회복력 및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는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통합된 정책/전략/계획 (국가적응계획, 국가적으로 결정된 기여금, 국민소통, 격년 단위로 업데이트되는 보고서 등을 포함)을 수립하거나 운용하는 것에 관해 논의해온 국가의 수	3	
13.3 기후변화 완화, 적응, 영향 감축 및 조기 경보에 관한 교육, 인식 증진, 인적 및 제도적 역량 증진	13.3.1 완화, 적응, 영향감소, 조기 경보 등을 초등, 중고등, 상급 교육과정에 통합한 국가의 수	3	
	13.3.2 완화, 적응, 기술이전, 개발 이행을 위한 제도, 시스템, 개인의 역량강화를 논의해 온 국가의 수	3	
13.a 기후변화 완화 조치 및 이행의 투명성 측면에서 개도국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2020년까지 매년 1000억 US달러 상당의 모든 자원을 동원하기로 한 UN기후변화협약 약속을 준행하고, 가능한 신속하게 녹색기후기금의 재원을 확충하여 완전하게 운용	13.a.1 천만불 약정을 목표로 2020년부터 매년 동원되는 금액	3	OECD
13.b 여성, 청년 및 지역·소외 공동체에 초점을 두는 것을 포함하여, 최빈개도국과 군소도서개도국에서의 효과적인 기후변화 관련 계획·관리 역량 제고를 위한 메커니즘을 촉진	13.b.1 여성, 청소년, 지방, 소외계층에 관심을 두면서, 효과적인 기후변화 관련 계획과 관리를 위한 역량 강화 메커니즘을 구현하기 위한 재정, 기술, 역량강화를 비롯한 특화된 지원을 받고 있는 최빈국 및 중소도서 개발도상국의 수	미정	

출처: 김지현(2016, 발간예정), UN(2016)을 참고하여 재구성

6) 목표 14: 해양자원

목표 14는 이행수단 3개의 목표를 포함한 10개의 세부목표와 10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해양은 지구 표면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후안정, 산소발생, 영양소순환, 식량생산, 해안보존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전 세계 인구의 75%가 바다와 해안근처에 거주한다는 측면에서(ICSU and ISSC, 2015) 인류에게 중요하다. 생물다양성이나 기후변화와 연계하여 다루어졌을 뿐 MDGs에서는 크게 고려되지 않았던 분야였던 해양생태계가 이번 SDGs에서는 독립 의제로 선정되었는데 이는 과거에 비해 해양분야의 중요성이 새롭게 두각되어 강조된 것으로 여겨진다.

목표 14의 세부목표를 목표치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다른 목표들과 마찬가지로 몇 개의 세부목표는 목표치가 없이 모호하게 수사적인 표현으로 제시(가령 14.3. 모든 단계에서 과학협력 강화 등을 통해 해양 산성화의 영향을 최소화 하고 이를 해결, 14.7. 2030년까지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사용으로 발생하는 군소도서국 및 최빈개도국의 경제이익 증진)되어 있어 따라서 이를 모니터링하게 될 지표 역시 정확하게 정의되지 않았다.

지표의 경우 현재 상태는 10개의 지표 중 오직 2개만이 티어 1이며 나머지 8개가 티어 3이다. 이는 목표 14는 대부분의 지표가 방법론과 데이터 확보에 있어서 제약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목표 14의 지표를 대신할 수 있는 지표로 정책관련 지표(예. 보전지역 비율%), 스트레스지표(예. 전체 어획에서 IUU가 차지하는 비율%), 환경상태지표(예. 대양 열함류량의 변화, 해양산성화, 해안 망그로브 면적 등) 등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ICSU and ISSC, 2015).

〈표 12〉 목표 14: 해양자원

목표 1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해양 · 바다 · 해양자원 보존과 지속가능한 사용			
세부목표	지표	Tier	DATA 기관
14.1 2025년까지 해양쓰레기 및 영양염류 오염을 포함, 특히 육지 기반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해양오염을 예방하고 현저하게 감축	14.1.1 해안부영양화 지수 및 플라스틱 부유성 폐기물 농도	3	UNEP
14.2 2020년까지 해양 및 해안 생태계의 회복력을 증진시키고, 그 복원을 위한 조치를 실행함으로서 심각한 악영향을 막기 위해 해양 및 해안생태계를 보호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	14.2.1 생태계기반 접근법을 사용하여 관리되는 배타적 경제수역의 비율	3	UNEP
14.3 모든 단계에서 과학 협력 강화 등을 통해 해양 산성화의 영향을 최소화 하고 이를 해결	14.3.1 합의된 대표시료채취지점들에서 측정되는 평균 해양 산도 (pH)	3	UNEP
14.4 2020년까지 효과적으로 어획량을 규제하고, 남획,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IUU) 및 파괴적인 어업 관행을 종식시키고, 실행 가능한 최단 기간 내에 적어도 생물학적 특성으로 결정되는 최대 지속가능한 양을 생산해낼 수 있는 수준으로 수산 자원량을 회복할 수 있도록 과학에 기초한 관리계획 시행	14.4.1 생물학적으로 지속가능한 수준 내의 어류자원 비율	1	FAO
14.5 2020년까지 국내법 및 국제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가용한 최상의 과학적 정보에 기초하여 해안 및 해양 지역의 최소 10%를 보존	14.5.1 해양 보호구역 범위	1	UNEP-WCMC
14.6 2020년까지 과잉어획능력 및 남획을 초래하는 어업보조금을 금지하고,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을 초래하는 보조금을 근절하며, 이와 같은 보조금의 신규 도입을 자제 (개도국과 최빈개도국에 대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특별·차등 대우가 세계무역기구 수산보조금 협상의 필수적인 부문이 되어야 함을 인정)	14.6.1 국가별 불법 · 비보고 · 비규제 어업을 근절하기 위한 국제적 기제들을 이행 차원에서의 진척수준	3	FAO
14.7 2030년까지 수산업, 양식업 및 관광의 지속가능관리 등을 통하여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사용으로 발생하는 군소도서국 및 최빈개도국의 경제 이익을 증진	14.7.1 소도서개발도상국, 최빈국 및 모든 국가에서 GDP에서 지속가능어업이 차지하는 비중	3	
14.a 해양 건강성을 증진하고 개도국, 특히 군소도서국 및 최빈국 개발에 대한 해양 생물다양성의 기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양기술 이전에 관한 정부간해양학위원회 기준과 지침(Intergovernmental Oceanographic ommission Criteria and Guidelines on the Transfer of Marine Technology)을 고려하여, 과학적 지식 증대, 연구역량 개발 및 해양기술 이전	14.a.1 전체 연구예산 중 해양기술 분야 연구에 배정되는 비율	3	UNEP
14.b 소규모 영세어민을 위해 해양 자원 및 시장으로의 접근성 확대	14.b.1 국가별 소규모 영세 어업의 접근권(access rights)을 인지하고 보호하는 법/규제/정책/제도의 도입 차원에서의 진척 수준	3	FAO
14.c "우리가 원하는 미래(The future we want)"의 158항에서 환기된 대로, 해양과 그 자원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법적 체계를 제공하는 유엔해양법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에 반영된 바와 같은 국제법이행을 통해 대양과 그 자원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강화	14.c.1 해양과 그 자원의 보호 및 지속가능한 사용을 위해 법/정책/제도를 통해 유엔해양법협약에 반영되어 있는 바와 같이 국제법을 이행하기 위한 해양관련 장치들을 비준, 적용, 이행하는 과정에서 진전을 이루고 있는 국가의 수	3	UNEP, FAO, LO, etc

출처: 김지현(2016, 발간예정), UN(2016)을 참고하여 재구성

7) 목표 15: 육상생태계

목표 15는 이행수단 3개의 목표를 포함한 12개의 세부목표와 14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생물다양성, 육지생태계는 생태 서비스 제공 및 인류에게 기본적인 물질 서비스 가령, 식량, 물, 에너지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인류에게 본질적으로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물리적 · 정신적 건강, 안전, 문화다양성, 사회관계를 다양하게 하는 요소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처럼 생물다양성과 육지생태계는 인류 웰빙에 있어서 모든 영역에 작용하는 이슈이며 따라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 건강한 생태계 관리가 요구된다(ICSU and ISSC, 2015).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의 한계수용으로 인해 생물종의 멸종이 시작되었고 이에 대한 우려에 힘입어 1992년 리우환경회의에서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이 채택되어 생물다양성 보존과 이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전 지구적 노력이 강조되었다.

생물다양성 목표는 이미 MDGs 목표 7의 두 번째 세부목표(7.b.생물다양성 감소를 억제하고 2010년까지 감소율을 현저하게 저하시킴)에 명시되어 있었다(〈표 2〉 참조). 대부분의 지역 및 대륙이 2000년 대비 2014년에는 생태계보전지역이 증가하였으나(UN, 2015) 이는 생물다양성 감소율의 유의적인 축소를 달성했다고 보이는 수치라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목표달성 실패의 아쉬움이 SDGs 목표 15에서 목표의 세분화로 표현되었다고 볼 수 있다.

세부목표와 지표를 보면, 생태 시스템별로 생물 다양성과 서식처의 보존, 복구, 복원 및 외래생물종 유입의 차단 및 방어를 목표로 수립하고 있는데 특히 멸종 위기종에 대한 보존과 야생 동식물 등에 대한 보존을 중심으로 지표가 설정되어 있다. 목표 15는 MDGs에 비해 세분화되어 그 목표가 잘 표현되어 있지만 보존해야 할 육상생태계의 구성원으로서 농 · 산 · 어촌 주민을 고려한 세부목표나 지표가 충분하게 설정되지 못한 아쉬움이 지적되고 있다(한국국제협력단, 2015). 또한 현재 제안된 지표는 다루는 지역 범위가 넓은 지표로만 구성되어 있는데 지역수준에서도 사용되고 통용되고 지표가 포함되어 지역의 생태계문제를 반영할 수 있도록 보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의 지식, 가령 원주민 고유지식 및 전통지식이 지표에 반영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지역사회 당사자, 시민사회, 그리고 원주민공동체와의 참여가 촉구된다.

세부목표에 있어서 ICSU and ISSC(2015)은 목표 15.2와 15.3을 하나로 15.a, 15.b, 15.c를 하나의 세부목표로 통합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며[11] 역시 다른 목표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세부목표 자체에 목표치가 제시되지 않은 것을 지적하고 있는 바, 다소 모호하고 수사적인 목표에 대한 검토와 정확하게 표현된 세부목표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지표의 재설정이 요구된다.

11) ICSU and ISSC(2015)는 15.2와 15.3을 '사막화, 홍수, 가뭄을 전 지구적으로 막고, 이로 인해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에 기여하기 위하여 척박하고 퇴화된 생태계, 특히 산림의 15%를 보존 혹은 복원'으로, 15.a, b, c를 통합하여 '생물다양성과 생태계를 보존, 복원, 지속가능하게 사용하고, 개도국과 선진국 모두 지속가능한 생계를 영위하는데 적절한 보상이 되도록 모든 자원의 원천으로부터 인적 · 물적 자원을 잘 운용하여 이를 현저하게 증가시킴'으로 통합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

〈표 13〉 목표 15: 육상생태계

목표 15: 육상생태계 보호와 복원 및 지속가능한 수준에서의 사용 증진, 산림의 지속가능한 관리, 사막화 방지, 토지황폐화 중단 및 회복, 생물다양성 손실 중단			
세부목표	지표	Tier	DATA 기관
15.1 2020년까지 국제협정 하의 의무에 따라 육지·내륙 담수생태계 및 그 서비스, 특히 산림·습지·산·건조지의 보존, 복원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보장	15.1.1 총 육지면적 중 산림 면적의 비율	1	UNEP-WCMC
	15.1.2 생태계 유형 별 보호구역에 의해 보호되는 육상 및 담수 생태계 주요 장소 (sites)의 비율	1	FAO
15.2 202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모든 형태의 산림에 대한 지속가능한 관리의 이행을 진흥하고, 산림벌채 중지시키며, 황폐화된 산림을 복원하고, 신규 조림과 재조림을 상당히 증대	15.2.1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진척도	3	UNCCD
15.3 2030년까지 사막화를 방지하고, 사막화·가뭄·홍수의 영향을 받은 토지를 포함한 황폐화된 토지와 토양을 복구하며, 토지황폐화 없는 세상을 이루도록 노력	15.3.1 전체 육지 중 황폐화된 토지의 비율	3	UNEP-WCMC
15.4 2030년까지 지속가능개발에 필수적인 편익 제공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생물다양성을 포함한 생태계 보전 보장	15.4.1 산악지역 생물다양성 보호구역 범주	1	FAO
	15.4.2 Mountain Green Cover Index	2	IUCN
15.5 자연서식지의 황폐화를 줄이기 위한 시급하고 중요한 행동을 취하고, 생물다양성 손실을 중지시키며, 2020년까지 멸종위기종 보호 및 멸종 예방	15.5.1 Red List Index	1	CBD
15.6 국제적으로 합의된 바와 같이, 유전(genetic)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분배를 진흥하고 유전자원에 대한 적절한 접근을 진흥	15.6.1 공평하고 공정한 혜택의 분배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행정적, 정책적 장치를 마련한 국가의 수	3	UNODC, CITES
15.7 보호동식물의 밀렵과 밀매를 종식시키기 위한 긴급한 조치를 취하고, 불법 야생동식물 제품의 수요와 공급을 다룸	15.7.1 밀렵되거나 불법으로 포획되어 거래되는 야생동물의 비율	1	UNEP
15.8 2020년까지 육상 및 수중 생태계 외래종 유입 예방과 함께 이들이 육지·수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상당히 감축하기 위한 조치를 도입하고, 우선순위종을 관리하거나 근절	15.8.1 급속히 확산되는 외래종을 방지하거나 통제하기 위해 관련된 국내법을 도입하고 이를 위한 자원을 배분한 국가의 비율	3	UNEP-SCBD
15.9 2020년까지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의 가치를 국가적·지역적 계획, 개발과정, 빈곤 감축 전략 및 회계에 통합	15.9.1 생물다양성 전략계획 2011-2020 Strategic Plan for Biodiversity 2011-2020)의 아이치 생물다양성 타겟2 (Aichi Biodiversity Target 2)에 따른 국내 목표 수립 진척상황	3	OECD, UNEP, B
15.a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사용을 위하여 모든 원천으로부터 재원을 동원하고 중대하게 확충	15.a.1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사용에 대한 공공지출 및 ODA	Tier /2	
15.b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를 위한 재정 지원을 위하여 모든 원천으로부터 그리고 모든 수준에서 상당한 자원을 동원하고, 보존·재조림 목적을 포함하여 개도국들이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를 증진하기 위한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	15.b.1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사용에 대한 공공지출 및 ODA	Tier /2	
15.c 지역공동체의 지속가능한 생계 기회 추구 역량 증대 등을 통하여 보호종의 밀렵·밀매 방지 노력에 대한 글로벌 지원을 강화	15.7.1 밀렵되거나 불법으로 포획되어 거래되는 야생동물의 비율	1	

출처: 김지현(2016, 발간예정), UN(2016)을 참고하여 재구성

Ⅴ. 결론

2015년은 국제사회에서 환경적으로 의미 있는 해였다. 2020년부터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신기후체제의 근간이 될 파리 협정(Paris Agreement)의 채택과 함께 환경 · 경제 · 사회를 동시에 고려하는 새로운 개발 아젠다인 SDGs가 채택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SDGs는 2016년부터 인류가 나아가야할 방향성을 17개의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1992년 UNCED부터 시작되었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노력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SDGs는 Rio+20에서 논의된 환경이슈가 세분화되어, 기후변화 및 자연보호에 대한 논의를 포함, 기후변화 및 생태계보호 관련 목표체계를 강화하여 7개의 목표에 확장되어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17개 목표 중에 7개 목표과 환경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환경이슈가 차지하는 중요정도를 표현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MDGs에서 다뤄지지 못한 에너지, 기후변화, 해양자원 및 오염문제, 산림이슈, 사막화, 토지 황폐화 등의 주제의 세부목표 제시를 통해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의 새로운 디딤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SDG에서 제시된 환경 관련 7가지 목표 고찰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중요시 하는 환경이슈를 파악하였다. 또한 이의 세부목표와 이를 이행하기 위한 이행지표를 고찰을 통하여 현재 제시된 세부목표와 이행지표가 향후 15년간 환경규범으로서 현재 문제를 잘 대변하고 해결책을 효율적으로 제시하고 있는가에 대한 검토를 시행하였다.

SDGs는 MDGs의 빈곤퇴치에 집중되었다는 한계점을 내용적으로 사회발전, 경제영역, 환경영역으로 확대함으로써 그 한계를 보완하였다. 하지만 많은 주제를 포함하는 의미 있는 결과물에도 불구하고 최종 합의된 내용이 방대하여 실제 MDGs와 같이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의구심이 존재한다. 실제로 MDGs는 그 목표와 세부목표만으로도 그 목표치와 내용이 명확하고 쉽게 이해되어 이를 모니터링하는 지표에 대해 해석의 어려움이 없었던 반면 SDGs의 경우 목표에 있어서 모호한 표현과 서술적이 묘사가 많아 목표 자체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따른다. 예를 들면 '상당하게(substantially) 감소' 등과 같은 주관적 판단이 들어가는 용어를 사용하여 목표를 이해하는데 있어 쉽지 않은 상황이 더러 발생하였는데 이러한 표현은 7개의 환경목표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다.

추가적으로 제기된 문제로는 목표 12의 경우처럼, 이행수단과 이행목표가 혼합되어 제시되어 있는 경우가 있었으며 목표 6, 15의 경우처럼, 여러 가지 제시된 세부목표를 통합할 것을 제안하는 의견이 있는 경우도 존재하였다. 이처럼 세부목표에 대해 용어의 사용 검토 및 세부목표 통합

여부 결정 등과 같은 전반적인 검토와 재작업이 요구된다.

세부목표의 수정과 함께 이를 모니터할 글로벌 지표 플레임워크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하다. 티어 2와 3인 당장 측정이 어려운 지표 혹은 아직 방법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지표는 SDGs 성과를 측정하기에 당장부터 어려움이 따른다. 티어 1의 적은 분포는 SDGs 17개 목표 전반에 나타나는 현상이나 환경분야에서 티어 2와 3의 분포는 다른 분야에 비해 도드라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초 조사자료의 연계를 통한 2차 자료 생산, 행정자료 혹은 빅데이터 사용, 지구 관측자료 및 공간정보 사용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고는 있으나(통계청, 2016) 지속가능성 평가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위해서는 자료의 가용성과 시계열적 모니터링이 중요하므로 측정가능성과 지속성을 일차적인 기준으로(고재경, 2014) 사용가능한 지표를 살펴보아야 한다.

SDGs는 비록 법적구속력이 있는 문서는 아니지만 국제사회의 개발관련 제도와 방향을 이끄는 주요 규범으로 그 영향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까지 제시된 SDGs는 양적으로 이슈영역이 팽창한데 비해, 질적으로 이를 세분화하는 세부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제시된 지표에 대해 명확한 해법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SDGs가 국제사회에서 전세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주요 규범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SDGs 세부목표와 이행지표에 대한 재검토와 재작업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고재경. 2014.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지표 개발 및 모니터링 방안” 연구보고서. 경기: 경기개발연구원

관계부처합동. 2016.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세종: 환경부

김지현. 2014. “Post-2015 개발의제 동향연구 1: SDGs 초안분석”『개발과 이슈』제 19호.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_____. 2016. “SDGs 지표 확정과 의의”『개발과 이슈』제 25호.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발간예정)

김태균 · 이성훈 · 허태욱 · 황원규. 2015. “유엔의 Post-2015 개발의제와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주요 내용과 의의”. 서울: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

통계청. 2016. “지속가능발전목표 모니터링을 위한 글로벌 지표 마련”.『국가통계연구소식』vol.9. 대전: 통계청

임혜숙. 2015. “자원순환분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기반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 연구보고서. 세종: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2015. “2015년 지속가능발전 정책포럼-UN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지방의제21의 역할”『제 23차 지속가능발전 정책포럼집』. 광주: 푸른광주21협의회

한국국제협력단. 2015.『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수립현황과 대응방안』.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홍은경. 2013. “Post-2015 체제 대응을 위한 에너지 분야 ODA 지원방안” 연구보고서.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IPCC. 2014. “Summary for Policymakers, Climate Change 2014: Impacts, Adaptation and Vulnerability.” available at http://ipcc-wg2.gov/AR5/images/uploads/WG2AR5_SPM_FINAL.pdf (접속일: 2016.7.15.)

KEI 2015.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KEI 포커스 vol.3. No.1. 세종: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SDGMUN. 2015. “2016-2030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SDGs 종합 보고서.” SDGMUN 자료수집보고서. 서울: SDGMUN

UN. 2015.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15”, available at http://www.un.org/millenniumgoals/2015_MDG_Report/pdf/MDG%202015%20rev%20(July%201).pdf (접속일: 2016.7.15.)

___. 2016. “Provisional Proposed Tiers for Global SDG Indicators, draft as of March 24.” available at http://unstats.un.org/sdgs/files/meetings/iaeg-sdgs-meeting-03/Provisional-Proposed-Tiers-for-SDG-Indicators-24-03-16.pdf (접속일: 2016.7.5.)

10YFP Board. 2014. “Potential contribution of the 10YFP Programmes to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A paper from the Board of the 10 Year Framework of Programmes on SCP (10YFP) with the support of the 10YFP Secretariat”, available at http://www.unep.org/10yfp/Portals/50150/10YFP%20board%20paper.pdf (접속일: 2016.7.15.)

ICSU and ISSC. 2015. “Review of targets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the science perspective.” Paris: ICSU, available at http://www.icsu.org/publications/reports-and-reviews/review-of-targets-for-the-sustainable-development-goals-the-science-perspective-2015/SDG-Report.pdf (접속일: 2016.7.5.)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점검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 모색[1)]

박영실 (통계청 통계개발원 통계사무관)

목차

Ⅰ. 서론
Ⅱ. 2030 의제의 후속조치 및 평가 원칙
1. 기본 원칙
2. 국가 차원으로의 전환
Ⅲ. 국내 SDGs 이행 체계 논의 현황
1. 총괄조직 이슈
2. 모니터링 이슈
Ⅳ.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위한 제언
1. 국가지표 개발
2. 온라인 플랫폼 구축
3. 국제기구 자료제공 및 품질관리
V. 결론: 통계청의 역할

1) 본 논문은 통계청의 공식적 입장이 아닌, 필자의 개인적 입장임을 밝혀둔다.

Ⅰ. 서론

글로벌 차원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의 이행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골격이 거의 갖추어졌다. 2015년 9월 국제연합(United Nations, 이하 UN) 총회에서 17개 목표(goals) 및 169개 세부목표(targets)가 채택된 데 이어, 이 목표들의 이행 진척도를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241개 지표(indicators)가 올해 3월 UN통계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2] SDGs에 관한 기관 및 전문가그룹(Inter-Agency and Expert Groups on SDGs, 이하 IAEG-SDGs)이 UN통계처의 작업을 이어받아 지난 1년간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법을 통해 이 지표를 개발하였다(UN, 2016).

물론 현재의 글로벌지표 리스트가 완벽한 형태는 아니다. 지표는 고도의 정교화 된 작업을 요구하는 것으로 방법론 개발 및 자료 가용성의 확장 등에 따라 향후 지속적으로 개선될 예정이기 때문이다(IAEG-SDGs, 2016a). 그러나 이번 UN통계위원회의 결정 이후 많은 국가들이 본격적인 SDGs 이행체제를 가동시키고 있어, 이에 발맞추어 우리나라도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SDGs를 채택한 UN 결의문서인 「세계의 변혁: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이하 2030 의제)」는 〈그림 1〉과 같이 ① 비전과 원칙을 담고 있는 선언문, ② SDGs 목표 및 세부목표, ③ 이행수단과 글로벌 파트너십, ④ 후속조치 및 평가의 4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1〉 2030 의제 구조



출처: UNDG (2015)

2) 241개의 지표 중 9개는 다목적지표로 2~3개의 세부목표에서 반복되므로 실제 지표의 수는 230개이다. 본 논문에서는 글로벌, 지역, 국가에 따른 지표를 구별하기 위해 각각을 글로벌지표, 지역지표, 국가지표로 통칭하고자 한다.

2030 의제는 인간(people), 지구(planet), 번영(prosperity), 평화(peace), 파트너십(partnership)이라는 5개 주요 영역에서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로 구체화하여 도출해내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모든 이해당사자의 참여와 글로벌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으며, 이 목표들은 국가, 지역 그리고 글로벌 차원에서의 정기적이고 포용적인 후속조치에 의해 평가될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중 본 논문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후속조치 및 평가 부문이다. 「2030 의제」는 새로운 목표의 단순한 제시에 머무르지 않고, SDGs를 달성하기 위한 이행수단을 목표 17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는데, 그 중 하나가 통계를 활용한 모니터링이다(권율, 2015). 모니터링은 구체적인 지표를 기초로 하여 진행될 예정인데, 글로벌 차원의 정부 간 협의과정에서 통계가 의제의 한축을 차지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UNESCAP, 2014).

이처럼 엄격한 증거를 기반으로 한 의사결정을 강조하는 환경으로의 변화는 본격적인 SDGs 이행에 앞서, 정부를 비롯한 시민사회, 학계, 기업 등 이해당사자들에게 여러 측면에서 도전과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모니터링 체계 구축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핵심사항들을 설명함으로써 체계 구축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2030 의제」에 제시되어 있는 기본 원칙을 따르되, 국내 지속가능발전관련 기존 메커니즘을 SDGs의 야심찬 포부를 구현할 수 있는 메커니즘으로 전환함으로써 국가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Ⅱ. 2030 의제의 후속조치 및 평가 원칙

1. 기본 원칙

「2030 의제」 제74항에는 후속조치 및 평가를 위한 9가지 기본 원칙이 제시되어 있다(〈표 1〉 참고). UN은 후속조치 및 평가가 ① 국가상황을 고려하여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되, ② 보편적이고 통합적이어야 하며, ③ 장기적으로는 국가가 정보기반정책을 추진하도록 지원해야 함을 설명하고 있다. 그 과정은 ④ 참여적이며,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⑤ 어느 누구도 뒤쳐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이행체계는 ⑥ 기존 메커니즘을 활용함으로써 국가부담을 최소화해야 하고, ⑦ 접근가능하며, 시의적절하고, 신뢰성 있는 세분화된 고품질의 자료에 근거해야 하며, ⑧ 개도국의 통계역량강화를 지원하고, 동시에 ⑨ UN 등 국제기구의 도움을 받아 진행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표 1〉 후속조치 및 평가 기본 원칙

1	모든 후속조치와 평가는 자발적이고 국가가 주도하며, 국가의 현실·역량 및 개발 수준의 차이를 고려하고 정책 자율성과 우선순위를 존중할 것이다. 국가의 주인 의식이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의 열쇠이므로, 글로벌 차원의 평가는 주로 국가의 공식 원천 데이터에 기초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국가 차원 평가의 결과가 지역 및 글로벌 차원 평가의 기초가 될 것이다.
2	이 과정은 이행수단을 포함한 보편적인 목표와 세부목표의 보편적이고 통합적이며 상호 연관된 특성과 지속가능발전의 세 가지 측면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모든 국가에서 목표들의 이행 진전을 추적할 것이다.
3	이 과정은 보다 장기적인 지향점을 유지하고, 성과·도전·격차 및 중요한 성공요소를 파악하며, 국가들이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정책을 선택하도록 지원할 것이다. 이 과정은 필요한 이행수단과 파트너십 동원에 기여하고, 해결책과 모범사례 파악을 지원하며, 국제 개발 체제의 조율과 효과성을 증진할 것이다.
4	이 과정은 모든 사람을 위해 공개적이고 포용적이며, 참여적이고 투명할 것이며, 모든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보고를 지원할 것이다.
5	이 과정은 인간중심적이고 성 인지적이며, 인권을 존중하고 최빈곤층, 가장 취약한 계층 그리고 가장 뒤처진 사람들에게 특히 초점을 맞출 것이다.
6	이 과정은 가능한 경우, 기존의 플랫폼과 과정을 기초로 하여, 중복을 피하며, 국가의 상황·역량·수요와 우선과제에 부응할 것이다. 동 과정은 부상하는 문제와 새로운 방법론 개발을 감안하여 시간이 흐르면서 진화하고, 국가 행정 부처나 기관의 보고 부담을 최소화할 것이다.
7	이 과정은 철저하게 국가주도의 평가와 함께 고품질의 접근가능하며 시의적절하고 신뢰성 있으며, 소득·성·연령·인종·민족·이주상태·장애와 지리적 위치 및 국가적 맥락에서 적절한 기타 특징으로 세분화된 자료에 입각한 증거에 기초할 것이다.
8	이 과정은 개도국, 특히 아프리카 국가, 최빈개도국, 군소도서개도국, 내륙개도국 및 중소득국에서 국가 데이터 체계와 평가 프로그램 강화를 포함한 역량구축 지원 개선을 필요로 할 것이다.
9	이 과정은 UN 체제와 기타 다자기관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것이다.

출처: UN (2015a)

후속조치 및 평가는 글로벌, 지역, 국가 차원의 다층적인 메커니즘을 통해 체계적으로 구현될 것이다(〈표 2〉 참고). 이 중 모든 차원의 후속조치 및 평가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국가에 있다. 각 국가는 상황에 맞는 지속가능발전전략을 수립하고, 국가 및 지방 차원의 정기적이고 포용적인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이 과정에는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지역 차원에서는 국가별 평가를 토대로 상호학습, 모범사례 공유 및 공통 목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데, UN지역위원회와 같은 지역포럼을 활용할 수 있다. 지역 차원의 후속조치 및 평가는 국가 차원과 글로벌 차원을 매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글로벌 차원의 후속조치 및 평가는 국가 및 지역 차원에서 제출한 자료 등을 토대로 작성된 사무총장의 연례이행보고서에 근거하여 진행된다. 이 때 UN총회(4년 주기) 및 경제사회이사회(1년 주기) 주관의 고위급정치포럼(High-Level Political Forum)이 감독역할을 하게 된다. 이 포럼에서는 각 국가의 성공사례·도전과제·교훈 등의 경험이 공유되고, 범분야 이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이다.

〈표 2〉 글로벌, 지역, 국가 차원에서의 후속조치 및 평가

글로벌	47. 총회·경제사회이사회 주관 고위급 정치포럼은 글로벌 차원에서 후속조치 및 평가를 감독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82. 동 포럼은 성공사례·도전과제·교훈 등 경험의 공유를 촉진하고, 후속조치를 위한 정치적 리더십·지침·권고를 제공할 것이다. 포럼은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전반적인 일관성과 조율을 증진할 것이다. 동 포럼은 본 의제가 적절하고 야심찬 상태로 유지되도록 보장하고, 진전·성과 및 선진국·개도국이 직면한 도전 그리고 새롭게 부상하는 문제들에 대한 평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83. 고위급 정치포럼의 후속조치·평가는 글로벌 지표 체계 및 국가 통계 체계가 생산한 자료 그리고 지역 차원에서 수집된 정보를 기반으로 사무총장이 UN 기구와 협력하여 준비할 지속가능발전목표에 관한 연례 이행 보고서가 활용될 것이다. 고위급 정치포럼은 또한 과학과 정책간 연계를 강화하면서 정책결정자들의 빈곤 근절과 지속가능발전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강력한 증거 기반 문서가 될 수 있는 글로벌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를 활용할 것이다 85. 범분야 문제를 포함한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주제별 이행 진척도 동 포럼에서 논의될 것이다.
지역	80. 지역·소규모지역 차원의 후속조치·평가는 자발적 평가를 포함한 상호학습, 모범사례 공유 및 공통 목표에 대한 논의를 위한 유용한 기회를 적절히 제공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점에서 지역·소규모지역 위원회·기구들의 협력을 환영한다. 포용적인 지역 평가는 국가 차원의 평가에 기초하고,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고위급 정치포럼 등을 포함한 글로벌 차원의 후속조치·평가에 기여할 것이다. 81. 지역 차원의 기존 후속조치·평가체계를 기반으로 충분한 정책 자율성을 허용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식하면서, 모든 회원국들이 참여하기에 가장 적합한 지역포럼을 물색하도록 권고한다. UN지역위원회가 이러한 점에서 회원국들을 계속 지원하기를 권고한다.
국가	47. 정부는 향후 15년간 목표와 세부목표 이행의 진전과 관련하여 국가, 지역 및 글로벌 차원에서 후속조치 및 평가에 대한 일차적 책임이 있다. 78. 우리는 모든 회원국들이 이 의제의 전반적인 이행에 대해 가능한 조속히 야심찬 국가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한다. 이는 지속가능발전목표로의 전환을 지원하고, 국가발전·지속가능발전전략과 같은 적절하게 준비된 기존의 계획 문서에 기초할 수 있다. 79. 우리는 또한 회원국들이 국가가 주도하고 국가·지방 차원의 정기적·포용적 진전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도록 권고한다. 이러한 평가는 국가 상황·정책과 우선과제에 따라 토착민, 시민사회, 민간부문 및 기타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에 기초해야 한다. 국회와 기타 기관들 또한 이러한 과정을 지원할 수 있다.

출처: UN (2015a)

2. 국가 차원으로의 전환

국가별 SDGs 이행을 위해서는 글로벌 차원의 목표를 국가 차원으로 전환해야 한다. 예를 들면, SDGs 17개 목표 가운데에서도 국내에 적용이 가능한 목표들을 선정하고 그 목표들 간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한다.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를 원안 그대로 국내 현실에 적용하게 되면 많은 오류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우리의 정치 · 경제 · 사회적 조건에 맞게 재해석하거나 재구성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다(김태균 · 김보경 · 심예리, 2016). 그러나 목표를 국가적인 상황이나 현실에 곧바로 적용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의 수요(needs), 강점,

도전상황 등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국가발전계획에 대한 광범위한 지지와 대중의 관심, 그리고 조정과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과 예산제도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며 이행 진척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해 자료 수집과 보고 체계의 개선도 필수적으로 요구된다(UNESCAP, 2015).

국가 단위의 SDGs 연착륙 지원기구인 UN개발그룹(United Nations Development Group, 이하 UNDG)은 계획부터 이행, 그리고 점검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8개 업무영역을 제안하고 있는데[3], 그 내용은 〈표 3〉과 같다. 계획단계에서는 ① 대중의 관심을 유도하고, ②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관점을 적용하며, ③ SDGs 재설계가 필요하고, 이행단계에서는 ④ 수평적 그리고 ⑤ 수직적 정책 정합성을 창출하고, ⑥ 소요예산을 배분해야 한다. 그리고 점검단계에서는 ⑦ 모니터링 및 보고, 책임성과 ⑧ 위험 요소 진단 및 적응성 증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그런데, 이 업무는 ①번부터 ⑧번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되지 않는다. 계획단계의 세 가지 업무와 함께 점검단계의 모니터링 업무는 조속히 준비를 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나머지는 5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UNDG, 2015).

거의 마지막 단계에 해당하는 모니터링 체계를 조기에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 현재 SDGs 이행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자못 크다. 여기에서는 본 논문의 주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모니터링, 보고 및 책임성 영역의 4개 세부업무, 즉 ① 지표 개발 및 자료 수집, ② 자료 세분화(disaggregation), ③ 모니터링과 보고체계, ④ 평가체계에 대해 알아보고, 관련분야의 해외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표 3〉 SDGs의 국내 적용을 위한 8개 업무영역

계획	1	대중 관심 유도
	2	다양한 이해당사자 접근방식의 적용
	3	국가, 국가하위 그리고 지방 수준 상황에 맞춘 SDGs 재설계
이행	4	수평적 정책 정합성 창출
	5	수직적 정책 정합성 창출
	6	소요 예산 배분
점검	7	모니터링, 보고 및 책임성
	8	위험 요소 진단 및 적응성 증진

주: 회색부분은 즉시시행(initiate now), 흰색부분은 장기시행(initiate over time) 영역을 의미함
출처: UNDG (2015)

3) UNDG는 1997년 창설된 기구로, 150여개 국가에서 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특별기관 및 사무국 그리고 집행프로그램, 자금을 통합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008년 이후 UN 최고위급 협력 포럼인 주요 협력 행정위원회(UN System Chief Executives Board for Coordination)의 한 축을 이루고 있으며, 현재 SDGs를 수행하는 UN 기구 중 하나에 해당한다.

1) 지표 개발 및 자료 수집

SDGs 이행 출발점으로서의 글로벌지표 리스트가 개발된 이후 국가 및 지역차원의 지표 개발이 개별적으로 진행될 것이며, 이 지표들은 글로벌지표 리스트를 보완할 것이다. 국가 및 지역 상황에 부합하는 지표개발을 위해서는 관련 기관과의 파트너십 구축이 중요하다. 실제로 상당수의 국가에서 지표개 발을 위해 통계청과 그 외 통계 생산기관, 그리고 국가발전전략을 주도하는 총괄기구 사이에 밀접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 협력체계의 중요한 역할은 IAEG-SDGs의 진행상황을 추적하고, 국가지표를 개발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기 수립된 국가통계발전전략을 수정하고, 여기에 SDGs 모니터링과 평가에 필요한 자료 수집 계획 등을 반영해야 한다(UNDG, 2015).

모니터링은 전통적인 현장조사 방법에 의해 수집한 자료 뿐 아니라 행정자료(administrative data)나 빅데이터(Big data), 통계적 목적의 지리공간정보(geo spatial information) 등 다양한 원천의 자료를 활용할 수도 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많은 양의 자료가 생산되는 현대사회에서 이 자료들의 신뢰성을 확보하여 SDGs 모니터링에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자료 혁명(data revolution)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겠다. 기존 조사자료 간 결합, 서로 다른 원천 자료 간의 결합 등을 통해 정보가 급속히 팽창하며, 이들을 지속가능발전 정책수립 근거에 활용하는 것이다.

지표개발 관련 해외동향은 어떠한가? 유럽국가의 경우 1992년 리우(Rio)에서 열린 UN 환경개발회의(이하 리우회의)의 결과물인 「의제21(Agenda 21)」에 따라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이 틀을 재편하여 SDGs를 포용하고 있는데,[4] 이들 국가에서 지표 개발과 모니터링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은 대부분 통계청이다. 에스토니아, 프랑스, 핀란드, 독일, 헝가리, 이탈리아,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스웨덴, 스위스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외에 벨기에를 비롯한 사이프러스, 덴마크 등 일부 국가에서 태스크포스팀(Task Force Team)이나 정부간 위원회, 환경부 등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표의 수는 적게는 15개(프랑스), 17개(노르웨이), 34개(핀란드), 많게는 150개(이탈리아), 155개(헝가리)인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70개와 100개 사이의 지표를 개발하여 사용 중이다(Pisano, Lange, Lepuschitz and Berger, 2015).

4) 의제21에는 각국 정부가 경제적 · 환경적 · 사회적 목표를 균형적이고 통합된 방식으로 달성하기 위한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을 채택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유럽 내 많은 국가들이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을 수립하였다. 영국이 세계 최초로 1994년에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을 수립하였고, 그 뒤를 이어 독일과 프랑스가 각각 2002년과 2003년에 자국의 지속가능발전전략을 완성하였다. 2001년에는 EU 차원의 지속가능발전전략이 수립되었는데, 현재까지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을 수립 · 시행하고 있다(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16b).

2) 자료 세분화

자료 세분화는 SDGs의 '어느 누구도 뒤쳐지지 않게 한다(no one left behind)'라는 비전을 실천하기 위한 주요 통계전략이다. 새천년개발목표(Millenium Development Goals, 이하 MDGs)와 비교해 볼 때 중요한 차이점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다. MDGs에서는 국가 평균 수준에서의 변화를 추적하여 목표를 진전시켰다면, SDGs에서는 국가 전체 보다는 가장 취약한 집단의 특성을 부각시킴으로써 모두가 함께 잘 살아가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어느 누구도 뒤쳐지지 않게 한다'라는 포용성의 비전은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체적인 세부목표와 지표로 설정되어 있다. 2020년까지 세분화된 양질의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발도상국의 역량구축을 지원한다는 목표 아래 모든 지표가 공식통계의 기본 원칙을 준수하며, 소득, 성별, 연령, 인종, 민족, 이주상태, 장애, 지리적 위치 및 기타 특성에 따라 세분화 되어야 하고 각 국가는 세분화된 지속가능발전지표의 비율을 제공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표 4〉 세분화 관련 세부목표와 지표

세부목표	17.18 2020년까지 고품질의, 시의적절하며, 신뢰도 높은 데이터를 소득, 성, 연령, 인종, 민족, 이주상태, 장애, 지리적 위치, 기타 국가별 상황에 맞는 특성별로 세분화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개발도상국의 역량 구축 지원
지표	17.18.1 공식통계의 기본원칙에 따라 세부목표와 관련성이 있는 경우 국가적 수준에서 완전히 세분화된 형태로 작성된 지속가능발전지표의 비율

출처: UN (2016)

특정 지표가 어떠한 특성으로 세분화되어야 하는지, 세분화될 경우 구체적인 분류기준은 어떠한지 등에 대한 지침이 아직 제시되지는 않았으나, 세분화를 위해서는 현장조사 과정 전반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하위집단에 대한 신뢰할 만한 통계수치를 얻기 위해서 표본규모를 확대하거나, 취약집단을 추적하기 위한 별도의 자료수집방법이 요구될 수도 있다. 또한 지침에 제시된 세분화를 위해서 조사항목의 추가 혹은 개선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 외에도 자료분석 과정에서 행정자료 등의 보조정보를 활용한 간접 추정기법을 적용하여 소지역 단위의 통계치를 생산해낼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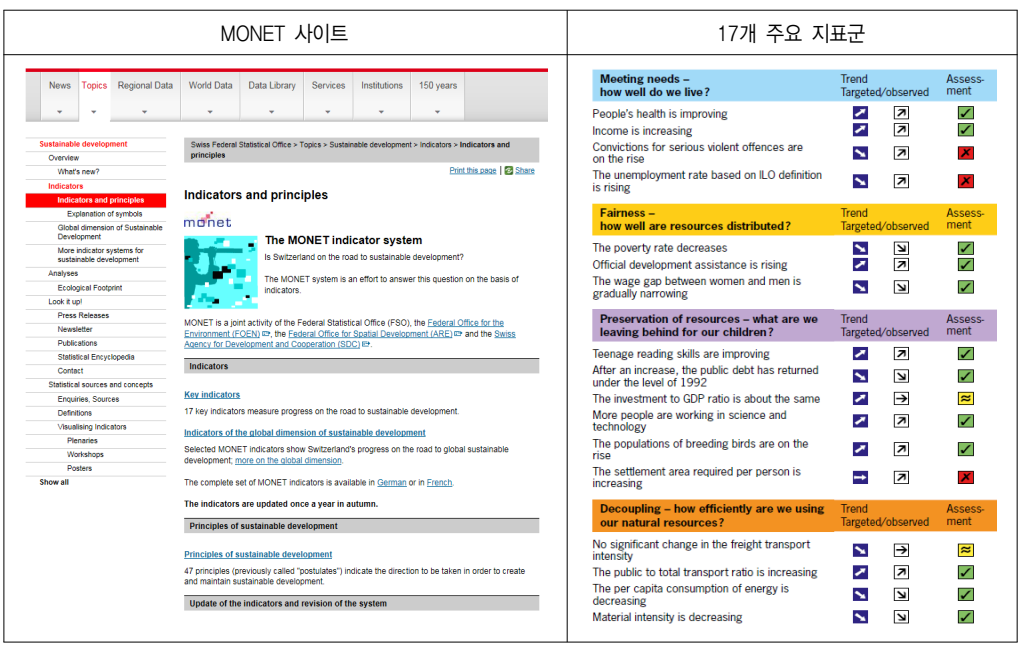
3) 모니터링과 보고 체계

모니터링은 보통 계량적인 방식을 이용해서 정기적으로 이행상황을 추적하고 그 내용에 대해 보고하는 것을 의미한다(UN, 2015b). UNDG(2015)는 SDGs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는 기존 자

료와 보고체계를 활용하고, 정보교환을 위한 온라인 시스템 등을 구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온라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 여러 국가 중 스위스의 MONET 지표 시스템(MONET indicator system)은 모범사례로 꼽힌다. 스위스는 지속가능발전전략의 현재 상황과 추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다른 국가와 비교해서 스위스의 현황을 보여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2003년에 통계청과 연방환경국, 공간개발연방사무국, 개발협력국이 연합하여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 모니터링 시스템은 75개 지표로 구성되며, 다른 국가와의 비교를 위한 글로벌 지표군, 17개 주요 지표군 등이 포함되어 있다. 지표는 매년 가을 정기적으로 갱신된다(FSO, 2016) (〈그림 2〉 참고).

〈그림 2〉 MONET 사이트 및 17개 주요 지표군



출처: FSO, 2016(좌); FSO, 2015(우)

한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대한 모니터링은 1년 주기, 2년 주기 등 다양하게 이루어진다. 이탈리아, 몬테네그로, 슬로베니아 등이 1년 주기인 반면 오스트리아, 에스토니아, 독일, 라트비아는 2년 주기로 실시한다. 한편, 체코의 경우 부정기적이다(Pisano et al., 2015).

4) 평가 체계

가공되지 않은 모니터링 자료가 충분한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지표의 변화 원인에 대해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 분석과정에는 정책, 프로그램, 혹은 프로젝트 등의 효과성에 대해 체계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UN, 2015b). 유럽지속가능발전네트워크(European Sustainable Development Network)는 세가지 차원의 평가 제도를 제안하고 있다. 첫째는 내부 평가(internal review)이다. 이는 정부 부처 내부 책임자에 의해 실시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는 외부 평가(external review)이다. 책임감 있는 연구소나 독립적인 연구자에 의한 평가가 여기에 해당하나, 유럽국가에서 이 평가방법을 갖고 있는 국가는 드물다. 셋째는 동료 평가(peer review)로 상호학습과정을 통해 모범사례를 공유하는 방법이다. 이 외에 감사부서(audit departments)에 의한 평가도 진행될 수 있다(Pisano et al.,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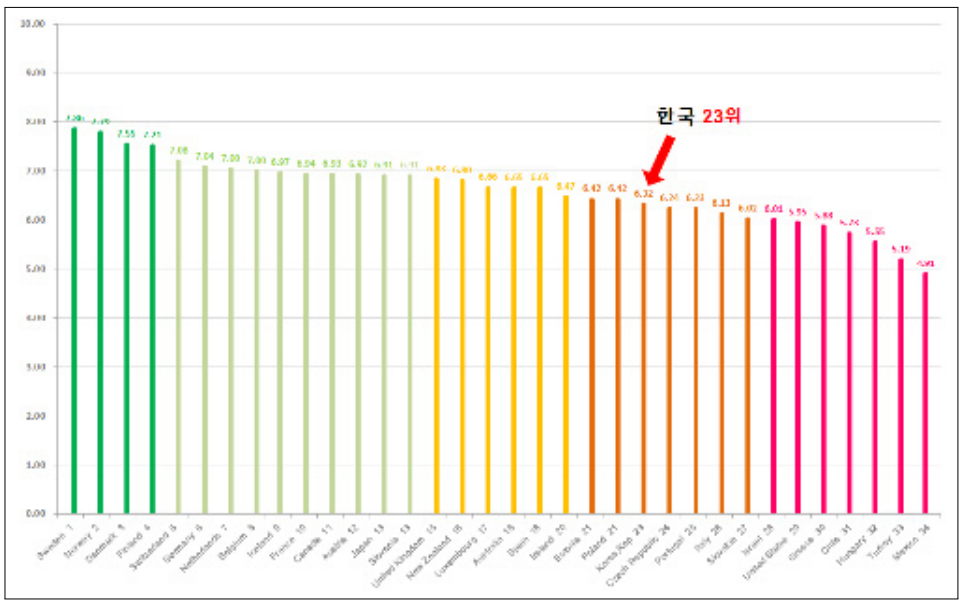
Ⅲ. 국내 SDGs 이행 체계 논의 현황

1. 총괄조직 이슈

선진국의 SDGs 이행정도는 어디쯤에 위치하고 있을까? 크롤(Kroll, 2015)은 17개 목표를 대표할 수 있는 34개 지표를 선정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이하 OECD) 회원국의 현재 지속가능발전의 위치를 보여준 바 있다. 〈그림 3〉에서 보듯 OECD 34개 국가의 지속가능발전 총합 점수는 10점 만점에 7.86점(스웨덴)에서 4.91점(멕시코) 사이에 분포하고 있으며, 한국은 6.32점으로 23위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순위보다도 '어느 국가도 모든 목표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곳은 없다'라는 것이다. 비교적 모범국가라고 할 수 있는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스위스 조차도 특정 영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5)]

5) 선정된 대표지표의 종류에 따라 분석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개별 영역별 점수 보다는 전체 연구결과가 갖는 함의에 대해서만 기술하고자 한다.

〈그림 3〉 OECD 국가의 SDGs 이행 현황



출처: Kroll, 2015 (그래프의 좌 · 우축 저자 변경)

우리나라도 SDGs 이행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나, 국내에서 이행체계 논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이행과제를 고민하는 정부주체는 많지 않은 상황이다. 이는 SDGs 자체가 광범위한 의제들을 포괄하고 있어 어느 한 주체가 독자적으로 SDGs의 달성을 위한 대응방안을 선도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김태균 외, 2016). 물론, 중앙 및 지방정부를 비롯한 시민사회, 학계, 기업 등 이해당사자 간의 수직적 및 수평적 통합을 위한 협력 체계를 대통령실 혹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구축하자는 의견은 여러 경로를 통해 제시되고 있다(양수길, 2016). 그런데 SDGs를 국내에서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 완전히 새로운 협의체 내지 주관기관을 설치하는 것보다 기존의 정부기관에서 지금까지 축적해 온 조직역량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범부처간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고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김태균 외, 2016). UN 또한 국가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체계의 활용을 권고하고 있는 바이다.

국내에서 가장 가능성이 있는 협력체계는 지속가능발전법에 의해 설립된 환경부 소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다. 이 위원회는 위원장, 정부위원 7명[6], 민간위원 25명 등 총 3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및 이행계획 추진상황 점검, 지속가능발전지표 작성 및 평가, 보고서 작성 및 공표 등의 역할을 맡고 있다. 지속가능발전법에 따라 매 5년마다 20년

6) 정부위원으로는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가 포함되어 있다.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있는데, 2006년 제1차 계획을 시행한데 이어 올해 1월에 제3차 기본계획(2016~ 2035년)을 수립하였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SDGs 채택이라는 글로벌 환경과 지난 평가 결과로 드러난 취약 분야 및 전문가 진단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위협 요인들을 반영하여 제2차 기본계획에 비해 그 내용과 범위를 수정하였다(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16a).

그런데 현 법령 체계 하에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SDGs 이행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되는 경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김태균 외, 2016). 그 이유는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에서 포괄하는 범위가 SDGs에 비해 협소하다는 것이다. 이는 SDGs 채택과정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출범 계기인 1992년 리우회의는 환경에 초점을 둔 지속가능발전을 주제로 하였으나, 2012년 UN지속가능발전회의(Rio+20)에서는 지속가능발전이 경제위기, 사회불안정, 기후변화, 빈곤퇴치 등 범지구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라는데 공감하여 SDGs 도입에 합의한 것이다. 그리고 이 논의는 2015년 종결되는 MDGs를 계승하는 Post-2015 논의와 통합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김지현, 2014). 환경 관련 지속가능발전 주제를 주요 목적으로 하였던 리우회의가 2012년에 SDGs를 설정하면서 그 주제가 확대된 것이다. 환경부와 통계청은 SDGs 세부목표와 제3차 기본계획과의 연관성을 분석하고 소관부처를 할당하는 작업을 진행 중인데, 그 결과 거의 모든 부처가 SDGs 세부목표 및 지표와 관계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SDGs 주제의 광범위성과 범부처 성격을 잘 보여주는 부분이다.

또한, UN은 SDGs 이행 검토를 위해 시의성과 신뢰도 등이 높은 양질의 세분화된 자료를 요구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통계청의 역할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통계청의 역할은 아주 미미한 편이다. 향후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SDGs의 총괄기능을 부여받게 된다면 그 지위의 격상, 관계부처와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통계청의 역할 정립이 중요한 화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2. 모니터링 이슈

총괄조직에 대한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모니터링 체계에 대한 논의는 거의 진행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앞서 지적된 바와 같이, 모니터링 체계는 SDGs 이행 초기에 구축되어야 이행 및 평가 과정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현재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2006년에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였다. 개발 초기에는 경제 · 사회 · 환경 3개 분야, 14개 영역, 77개 지표로 출발하였으나, 변화된 SDGs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올해 일부 지표를 수정보완하면서 84개 지표가 되었다. 지표체계를 보면 경제분야는 3개 영역(경제구조, 소비/생산, 정보화 등) 23개 지표,

사회분야는 6개 영역(형평성, 건강, 교육, 주택, 재해/안전, 인구) 32개 지표, 환경분야는 5개 영역(대기, 토지, 해양/연안, 담수, 생물다양성) 29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지속가능발전지표는 현재 2년 주기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2년 간의 단기평가와 기본계획 전체기간에 대한 장기평가의 두 부분으로 구분되어 진행되며, 해당 기간 동안 지표값의 변화를 통해 개선 추세와 악화 추세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있다. 이것은 '국가지속가능성 보고서'라는 이름으로 발간되고, 지속가능발전포털이라는 관련 사이트에 게시된다. 그러나 해당 사이트는 지속가능발전관련 동향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지표 모니터링 결과는 보고서를 통해서만 제공되고 있다.

Ⅳ.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위한 제언

1. 국가지표 개발

모니터링 체계 구축의 출발은 국가지표 프레임워크를 개발하는 것이다. 국가지표는 강건한(robust) 자료와 비용 측면에서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기존의 지표를 기반으로 하되, SDGs의 세 가지 차원, 즉 경제 · 사회 · 환경을 균형적으로 갖춘 통합적인 지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Pisano et al., 2015).

1) 국내 기존 지표 체계 검토

국내에서 경제 · 사회 · 환경 전 분야를 포괄하는 대표적인 지표체계로 지속가능발전지표와 함께 통계청의 국가주요지표와 삶의 질 지표, 정부합동의 e-나라지표가 있다. 〈표 5〉는 SDGs 지표를 포함하여 국내 기존 지표들의 주요 특성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먼저, 국가주요지표는 한국이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로 발전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보여 주고자 만들어진 지표이다. 그런데 이 지표는 지속가능발전지표와 무관하지 않다. 국가주요지표에 대한 연구는 1970년대 미국과 유럽의 여러 국가에서 시작하여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삶의 질 연구, 삶의 질 연구의 보완연구로서 2000년대 EU를 중심으로 전개된 사회의 질 연구, 그리고 1990년대 이후 경제 및 사회발전과 환경보존의 조화를 강조한 지속가능발전연구가 그 토대이다. 이처럼 다양한 지표 연구들의 성과를 바탕으로 살기 좋은 나라 개념을 사회 혹은 국가의 발전이라는 보다 종합적인 개념으로 체계화하려는 시도로 출발한 것이 국가주요지표이다(석현호 외, 2013).

국가주요지표는 총 15개 영역, 60개 하위영역, 139개 주요지표 및 186개 보조지표, 그리고 국제비교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영역별 구성을 보면, 경제부문은 5개 영역(국민계정, 재정/금융, 산업/생산, 고용/노동, 소득/소비)으로 구성되며 이것은 다시 20개 하위영역 40개 지표로 세분화된다. 사회부문은 9개 영역(인구, 가구/가족, 건강, 교육, 문화/여가, 주거, 교통, 안전, 사회통합)이 33개 하위영역과 82개 지표로 구분된다. 마지막으로 환경부문은 2개 영역(생활환경/오염, 생태환경/자연자원)으로 구성되었고, 이들은 9개 하위영역과 21개 주요지표로 나뉜다. 이 지표는 통계청과 한국사회과학자료원이 공동으로 2013년도에 개발하여 2014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현재 최근의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고자 지표 개편 작업 중에 있다.

삶의 질 지표는 기존의 경제성장 중심에서 삶의 질 제고로의 정책 전환에 따라 OECD의 「더 나은 삶 지표(Better Life Index)」 등을 근간으로 통계청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지표이다. 2008년에 개발 작업에 착수, 2014년부터 지표 서비스가 실시되고 있다. 그 영역을 보면, 물질적 부문과 비물질적 부문으로 구성되는데, 전자에는 소득/소비/자산, 고용/임금, 사회복지, 주거의 4개 부문이, 후자에는 건강, 교육, 가족/공동체, 문화/여가, 시민참여, 안전, 환경, 주관적 웰빙의 8개 부문이 포함된다. 총 81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나, 현재 2회 이상 측정값이 존재하는 79개 지표만 공개하고 있다(심수진 · 이희길, 2016).

한편, e-나라지표는 정부의 38개 중앙 부처들이 작성하여 통합·제공하는 국정통계 웹사이트로 2006년에 개발되었다. 국정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되는 지표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 부처에서 부처의 정책과 관련한 주요 지표들을 발굴한 것이다. e-나라지표 시스템은 작성 통계를 활용하여 정책을 수립하는 기관이 우선적으로 관리주체가 되고, 통계청은 시스템 제반사항을 관리하고 있다. e-나라지표는 현재 15개 영역, 65개 하위 영역, 705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는데 영역별 분류는 국가주요지표와 매우 유사하다(석현호 외, 2013).

국가주요지표, 삶의 질 지표, 그리고 e-나라지표 모두 통계청에서 관리 및 서비스를 하고 있다. 통계청 지표 사이트에는 지표정의서, 통계표 및 시계열 그래프와 함께 분석결과가 알기 쉽게 설명되어 있다. 이들 지표는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비해 비교적 자주 자료가 갱신된다. 이는 온라인을 통한 자료제공이 갖는 장점이기도 하다. 국가주요지표와 삶의 질 지표는 온라인 외에도 1년에 한번씩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특히 후자는 시계열 추세와 함께 개선 및 악화에 대한 평가도 실시하고 있다.

〈표 5〉 국내 지표의 주요 특성 비교

구분	지속가능발전지표	국가주요지표	e-나라지표	삶의 질 지표
구성	14개 영역 84개 지표	15개 영역 60개 하위영역 139개 주요지표	15개 영역 65개 하위영역 705개 지표	12개 부문 81개 지표
시작년도	2006	2014	2006	2014
모니터링주기	2년	수시	수시	분기
모니터링내용	추세 및 평가	추세	추세	추세 및 평가
자료제공 방법	보고서	보고서/온라인	온라인	보고서/온라인

출처: 각 지표 체계 검토 후 저자 정리

그런데 각 지표는 작성목적에 따라 영역 및 지표 구성에서 차이가 있다. 삶의 질 지표의 경우, 사람과 사회의 질적인 발전을 강조하여 경제성장 측면보다 개인 삶의 질 증진의 총합으로서의 사회발전에 치중하였다면,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국가주요지표는 경제·사회·환경의 지속가능성 간의 균형을 강조한다고 할 수 있다. 지속가능발전지표와 국가주요지표는 부문의 구성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으나 지표 항목의 구성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는데, 전자가 환경지표들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포함하고 있다(석현호 외, 2013). 이와 같은 차이는 국내 주요 지표 간 영역을 비교한 〈표 6〉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지속가능발전지표가 나머지 세 지표체계에 비해 환경 부문 영역을 더 세밀하게 구분하였다. 삶의 질 지표의 경우 물질과 비물질로 구분되어 경제 · 사회 · 환경으로 구분되는 다른 지표의 대분류 체계와 차이를 보이기는 하나, 영역별 내용만을 고려하여 연결할 경우 〈표 6〉과 같이 경제 · 사회 · 환경으로 구분될 수 있고, 주관적 웰빙은 이 모든 내용을 고려한 개인의 평가항목이므로 통합영역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7]

〈표 6〉 국내 지표 체계내 영역 비교

구분	지속가능발전지표	국가주요지표	e-나라지표	삶의 질 지표
경제	경제구조	국민계정	국민계정	
		재정/금융	산업/금융	
	소비/생산	산업/생산		
		고용/노동	고용/노동	고용/임금
		소득/소비	소득/소비	소득/소비/자산
	정보화			

7) 한편, e-나라지표는 지속가능발전지표, 국가주요지표, 삶의 질 지표와 달리 국가 정책 모니터링에 도움이 되는 통계를 제공해 주기 위하여 작성된 공급자 중심의 지표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으나(석현호 외, 2013), 통계청에서 서비스를 실시함에 따라 국가주요지표와 동일한 분류체계를 따르고 있다.

구분	지속가능발전지표	국가주요지표	e-나라지표	삶의 질 지표
사회	인구	인구	인구	
		가구/가족	가구/가족	가족/공동체
	건강	건강	건강	건강
	교육	교육	교육	교육
		문화/여가	문화/여가	문화/여가
	주택	주거	주거	주거
		교통	교통	
	재해/안전	안전	안전	안전
		사회통합	사회통합	
	형평성			
				시민참여
				사회복지
환경		생활환경/오염	생활환경/오염	환경
	대기			
	토지			
	해양/연안			
	담수			
	생물다양성			
		생태환경/자연자원	생활환경/자연자원	
통합				주관적 웰빙

출처: 각 지표 체계 검토 후 저자 정리

이러한 차이는 각 지표가 도출된 이론적 배경과 무관하지 않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역 및 지표 간에 상당한 교집합을 발견할 수 있다(〈부록1,2,3〉 참고). SDGs가 서로 다른 배경 하에 태어난 지표체계들을 아우르고자 하는 가장 최근의 시도라는 점에서 통합적인 국가지표 프레임워크의 개발이 필요하다.

2) 글로벌지표 검토 및 IAEG-SDGs 활동 대응

SDGs 국가지표 개발을 위해 국내 기존 지표들과 함께 글로벌지표에 대한 검토는 필수적이다. 우리나라의 상황과 부합하지 않거나 이미 세부목표를 달성한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글로벌지표 리스트 내에서도 방법론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방법론은 있으나 자료가 가용하지 않은 경우 등이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고려한다면 현 시점에서 국내에 적용가능한 것은 더욱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내 통계에 대한 검토를 통해 글로벌지표의 작성가능성을 평가하는 작업은 국가지표 개발 과정에서 반드시 진행되어야 한다. 이 작업을 통해 글로벌 차원에서 요구하는 이

상적인 자료 수준과 국내에서 제공 가능한 자료 사이의 격차, 개념 혹은 방법론 상의 차이 등을 파악할 수 있다.[8)]

국가지표 개발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점은 IAEG-SDGs의 활동이다. IAEG-SDGs는 글로벌지표 뿐 아니라 지표의 측정방법인 메타 데이터(meta data)의 제공 등 방법론 기준을 제시하는 책임주체이기 때문이다. 현재 방법론 여부 및 자료 가용성에 따라 지표를 분류(tier)하고,[9)] 그에 따라서 향후 방법론이 개발되어 있지 않은 지표군에 대한 개선 및 개발 계획을 2020년과 2025년에 각각 보고할 계획이므로 변경되는 상황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IAEG-SDGs, 2016).

마지막으로 국가지표 작성 과정에서 염두에 두어야 할 두 가지를 적시하고자 한다. 국가지표 프레임워크는 경제 · 사회 · 환경 전 분야를 통합하여야 하며, 그 과정에서 보편성만큼 국가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개별 국가가 자국의 상황에 적합한 지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그 지표가 글로벌 수준의 가치와 배치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향후 개발될 국가지표는 다른 모든 지표체계의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영역구성, 지표명, 측정산식 등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표준화된 체계를 만들고자 노력해야 한다.

2. 온라인 플랫폼 구축

최근에는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공개적이며 참여적인 평가방법을 운영하는데 상당히 효과적이다. 향후 개발될 국가지표의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위해 스위스의 MONET 지표 시스템과 국내 삶의 질 지표 시스템과 같은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 삶의 질 지표 시스템에서는 지표값과 지표정의서, 삶의 질 측정과 관련된 국내외 사례, 최근 소식 및 관련 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특히, 하향식(top down) 방식의 기존 지표 선정과정 보완을 위해 일반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개설하였다는 점이 특히 주목할 만하다(심수진 · 이희길, 2016).

SDGs의 목표 및 세부목표, 지표설정과정에서 모든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UN은 참여적이고 공개적이며 투명한 소통방식을 진행해왔는데, 국가지표 설정과정에서도 이러한 원칙

8) 통계청 통계개발원은 글로벌지표에 대한 국내 적용가능성 평가 연구를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와 진행 중이며, 오는 10월말에 연구가 완료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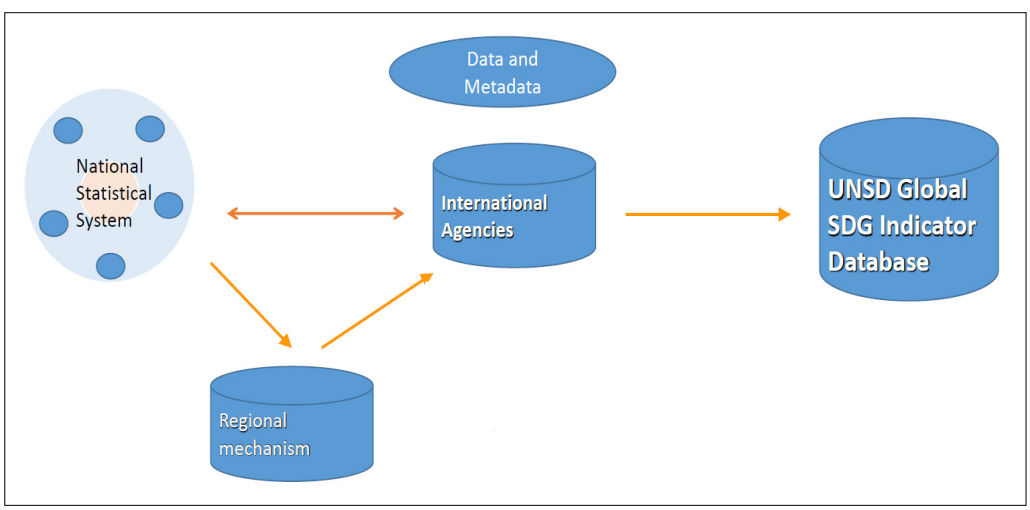
9) IAEG-SDGs는 방법론 및 자료 가용성의 여부에 따라 분류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표준이 정립되어 있고, 지속적으로 국가에 의해 자료가 제공되는 경우를 티어1, 방법론 및 표준은 정립되어 있으나 정기적으로 자료가 제공되지 못하는 경우를 티어2, 지표에 대한 방법론 및 표준이 없거나, 현재 개발단계인 경우를 티어3으로 분류한다.

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담보할 수 있는 메커니즘으로 온라인 의견수렴 공간은 그 좋은 예시가 될 수 있다. 아쉬운 점은 삶의 질 지표 결과에 대한 국가 간 비교 자료를 찾을 수 없다는 점이다. SDGs는 국가 차원과 함께 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비교가 중요하다. 따라서 향후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국가 뿐 아니라 지역 및 글로벌 차원도 동시에 모니터링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국제기구 자료 제공 및 품질관리

SDGs 모니터링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국내 차원에서의 모니터링 및 보고와 함께 국제기구에 대한 자료 제공이다. 현재 IAEG-SDGs에서 제안하고 있는 보고절차는 〈그림 4〉와 같이 국가가 국제기구(혹은 지역별 메커니즘)로, 국제기구는 SDGs 지표 데이터베이스에 자료를 제공하는 흐름이다. 물론 자료는 비교가능하고 표준화된 공식통계에 기반해야 하며, 만일 다른 원천자료나 방법론이 사용될 경우, 국가통계기관에 의한 검토 및 합의를 거쳐 투명한 방법으로 제시될 것이 강조되고 있다(IAEG-SDGs, 2016b). 따라서 모니터링 체계 구축 과정에서는 국제기구에 대한 자료 제공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4〉 IAEG-SDGs가 제안한 글로벌지표 보고 메커니즘



출처: IAEG-SDGs (2016)

분산형 통계시스템[10]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까지 해당 통계작성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국제기구에 자료를 제공하고 있었으며, 연 1회 통계청에서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정도이다. 이러한 체계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혹은 통합된 자료제공 절차가 필요한지 검토해야 할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 통계의 국제기구 오·남용 사례가 최근 이슈화된 적이 있다. 2014년의 「OECD Factbook」에서 성인흡연률이 남녀가 뒤바뀌어 제시된 것은 대표적인 사례이다(통계청, 2016). 이러한 배경 하에 통계청에서는 국제기구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개선을 추진 중이다. 현재 연 1회 실시하던 국제기구 자료제공 모니터링을 연 2회로 확대하고, 2017년 이후부터는 자료제공시스템(Korean Data Provision System)을 통해 국제기구에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제공통계에 대한 실시간 관리 방안을 준비 중이다. 또한, 이미 제공된 자료가 국제기구에서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모니터링할 예정에 있다. 이와 함께 통계청에서는 통계작성기관들로 하여금 국제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것을 권고하고, 품질진단 시 국제기준 정합성 등을 집중적으로 평가할 계획에 있다(통계청, 2016a).

Ⅴ. 결론 : 통계청의 역할

지금까지 SDGs 이행 모니터링 체계 구축과정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들을 몇 가지 짚어 보았다. UN은 그 어느 때보다 통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SDGs 이행점검을 위해 신뢰할 만한 세분화된 고품질의 자료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통계역량강화와 자료 혁명이 논의되는 중이다. 이 과정에서 각 국가 통계청은 자연스럽게 SDGs 자료를 생산·관리·모니터링 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통계청에서도 새로운 모습이 필요하다.

첫째, 통계 생산 패러다임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현장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던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SDGs 모니터링에 한계가 있다. 행정자료, 빅데이터, 지리정보등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빠른 속도로 많은 양의 자료가 생산되고 있다. 이러한 자료를 공식적으로

10) 각국의 통계제도는 국가정책에 필요한 대부분의 통계를 통계청이 직접 생산·제공하는 집중형과 주요통계는 통계청이 하지만 각 기관의 고유업무수행을 위한 통계는 개별기관 책임아래 작성하는 분산형으로 분류된다. 분산형 제도를 운영중인 국가라도 통계의 중복생산 방지 및 품질관리를 위해 통계조정업무를 통계청이 맡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를 '집중형을 가미한 분산형 통계제도'라 부른다. 분산형 통계제도하에서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통계작성 지정기관 등 각 통계작성기관의 통계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통계조정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 통계 조정이란 분산형 통계제도에서 연유되는 통계활동의 중복을 방지하고 새로이 필요로 하는 통계를 개발하는 것 뿐 아니라 각종 통계작성의 기준을 설정하고, 통계기법의 개선을 통하여 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통계활동을 조화시키는 과정을 의미한다(통계청, 2013).

활용하기 위해 품질을 점검하고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철저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둘째, 통계 생산자에서 조정자의 모습으로 진화해야 한다(SDSN, 2015). SDGs 주제의 광범위성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모든 부처의 협력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통계 조정기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조정기능의 대상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시민사회, 학계, 기업 등 더 광범위한 통계 생태 시스템이 구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국가차원의 모니터링이 글로벌 차원의 모니터링에도 기여하기 위해서는 표준화된 통계시스템의 적용이 불가피하다. 개념 및 측정방법 등에 대한 일관적인 기준의 적용은 비교 가능성을 제고할 뿐 아니라 자료 제공 등의 과정에서 국가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 넷째 SDGs 이행 과정에서 어느 국가도 뒤처지지 않게 하기 위해 개발도상국에 대한 통계역량강화에 선진국들이 책임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SDGs에서 통계작성기관에 요구하고 있는 이와 같은 방향은 올해 통계청의 사업목표와도 부합한다. 2016년도 통계청의 4대 목표는 국가통계 생산패러다임의 변화, 국민수요에 부응한 통계개발개선, 데이터 개방 및 서비스 확대, 미래대비 국가통계 역량 제고이다. 현장조사방법의 선진화와 함께 행정자료 및 빅데이터 활용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통계 등 세분화된 통계를 생산하여 국민수요에 부응하며, 국가주요지표 등 통계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글로벌 리더로서의 역할 강화를 위해 SDGs 지표 연구 및 개도국 통계역량강화사업, 미래 통계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들도 수행 중이다(통계청, 2016b). SDGs 이행 모니터링 체계에서 통계청 역할의 중요성을 짐작해볼 수 있는 부문이다.

〈참고문헌〉

강상인. 2015. “UN SDGs의 한국화 방안: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주요 국가계획의 보완 방향과 통합운영 방안”. UN 2030 지속가능발전어젠다와 한국국가경영을 위한 활용방안과 국제개발협력 2.0의 모색 (2015.8.24. 컨퍼런스 보고서). 세종: KDI 국제정책대학원

김태균 · 김보경 · 심예리. 2016. “한국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국내 이행 정책수립을 위한 대응방안”. 외교부 연구용역결보고서. 서울: 외교부

김지현. 2014. “Post-2015 개발의제 동향연구1: SDGs 초안 분석”. 『개발과 이슈』 19호 (2014.12월).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권율. 2015. “개발재정을 위한 아디스아바바 행동의제: 한국의 역할과 과제”. UN 2030 지속가능발전어젠다와 한국국가경영을 위한 활용방안과 국제개발협력 2.0의 모색 (2015.8.24. 컨퍼런스 보고서). 세종: KDI 국제정책대학원

양수길. 2016.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국가협치에 대한 의의와 대응과제 토론회 기조발제”(2016년 6월 13일, 서울 프레스센터)

석현호 외, 2013. “국가주요지표연구 Ⅰ: 지표체계”. 통계청 연구용역보고서. 대전: 통계청

석현호 외. 2014. “국가주요지표 보정연구 Ⅰ: 연구 방법과 내용”. 통계청 연구용역보고서. 대전: 통계청

심수진 · 이희길. 2016. “삶의 질 측정: 국제동향과 통계청의 대응”. 『조사연구』 17(2): 185-205

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16a. “제3차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2016~2035)”. 관계부처합동

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16b. “2016년도 국가지속가능성 보고서(안)”. 관계부처합동

통계청. 2013. 『통계행정편람』. http://kostat.go.kr/portal/korea/kor.pi/6/3/index.static (접속일: 2016.7.14.)

_____. 2016a. “국제기구 자료제공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설명회 자료”. 대전: 통계청

_____. 2016b. “2016 주요 업무추진계획”. http://kostat.go.kr/portal/korea/kor.pi/3/1/index.static (접속일: 2016.7.14.)

FSO. 2015. “Sustainable Development–A Brief Guide 2015: 17 key indicators to measure progress”. Neuchâtel: Swiss Federal Statistical Office (FSO)

___. 2016. MONET Indicator system, available at www.bfs.admin.ch/bfs/portal/en/index/themen/21/02/01.html (접속일: 2016.7.14.)

IAEG-SDGs, 2016a. “47th Session of the Statistical Commission: Outcome on global SDG indicators”. Presented at the the third meeting of the IAEG-SDGs on 30 March-1 April, 2016, Mexico City

_____. 2016b. “Report Third Meeting of the Inter-Agency and Expert Group on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Indicators”(ESA/STAT/AC.318/L.3). Available at http://unstats.un.org/sdgs/files/meetings/iaeg-sdgs-meeting-03/3rd-IAEG- SDGs-Meeting-Report.pdf (접속일: 2016.7.10.)

_____. 2016c. “Global Reporting Mechanism”. Presented at the the third meeting of the IAEG-SDGs, 30 March-1 April, 2016, Mexico City

IEAG. 2014. “A world that counts: mobilising the data revolu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New York: United Nations

Kroll, Christian. 2015.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re the rich countries ready?”, Available at https://www.bertelsmann-stiftung.de/fileadmin/files/BSt/Publikationen/ GrauePublikationen/Studie_NW_Sustainable-Development-Goals_Are-the-rich-countries-ready_2015.pdf (접속일: 2016.7.1.)

Pisano, Umberto, Lisa Lange, Katrin Lepuschitz and Gerald Berger. 2015. “The European Context for Monitoring and Reviweing SDGs: How EU Member States and the European level are approaching the Post-2015 Agenda”. European Sustainable Development Network Quarterly Report No.37

SDSN. 2015. “Getting Started with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New York: SDSN, available at http://unsdsn.org/wp-content/uploads/2015/12/151211-getting-started-guide-FINAL-PDF-.pdf (접속일: 2016.7.14.)

UN. 2015a.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RES/70/1). New York: United Nations

UN. 2015b. “Thematic evaluation of monitoring and evaluation of the Millenium Development Goals: lessons learned for the post-2015 era” (E/AC.51/2015/3). New York: United Nations

___. 2016. “Report of the Inter-Agency and Expert Group o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Indicators” (E/CN.3/2016/2.Rev.1). New York: United Nations

UNDG. 2015. Mainstreaming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terim Reference Guide to UN Country Team. New York: UNDG, available at https://www.bertelsmann-stiftung.de/fileadmin/files/BSt/Publikationen/GrauePublikationen/Studie_NW_Sustainable-Development-Goals_Are-the-rich-countries-ready_2015.pdf (접속일: 2016.6.20.)

UNESCAP. 2014. “Post-2015 sustainable development agenda: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for Statistical Development”. STATS BRIEF (October 2014) Issue No.01. Bangkok: UNESCAP

〈부록1〉 지속가능발전지표

분야	영역	항목	지표	영역	항목	지표
사회	1. 형평성	1-1. 빈곤	01) 빈곤인구비율(%)	3. 교육	3-1. 교육수준	21) 고등학교 순졸업률(%)
			02) 소득불평등에 관한 지니계수			22)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
			03) 사회복지지출(%)			
			04) 노동소득분배율(%)			23) 공교육비 지출(%)
			05) 실업률(%)			
		1-2. 노동	06) 고용률(%)	4. 주택	4-1. 생활환경	24) 최소주거기준 미달 가구수
			07) 근로시간(시간/월)			25) 주택 수 (인구 1천 명당)
			08) 정규직대비 비정규직 임금비율(%)			26)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
			09)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비율(%)			
		1-3. 남녀평등	10) 남성대비 여성 임금비율(%)	5. 재해·안전	5-1. 범죄, 재해	27) 범죄발생률(건/10만 명)
			11)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12) 관리직 여성 비율			28) 자연재해 피해(명, 억 원)
	2. 건강	2-1. 영양상태	13) 유소년 영양 상태(%)			
		2-2. 사망률	14) 영아 사망률(%)			29) 사고(성)사망만인율(%)
			15) 자살 사망률(%)			
		2-3. 수명	16) 기대수명(세)	6. 인구	6-1. 인구변화	30) 인구 증가율(%)
		2-4. 식수	17)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			31) 인구 밀도(명/㎢)
		2-5. 건강관리	18) 국민의료비 중 공공재원 비율(%)			
			19) 유소년 전염병 예방주사			32) 고령인구비율(%)
			20) 비만율			
환경	1. 대기	1-1. 기후변화	33) 온실가스 배출량 (LULUCF 제외)	3. 해양/연안	3-1. 연안지역	48) 연안오염도(mg COD/L)
			34)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tCO_2/인)			49) 보호대상 해양생물종수(종)
			35) GDP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tCO_2/10억원)			50) 해양보호구역 면적 (㎢)
						51) 갯벌 면적 증감 (㎢)
					3-2. 어업	52) 주요지표종(5종)의 자원량 변화(만톤)
		1-2. 오존층	36) 오존층 파괴물질 소비량 (톤; HCFCs)			53) 면허권 당 양식어업량(톤)
		1-3. 대기질	37) 광역도시권별 대기오염도 (SO_2, NO_2, PM-10, PM-2.5, O_3) (초과횟수/측정지점)	4. 담수	4-1. 수량	54) 취수율(%)
	2. 토지	2-1. 농업	38) 농지면적 비율(%)			55) 1인당 1일 물소비량 (L/인/일)
			39) 무농약 이상 친환경인증 농산물 생산비율(%)			56) 물 재이용량 (백만톤)
			40) 식량자급률 (사료용 포함, %)		4-2. 수질	57) 4대강 수질오염도(mg/L) (BOD, T-P)
			41) 화학비료 사용량(kg/ha)			58) 농어촌 하수도 보급률(%)

분야	영역	항목	지표	영역	항목	지표
			42) 농약 사용량(kg/ha)			
		2-2. 산림	43) 국토면적 중 임야지역 비율(%)	5. 생물 다양성	5-1. 생태계	59) 자연보호지역비율(%)
			44)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인)			60) 국가생물종 목록수(종)
			45) 목재 벌채 정도(%)			
		2-3. 도시화	46) 도시화율 (%)			61) 멸종위기종 수(종)
			47) 수도권 인구 집중도(%)			
경제	1. 경제 구조	1-1. 경제이행	62) 국내총생산(GDP(억 US$)	3. 정보화 등	3-1. 정보접근	82)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수 (천 명, %)
			63) 1인당 GDP (US$)			
			64) 경제 성장률(%)			
			65) GDP 대비 순 투자율(%)		3-2. 정보 인프라	83) 온라인 신청가능 민원종류(건)
			66) 중소기업 부가가치비율			
			67) 소비자 물가지수			
		1-2. 무역	68) 무역수지 (백만 US$)			
		1-3. 재정상태	69) 조세부담률(%)		3-3. 과학기술	84) GDP 대비 R&D 지출 비율(%)
			70)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1-4. 대외원조	71) GNI대비 공적대외원조(ODA) 비율(%)			
	2. 소비/ 생산	2-1. 에너지사용	72) 1인당 에너지 소비량 (TOE/인)			
			73)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중 (%)			
			74) 에너지 원단위(TOE/백만 원)			
		2-2. 폐기물관리	75) 생활 및 일반폐기물 발생량 (ton/일)			
			76) 지정폐기물 발생량(ton/일)			
			77) 방사성 폐기물 발생량 (200L 환산드럼)			
			78) 폐기물 재활용률(%)			
		2-3. 교통	79)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80) 자전거 도로 총 연장 (km)			
			81)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록대수			

출처: 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16b)

〈부록2〉 국가주요지표

부문	영역	하위영역	주요지표	보조지표	국제비교지표
경제	국민계정	국내총생산	• 1인당 국내총생산	• 경제성장률	• 1인당 국내총생산 • 경제성장률
		소득분배	• 노동소득분배율	• 제도부문별 소득분배율	• 노동소득분배율
		투자	• 투자율	• 건설투자증가율 • 설비투자증가율 • 무형고정자산투자증가율	• 경상수지비율
		대외거래	• 경상수지비율		• 수출입비율
			• 무역의존도	• 주요 상대국별 수출비율 • 주요 상대국별 수입비율	
	재정과금융	재정규모와구성	• 정부 수입과 지출 비율	• 조세부담률 • 국민부담률	
			• 정부세입구성		
			• 정부지출구성		
		재정안정성	• 국가채무비율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비율 • 공공부문부채비율	• 국가채무비율
			• 재정수지비율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재정수지비율	• 재정수지비율
		금융시장규모	• 금융자산비율	• 주식시가총액비율 • 기업공개실적 • 총여신비율	• 금융자산비율
		금융시장안정성	• BIS자기자본비율	• 무수익여신비율	• BIS자기자본비율
			• 대외채무비율	• 단기외채비율 • 외환보유액비율	• 대외채무비율
		금융시장	• 국고채금리	• 기준금리 • 회사채금리	• 해외주요시장금리 • 해외주요정책금리
			• 코스피주가지수	• 코스닥주가지수	• 해외주요주가지수
			• 환율		• 해외주요통화환율
	산업과생산	산업구조	• 산업구성	• 산업집중도 • 식량자급률 • 전력공급예비율 • 서비스업 산업구성	• 산업구성
			• IT산업생산비율	• 반도체생산 • 디스플레이생산 • 바이오산업생산 • IT산업생산 세계시장점유율	
			• 외국인 직접투자 비율	• 거주자 해외직접 투자비율	• 외국인직접투자비율
		생산성	• 노동생산성	• 1인당 노동생산성지수 • 시간당 노동생산성지수 • 총 소요생산성증가율	• 노동생산성
			• 중소기업임금비율	• 기업규모별 영업이익률 • 중소기업 신규진입률	

부문	영역	하위영역	주요지표	보조지표	국제비교지표
		혁신	• 연구개발투자비율		• 연구개발투자비율
			• 특허출원증가율	• 연구개발지출대비 특허출원수 • 한국의 세계기술혁신 순위 • 한국의 세계기술수용성 순위	• 특허출원 수
	고용과 노동	고용	• 고용률	• 고용률(OECD 기준) • 경제활동참가율 • 실업률	• 고용률
			• 비임금근로자비율	• 고용주비율 • 자영업자비율 • 무급가족종사자비율	• 비임금근로자비율
			• 취업자의 산업구성	• 서비스업취업자비율 • 취업자의 직업구성	• 제조업취업자비율 • 도소매·숙박업 취업자비율 • 금융·보험·부동산·사업·서비스업 취업자비율
		임금	• 비정규직근로자 비율	• 한시적, 시간제 및 비전형 근로자비율	• 한시적 근로자비율 • 시간제 근로자비율
			• 임금격차 (임금10분위배율)	• 성별 임금차이 • 근로형태별 임금차이	• 임금격차 (임금10분위배율) • 성별임금차이
			• 저임금근로자비율	• 중위임금대비최저임금 • 최저임금액	• 저임금근로자비율 • 중위임금대비최저 임금
		근로조건	• 근로시간	• 근로형태별 근로시간 • 취업자 근로시간	• 근로시간
			• 산재사망률	• 산업재해율	
			• 일자리만족도	• 임금만족도 • 일자리장래성만족도	
		노사관계	• 노동조합조직률	• 근로손실일수	• 노동조합조직률 • 단체협약적용률
	소득과 소비	소득과 자산	• 개인소득	• 소득만족도	• 개인소득
			• 가구소득	• 소득분위별 가구소득원천구성 • 가구소득변화인식	• 가구소득
			• 가구순자산	• 소득분위별 가구순자산 • 가구자산과 부채 • 가구부채변화인식	
		소득분배	• 지니계수	• 소득5분위배율 • 상대적빈곤율	• 지니계수
		소비와 물가	• 소비지출	• 소득대비지출 • 가구 소비자지출구성 • 소비생활만족도	• 소비지출
			• 물가상승률	• 생활물가상승률	• 물가상승률 • 물가수준
		저축	• 저축률		• 가계저축률

부문	영역	하위영역	주요지표	보조지표	국제비교지표
사회	인구	인구규모	• 총인구	• 시도별인구	• 총인구 • 세계 주요 도시 인구
		인구변화	• 인구성장률		• 인구성장률
			• 출산율	• 조출생률 • 출생아수	• 합계출산율
			• 사망률	• 영아사망률	• 조사망률
			• 체류외국인	• 국적취득자수	
		인구구조	• 중위연령	• 인구피라미드	• 중위연령
			• 성비	• 출생성비	• 성비
			• 부양 인구비	• 고령화지수	• 부양 인구비
	가구와 가족	가족구성	• 가구원수		• 평균 가구원수
			• 한부모가구 비율	• 저소득층 한부모가구 비율	• 한부모 가구 비율
		가족형성	• 혼인율	• 평균초혼연령 • 결혼선호율 • 국제결혼비율	• 혼인율
			• 이혼율	• 평균이혼연령 • 이혼반대율	• 이혼율
		가족관계	• 가족관계 만족도	• 배우자만족도 • 자녀만족도	
			• 가사노동시간	• 가족시간	• 가사노동시간
		가족돌봄	• 어린이집이용률	• 육아휴직자수	• 어린이집 이용 비율
			• 노인과 자녀 동거율	• 부모부양의무수용률	
	건강	건강상태	• 기대수명	• 건강수명	• 기대수명 • 건강수명
			• 주관적 건강상태		• 주관적 건강상태
		건강결정 요인	• 흡연율	• 간접흡연율 • 청소년흡연율	• 흡연율
			• 음주율	• 알코올소비량	• 알코올소비량
			• 신체활동 실천율	• 걷기 실천율	• 신체활동 실천율
			• 비만율		• 비만율
		보건의료 서비스	• 의사 수	• 병상 수 • 간호사 수	• 의사 수 • 병상 수 • 간호사 수
			• 국민의료비비율	• 공공의료비	• 국민의료비 • 공공의료비
			• 암 생존율	• 대장암 생존율 • 유방암 생존율	• 대장암 생존율 • 유방암 생존율
			• DPT 예방접종률	• 노인 인플루엔자예방 접종률	• DPT 예방접종률 •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교육	교육기회	• 공교육비 비율	• 학생 1인당 공교육비	• 공교육비 비율
			• 사교육비	• 사교육 참여율 • 가구 교육비 지출률	

부문	영역	하위영역	주요지표	보조지표	국제비교지표
			• 취학률	• 고등교육기관진학률 • 학업중단율	• 취학률
			• 평생교육참여율	• 평생교육참여시간	• 평생교육참여율
		교육의 조건과 과정	• 교원 1인당 학생수	• 학급당 학생 수	• 교원 1인당 학생 수
			• 학교생활만족도	• 교육내용만족도 • 학부모학교교육만족도	• 학부모학교 교육만족도
			• 학습시간	• 학습종류별 학습시간 • 사교육시간	• 학습시간
		교육효과	• 교육년수	• 고등교육 이수율	• 교육년수
			• 기초학력미달률	• 과목별 기초학력미달률	• TIMSS 수학·과학 성취
			• 대학졸업자취업률	• 전공과 직업의 일치도 • 유휴청년층(NEET)비율	• 고등교육기관졸업자취업
	문화와 여가	문화지원	• 문화재정비율		
			• 문화여가비지출	• 소득분위별 문화여가비지출률	
		문화여가 활동	• 문화예술관람률	• 문화예술종류별 관람률	
			• 독서율	• 서적종류별 독서율	
			• 생활체육참여율	• 스포츠경기관람률	
			• 여가시간	• 여가활동종류별 여가시간 • 휴가활용률	• 여가시간
			• 여가만족도		
		미디어	• 인터넷이용률	• 인터넷서비스종류별 이용률	• 인터넷이용률
	주거	주택공급·관리	• 주택 수	• 주택유형별 주택재고 • 주택보급률 • 임대주택수 • 멸실주택수	• 주택 수
			• 주택건설 수	• 주택유형별 주택건설 수 • 임대주택건설 수	• 주택건설 수
		주택시장	• 주택매매가격변동률	• 주택유형별 주택매매가격변동률	• 주택가격변동률
			• 주택전세가격변동률	• 주택유형별 주택전세가격변동률	
		주거상황	• 주택임대료비율	• 소득계층별 소득대비임대료(RIR) • 소득계층별 소득대비주택가격(PIR)	• 소득대비주택가격
			• 자가점유율	• 주거점유형태 • 소득계층별 자가점유율	• 자가점유율
			• 주거면적	• 소득계층별 주거면적	• 주거면적
			• 주거환경만족도	• 주택만족도	
	교통	교통공급	• 승용차등록대 수	• 도로연장 • 철도연장	• 승용차등록대 수
		교통수요	• 대중교통수송 분담률	• 대중교통만족도 • 자동차평균주행속도	• 대중교통수송분담률

부문	영역	하위영역	주요지표	보조지표	국제비교지표
			• 통근시간	• 통학시간 • 1시간이상통근통학인구비율	• 통근시간
		교통환경	• 자동차에너지소비량	• 차종별 평균연비 • 차량유종별 평균연비	
			• 교통부문 신재생에너지소비율	• 친환경자동차보급률	• 교통부문신재생 에너지소비율
		교통비용	• 교통비지출	• 소비수준별 교통비	
			• 교통의 사회적비용		
		교통사고	• 도로교통사고발생건수	• 도로교통사고 사망자수	• 도로교통사고 발생건수 • 도로교통사고 사망자수
	안전	범죄	• 범죄율	• 범죄자수 • 소년범죄자율	• 살인범죄율
			• 범죄피해율		
			• 재범률	• 교도관수대비 수용자수	
		치안	• 경찰관 수	• 민간경비원 수	• 경찰관 수
		재해	• 자연재해피해액	• 자연재해주의보·경보발효횟수	
			• 화재피해액		
		안전에 대한 안식	• 사회안전인식도	• 위험종류별 안전인식도	
			• 범죄두려움		• 범죄두려움
	사회 통합	정치 및 사회참여	• 선거투표율		• 국회의원선거투표율
			• 여성국회의원비율	• 5급이상여성공무원비율	• 여성국회의원비율
			• 사회단체참여율		
		신뢰와 투명성	• 기관신뢰도		• 정부 및 사법기관신뢰도
			• 대인신뢰도		• 대인신뢰도
			• 부패인식지수		• 부패인식지수
		사회적 관계	• 자원봉사참여율	• 후원 및 기부 참여율	
			• 사회적 고립도		• 사회적 고립도
		삶의 기회와 만족	• 사회이동가능성인지도	• 주관적 계층인식	
			• 삶의 만족도		• 삶의 만족도
			• 자살률		• 자살률
		사회보장	• 공공복지예산비율		• 공공복지예산비율
			• 공적연금수급률		• 공적연금소득대체율
			• 기초생활보장 수급률	• 상대빈곤층의 기초생활보장수급률	
환경	생활 환경과 오염	기후·대기·소음	• 온실가스배출량	• 온실가스배출집약도	• 온실가스배출량 • 온실가스배출집약도
			• 대기오염도	• 대기오염물질배출량	• 대기오염도
			• 환경소음도	• 소음·진동민원건수	
		물환경	• 하수도보급률	• 하천수질오염도	• 하수도보급률
			• 상수도보급률	• 먹는물수질기준 초과율	• 상수도보급률

부문	영역	하위영역	주요지표	보조지표	국제비교지표
		폐기물·유해물질	• 폐기물발생량	• 폐기물재활용률 • 1인당 생활폐기물발생량	• 1인당 생활폐기물발생량
			• 화학물질배출량	• 방사성폐기물발생량	
		환경개선 노력·만족도	• 환경보호비용	• 환경예산	• 환경보호비용
			• 환경향상체감도	• 환경문제심각성인식도	
	생태환경과 자연자원	생물다양성	• 멸종위기종	• 야생생물유전자원	• 멸종위기종
			• 자생생물종	• 농업종자유전자원	• 자생생물종
		토지산림	• 경지면적		• 1인당 경지면적
			• 생태경관보존지역면적		• 생태보호지역면적
			• 유기농경작면적률	• 단위면적당 농약사용량	• 유기농경작면적률
			• 산림면적	• 산지타용도전환면적	• 산림지역면적
		해양수산	• 총 허용어획량 소진율		
			• 연안습지면적	• 해양보호구역면적	• 습지면적
		수자원	• 1인당 취수량	• 지하수이용량	• 1인당 상수도공급량
		에너지	• 1차 에너지 공급량	• 1인당 에너지소비량 • GDP대비에너지소비량	• 1차 에너지 공급량
			• 전력생산량	• 1인당 전력소비량 • GDP대비전력소비량	• 전력생산량
			• 재생가능에너지 비율	• 재생가능에너지시설 용량 • 재생가능에너지공급량	• 재생가능에너지비율

출처: 석현호 외 (2014)

〈부록 3〉 삶의 질 지표

분야	영역	지표	영역	지표
물질 영역	소득 · 소비 · 자산	1인당 GNI	고용 · 임금	고용률
		균등화 중위소득		실업률
		균등화 중위소비		근로자 평균 근로소득
		가구평균 순자산		근로시간
		지니계수		저임금근로자비율
	사회 복지	상대적빈곤율	주거	일자리 만족도
		소득만족도		1인당 주거면적
		소비생활만족도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 비율
		공적 연금 가입률		통근/통학 소요시간
		GDP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율		주거비용
		개인부담 의료비 비중		주거환경 만족도
비 물질적 영역	건강	기대수명	교육	유아교육 취학율
		고혈압 유병률		고등교육 이수율
		당뇨 유병률		평생교육 참여율
		주관적 건강평가		학업 중단율
		스트레스 인식정도		학생 1인당 사교육비 지출액
		비만율		PISA 백분율 순위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		대졸생 취업률
		소득계층별 의료미충족률		학교 교육 효과
				학교생활 만족도
	문화 · 여가	평균 여가시간	가족 · 공동체	가족접촉 빈도
		여가활동 만족도		가족관계 만족도
		시간 부족에 대한 인식		한부모 가구 비율
		1인당 국내외 여행일수		독거 노인 비율
				자살률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률		사회적 관계망
		문화여가 지출 비율		사회단체 참여율
				지역사회 소속감
	시민 참여	투표율	안전	강력범죄 발생률
		정지척 자기역량 인식		사회안전에 대한 평가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야간보행에 대한 안전도
		시민의식		도로 사망률
		부패인식지수		아동안전 사고 사망률
		대인신뢰		아동피해 경험률
		기관신뢰		산업재해율
				화재 발생 건수
	환경	에너지 빈공층 비율	주관적 웰빙	삶에 대한 만족도
		미세먼지 농도		
		하수도 보급률		긍정정서
		폐기물 재활용 비율		
		GDP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부정정서
		기후변화 불안도		
		1인당 도시공원 면적		
		체감 환경 만족도		

출처: 심수진 · 이희길 (2016)

Ⅱ

섹터

1. SDGs 지표 데이터 이용가능성(Data Availability) 분석
김수진 (KOICA 연구개발팀 연구원)

2. 해외긴급구호의 법적 기반 및 운영체계 연구: 일본, 호주, 스위스를 중심으로
권구순 (서울사이버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홍문숙 (글로벌발전연구원 ReDI 지속발전협력본부 본부장)

3.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국제개발협력: 유니레버의 공유가치 창출 활동사례를 중심으로
이효정 (KOICA 농어촌개발팀 과장)

SDGs 지표 데이터 이용가능성(Data Availability) 분석

김수진 (KOICA 연구개발팀 연구원)

목차

Ⅰ. 서론
Ⅱ. 분석 방법 개괄
1. 분석대상
2. 분석자료
3. 분석방법
Ⅲ. SDGs 지표의 실제 데이터 이용가능성(Data Availability)
1. SDGs Tier별 구성 분석
2. Data Accessability 분석
3. Country Coverage 분석
4. Data Frequency 분석
5. 종합 분석: Data Availability
Ⅳ. 결어

주제어: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데이터 이용가능성(Data Availability), 데이터 접근성(Data Accessibility), 국가포함수준(Country Coverage), 데이터 빈도수(Data Frequency)

Ⅰ. 서론

지난 2015년 9월 UN총회에서 SDGs 16개 목표(goals)와 169개 세부목표(targets)가 공식 채택되고, 최근 3월 유엔통계위원회(UN Statistical Commission, 이하 UNSC)에서 동 SDGs 이행 및 평가를 위한 230개(중복지표 포함 241개)를 발표함에 따라 SDGs를 구성하는 목표 및 세

부목표, 지표까지 전체적인 체계가 완성적인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국제사회는 이러한 SDGs의 효과적인 이행과 모니터링을 위한 지표체제를 확립하는데 힘쓰고 있다.

이를 위해 UNSC는 2015년 3월, 산하에 지속가능발전목표 지표에 관한 기관간 전문가그룹(Inter-Agency and Expert Group on SDGs Indicators, 이하 IAEG-SDGs) 을 수립하고, 지난 1년여 기간 동안 각 지표에 대한 데이터 측정 방법론 뿐만 아니라 데이터 이용가능 여부에 따라 지표를 분류하는 Tier system을 마련하는 등 완성도 있는 글로벌 지표 체계를 수립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오고 있다.

최종지표 선정과정에서 합의된 고려요소는 ① 목표(goals) 및 세부목표(targets)와의 연관성, ② 방법론적 정당성, ③ 측정가능성, ④ 접근가능성, ⑤ 지표 전체 개수의 제한(전체 230개 개수 유지), ⑥ 각 지표들의 글로벌 차원에서의 성과(outcome) 등 총 여섯 가지[1]로, IAEG-SDGs는 이러한 요소에 의거하여 총 230개(중복포함 241개) 지표를 확정하였다. 아울러 IAEG-SDGs는 각 지표의 방법론 및 국제적 합의 기준 보유 유무 및 데이터 이용가능성 수준에 따라 230개 지표를 각각 Tier1, Tier2, Tier3으로 분류하였다. 여기서 Tier1은 방법론 및 국제적 기준이 이미 존재하고 UN 회원국 193개에 대해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지표를 의미하고 있으며, IAEG-SDGs는 96개(중복포함 98개) 지표를 Tier1으로 지정하였다.

그렇다면, 과연 최종 합의된 230개 지표에 대한 데이터가 얼마나 이용가능한지, 특히 지표의 데이터에 대한 접근 방법론 및 국제적 기준이 합의되어 있고 대상 국가들로부터 지속적으로 데이터 확보가 가능하다고 분류됨으로써 비교적 가장 안정적인 데이터 체계가 구축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Tier1 지표들의 경우, 실제 얼마나 데이터 이용가능성(data availability)이 제대로 보장되는지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최근 3월 공개된 IAEG-SDGs 보고서에서 제시된 Tier1 지표들을 대상으로 실제 제시된 데이터에 얼마나 접근 가능한지(data accessibility), 그리고 193개 UN 회원국 전체 중 얼마나 많은 국가에 대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지(country coverage), 그리고 해당 국가들의 데이터 이용가능 연수는 얼마나 충분한지(data frequency) 등을 순차적으로 살펴봄으로써 Tier2, Tier3 지표들에 비해 가장 데이터 이용가능성이 높아야할 것으로 기대되는 Tier1 지표들의 실제는 어떠한지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동 연구에서는 SDGs 지표의 데이터 이용가능성과 실제간의 간극(gap)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살펴봄으로써 글로벌 지표 체계 수립 과정에서의 우리의 현 위치를 점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아직 SDGs 글로벌

1) 지난 2015년 2월 개최된 46차 UNSC 전문가그룹 회의(UNSC Expert Gorup Meeting)에서는 최종 지표 선정시, 상기의 여섯가지 고려요소에 기반할 것에 합의하였다. (출처: http://sd.iisd.org/news/sdg-group-discusses-indicator-selection-way-forward/)

지표 체계는 완성된 단계가 아니며, 현재도 IAEG-SDGs는 데이터 tier system 분류에 따라 방법론 및 데이터 이용가능성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지표 체계 수립과정에서의 현 위치를 파악하는 작업은 보다 완성도 높은 지표 체계를 마련하는데 있어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명확히 하는데 좋은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선 동 연구의 분석 대상 및 분석 자료, 분석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개괄적인 소개를 먼저 한 뒤, SDGs Tier별 구성 분석 및 데이터 접근성(data accessibility) 분석을 통해 분석 가능 대상 지표를 우선 분류한 뒤, 국가포함수준(country coverage) 분석 및 데이터 빈도수(data frequency) 분석을 통해 대상 지표들의 각 분석 현황이 어떠한지를 살펴본 후 두 기준을 통해 도출된 결과들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봄으로써 대상지표들의 데이터 이용가능성(data availability)이 어떠한지에 대해 종합 결과를 도출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Ⅱ. 분석 방법 개괄

1. 분석 대상

IAEG-SDGs는 SDGs 230개(중복포함 241개) 지표 전체에 대해 데이터 방법론 및 국제적 기준 수립 여부, 그리고 데이터 이용가능성 여부에 따라 Tier 구분을 두고 있다. 아래 〈표 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Tier1은 데이터 측정 방법론 및 국제적 기준이 존재하고 정기적으로 데이터 생산이 가능하다고 평가되는 지표들이며, Tier2는 데이터 측정 방법론 및 국제적 기준은 존재하나 지속적인 데이터 생산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지표를 말하며, Tier3은 데이터 측정 방법론 및 국제적 기준 자체가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은 가장 완성도가 낮은 지표들을 말한다. 또한 현재 지표 분류 여부가 논의 중에 있는 지표들의 경우 Tier1/2 또는 Tier1/2/3, Untiered 등으로 잠정 분류되어 있다.

〈표 1〉 SDGs Tier system 구성

구 분	내 용
Tier1	지표의 개념이 명확하며, 데이터에 대한 획득 방법론 및 국제적 기준이 확립되어 있으며, 각 회원국들로부터 주기적으로 데이터가 생산가능한 지표
Tier2	지표의 개념이 명확하고, 데이터에 대한 획득 방법론 및 국제적 기준이 확립되어 있으나, 각 회원국들로부터 주기적인 데이터 생산이 어려운 지표
Tier3	현재 데이터에 대한 획득 방법론 및 국제적 기준이 확립되어 있지 않거나 현재 개발/테스트 중에 있는 지표

출처: IAEG-SDGs (2016)

동 연구에서는 이 중에서도 우선 데이터 측정 방법론이 존재하고 정기적으로 데이터 수집이 가능하다고 분류되는 Tier1 지표와 Tier1/2 지표를 1차적인 대상지표로 한다. Tier1/2 지표의 경우, 현재 Tier 설정에 있어 Tier1 또는 Tier2 여부에 대해 아직 고려 중에 있는 지표들로서, 추후 Tier1 지표로 고려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동 연구에서의 분석 대상으로 함께 포함시키고자 한다.

이를 통해 동 연구에서는 Tier1과 Tier1/2 지표를 대상으로 SDGs 지표의 데이터 이용가능성과 실제 간의 간극(gap)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살펴봄으로써 글로벌 지표 체계 수립 과정에서의 우리의 현 위치를 점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분석 자료

동 연구에서는 지난 3월 공개된 IAEG-SDGs 보고서를 기본 분석자료로 한다. IAEG-SDGs에서는 IAEG-SDGs 3차 회의 논의를 위해 'Provisional Proposed Tiers for Global SDG Indicators- as of March 24, 2016' 보고서를 작성 및 공개하였다. 본 보고서에는 230개 전체 지표에 대한 Tier 구성 및 데이터 담당기관, 데이터 측정 방법론을 비롯한 데이터 이용가능성 등에 대한 세부 설명을 명시해두고 있으며, 이는 동 연구에서의 주요 기본 자료가 된다.

이와 함께 동 연구에서는 Casey Dunning과 Jared Kalow[2]가 글로벌개발센터(Center for Global Development, CGD) 웹사이트 블로그란에 두 차례에 걸쳐 게시한 자료를 참조한다. Dunning과 Kalow는 지난 5월과 6월, 'SDG Indicators: Serious Gaps Abound in Data Availability'과 'What SDGs Can We Track Now?'라는 제목으로 SDGs 지표의 데이터 이용가능성이 어떠한지에 대한 분석자료를 게시한 바 있다. 동 연구의 문제의식 역시도 동 블로그 분석글에 기반하고 있음을 밝힌다. 이에 동 연구에서의 전체적인 분석 흐름 및 분석틀의 개념 역시도 Dunning and Kalow의 분석 방법과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다만 동 분석자료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는 과정에서, Dunning Kalow가 제시한 5월과 6월 분석 내용상의 불일치로 인한 오류, 6월 자료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상지표와 데이터의 분류 및 내용상의 오류 등이 발견됨에 따라 동 연구에서는 오류 부분에 대한 수정 및 보완작업이 이루어졌다. 이로 인해 Dunning and Kalow가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는 총 지표의 개수(72개)와 동 연구에서의 분석대상 지표 개수(73개)상의 차이가 존재하며, 대상지표의 구성 상에도 차이가 존재한다. 또한 동 자료는 분석의 결과를 중심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분석 과

2) Casey Dunning는 현재 글로벌개발센터(Center for Global Development) 선임 정책분석관(Senior Policy Analysis)이며, Jared Kalow는 동 센터 소속 연구보조(Research Assistant)으로 재직중임.

정 및 개념을 재정리하고 세부 분석 기준을 새로이 추가함으로써 각 분석 단계별 방법 및 내용을 보다 정교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동 연구에서는 Dunning and Kalow 분석 자료에 기반하여 문제의식 및 분석 흐름 및 개념 설정을 하고 있으나, 자료상의 오류로 인해 동 분석자료는 참조용으로 쓰되, 1,2차 자료상의 불일치 부분 및 데이터 오류는 수정을 통해 반영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수정 및 보완작업을 위한 기준은 IAEG-SDGs(2016) 보고서에 기반한다.

3. 분석 방법

가. 데이터 접근성(Data Accessability)

상기 분석대상 관련 부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SDGs 지표들의 데이터 이용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해 Tier1, Tier1/2에 해당하는 총 101개 지표를 1차적인 대상지표로 한다. 동 연구의 취지가 이러한 지표의 데이터 이용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간주되는 Tier1, 그리고 Tier1/2 지표들의 실제는 어떠한지를 살펴보는 것이라는 점에서, 데이터 이용가능성을 구성하는 세부 기준들, 즉 데이터 접근성(Data Accessibility), 국가포함수준(Country Coverage), 데이터 빈도수(Data Frequency) 각각의 현황을 분석한다.

우선 동 단계에서는 IAEG-SDGs(2016.03) 보고서 상에 각 지표별로 제시되어 있는 정보에 기반하여 ① 방법론(methodology) 존재여부 (기 테스트 여부 포함), ② 동 방법론에 대한 국제적 기준(international Standard) 수립 여부, ③ 메타데이터(meta data) 보유 여부, ④ 데이터베이스(database) 보유 여부 등 4가지 기준으로 데이터 접근성(data accessibility)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따라서 데이터 접근성(data accessibility,이하 data accessibility)이란, 위의 네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지표에 해당하는 접근가능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는 상태로 정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위 네 가지 요소 중 한 가지 요소라도 미충족될 경우 현재로서는 해당 지표에 대한 명확한 기준에 따른 데이터 확보가 어려운 지표라고 해석한다.

나. 국가포함수준(Country Coverage)

국가포함수준(Country Coverage. 이하 country coverage)이란 총 193개 UN 회원국 중 2000년~2015년 사이에 한 해라도 데이터가 제공되는 국가의 비중(%)으로 정의한다. 즉 현재 SDGs 지표의 이행에 대한 모니터링 및 보고 의무가 있는 총 193개 UN 회원국을 대상으로(〈표 3〉 참조), data accessibility을 확보한 지표들 각각에 대해 얼마나 많은 국가들이 데이터를 제공

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는 것이다. 각 지표별 국가 포함 비중은 최소값 0%에서 최대값 100%를 가진다.

이러한 country coverage의 특징을 보다 효과적으로 분석 및 설명하기 위해 각 지표별 country coverage를 25% 단위 기준으로 4가지 점수화를 시도하였다(〈표 2〉참조). 먼저 전체 193개국 기준, 25% 미만의 국가들을 포함할 경우 very poor로, 25% 이상 50% 미만의 국가를 포함할 경우 quite poor, 50% 이상 75% 미만은 quite good, 그리고 75% 이상 100% 이하는 very good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점수화 분류결과를 대상지표 전체 차원 및 SDGs 17개 목표별 차원에서 각각 살펴봄으로써 어떠한 특징을 갖는지 분석하였다.

〈표 2〉 국가포함수준(Country Coverage) 점수화 기준

등급	점수
Very good	75<a≤100
Quite good	50<a≤75
Quite poor	25<a≤50
very poor	0<a≤25

출처: 저자 작성

〈표 3〉 UN 회원국 리스트 (총 193개국)

no.	국가명	no.	국가명	no.	국가명	no.	국가명
1	Afghanistan	50	Dominica	99	Lithuania	148	Sao Tome and Principe
2	Albania	51	Dominican Republic	100	Luxembourg	149	Saudi Arabia
3	Algeria	52	Ecuador	101	Madagascar	150	Senegal
4	Andorra	53	Egypt	102	Malawi	151	Serbia
5	Angola	54	El Salvador	103	Malaysia	152	Seychelles
6	Antigua and Barbuda	55	Equatorial Guinea	104	Maldives	153	Sierra Leone
7	Argentina	56	Eritrea	105	Mali	154	Singapore
8	Armenia	57	Estonia	106	Malta	155	Slovakia
9	Australia	58	Ethiopia	107	Marshall Islands	156	Slovenia
10	Austria	59	Fiji	108	Mauritania	157	Solomon Islands
11	Azerbaijan	60	Finland	109	Mauritius	158	Somalia
12	Bahamas	61	France	110	Mexico	159	South Africa
13	Bahrain	62	Gabon	111	Micronesia	160	South Sudan
14	Bangladesh	63	Gambia	112	Monaco	161	Spain
15	Barbados	64	Georgia	113	Mongolia	162	Sri Lanka
16	Belarus	65	Germany	114	Montenegro	163	Sudan
17	Belgium	66	Ghana	115	Morocco	164	Suriname
18	Belize	67	Greece	116	Mozambique	165	Swaziland

no.	국가명	no.	국가명	no.	국가명	no.	국가명
19	Benin	68	Grenada	117	Myanmar	166	Sweden
20	Bhutan	69	Guatemala	118	Namibia	167	Switzerland
21	Bolivia	70	Guinea	119	Nauru	168	Syrian Arab Republic
22	Bosnia and Herzegovina	71	Guinea Bissau	120	Nepal	169	Tajikistan
23	Botswana	72	Guyana	121	Netherlands	170	Thailand
24	Brazil	73	Haiti	122	New Zealand	171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25	Brunei Darussalam	74	Honduras	123	Nicaragua	172	Timor-Leste
26	Bulgaria	75	Hungary	124	Niger	173	Togo
27	Burkina Faso	76	Iceland	125	Nigeria	174	Tonga
28	Burundi	77	India	126	Norway	175	Trinidad and Tobago
29	Cabo Verde	78	Indonesia	127	Oman	176	Tunisia
30	Cambodia	79	Iran (Islamic Republic of)	128	Pakistan	177	Turkey
31	Cameroon	80	Iraq	129	Palau	178	Turkmenistan
32	Canada	81	Ireland	130	Panama	179	Tuvalu
33	Central African Republic	82	Israel	131	Papua New Guinea	180	Uganda
34	Chad	83	Italy	132	Paraguay	181	Ukraine
35	Chile	84	Jamaica	133	Peru	182	United Arab Emirates
36	China	85	Japan	134	Philippines	183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37	Colombia	86	Jordan	135	Poland	184	United Republic of Tanzania
38	Comoros	87	Kazakhstan	136	Portugal	185	United States of America
39	Congo	88	Kenya	137	Qatar	186	Uruguay
40	Costa Rica	89	Kiribati	138	Republic of Korea	187	Uzbekistan
41	Côte D'Ivoire	90	Kuwait	139	Republic of Moldova	188	Vanuatu
42	Croatia	91	Kyrgyzstan	140	Romania	189	Venezuela, Bolivarian Republic of
43	Cuba	92	Lao PDR	141	Russian Federation	190	Viet Nam
44	Cyprus	93	Latvia	142	Rwanda	191	Yemen
45	Czech Republic	94	Lebanon	143	Saint Kitts and Nevis	192	Zambia
46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95	Lesotho	144	Saint Lucia	193	Zimbabwe
47	DR Congo	96	Liberia	145	Saint Vincent and the Grenadines		
48	Denmark	97	Libya	146	Samoa		
49	Djibouti	98	Liechtenstein	147	San Marino		

출처: UN홈페이지 (http://un.org)

다. 데이터 빈도수(Data Frequency)

상기 'country coverage' 분석 기준과 함께, 세 번째 분석기준으로서 '데이터 빈도수(data frequency)'를 살펴본다. 데이터 빈도수(data frequency, 이하 data frequency)란, 각 지표별로 한 해라도 데이터를 제공한 193개 UN 회원국들의 평균 데이터 제공 연수로 정의하며, 동 기준을 통해 얼마나 각국의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동 측정 지수의 최소값은 0개년, 최대값은 16개년을 가지며, 보다 효과적인 분석 및 설명을 위해 'country coverage' 기준과 마찬가지로 아래와 같이 각 지표별로 4개년 단위 기준으로 4가지 점수화를 시도하였다(〈표 4〉 참조). 먼저 동 연구에서는 2000년 이후 자료를 기준으로 2015년까지 총 16개년 자료를 대상으로 하며, 4개년 미만의 연수(data point)의 데이터를 가질 경우 very poor로, 4개년 이상 8개년 미만 연수의 데이터를 가질 경우 quite poor, 8개년 이상 12개년 미만은 quite good, 그리고 12개년 이상 16개년 이하는 very good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점수화 분류결과를 대상지표 전체차원 및 SDGs 17개 목표별 차원에서 각각 살펴봄으로써 어떠한 특징을 갖는지 분석하였다.

〈표 4〉 데이터 빈도수(Data Frequency) 점수화 기준

등급	점수
very good	12<a≤16
quite good	8<a≤12
quite poor	4<a≤8
very poor	0<a≤4

출처: 저자 작성

라. 데이터 이용가능성(Data Availability)

데이터 이용가능성(Data Availability, 이하 data availability)이란, 상기의 country coverage 및 data frequency의 점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얼마나 많은 대상국가들로부터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는가를 말한다. 따라서 country coverage와 data frequency 모두가 높을수록 data availability은 높다고 할 수 있으며, 반대일 경우 전반적으로 낮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동 단계에서는 종합적인 분석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country coverage와 data frequency 각각 분석의 4가지 점수화 결과를 가지고 상관관계를 살펴본다. 이를 위해 아래 〈표 5〉와 같은 보다 단순화된 점수 기준을 활용한다. 두 기준 간의 상관관계를 비교하면 총 16개의 영역으로 점수

화가 가능한데, 동 분석 단계에서는 이를 총 4가지 영역으로 단순화시킴으로써 data availability에 대한 보다 전반적인 해석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한다. 우선 크게 poor/good 기준으로 단순화하여, country coverage가 50% 이하, 데이터 빈도수가 8개년 이하로 최저점을 기록하는 부분을 A영역으로, 국가포함수준이 50% 이상 100% 이하, 데이터 빈도수가 8개년 이상 16개년 이하로 최고점을 기록하는 부분을 D영역으로 한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아래 표와 같이 B, C영역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이러한 점수화 분류결과를 대상지표 전체차원 및 SDGs 17개 목표별 차원에서 각각 살펴봄으로써 어떠한 특징을 갖는지 각각 살펴봄으로써 data availability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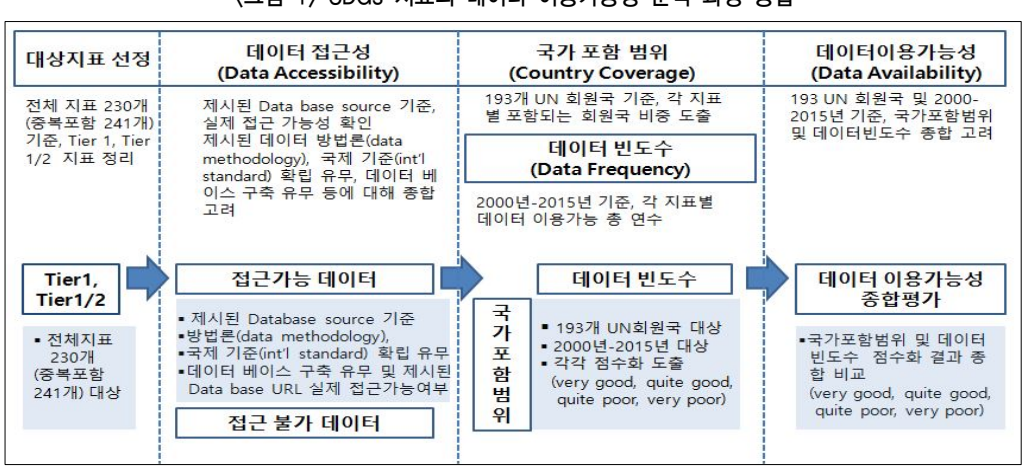
〈표 5〉 데이터 이용가능성(Data Availability) 점수화 기준

		Country Coverage (C.C)			
		very poor	quite poor	quite good	very good
Data Frequency (D.F)	very poor	A C.C(0<a≤50), D.F(0<a≤8)		C C.C(50<a≤100), D.F(0<a≤8)	
	quite poor				
	quite good	B C.C(0<a≤50), D.F(8<a≤16)		D C.C(50<a≤100), D.F(8<a≤16)	
	very good				

출처: 저자 작성

아울러 아래 〈그림 1〉은 이해의 편의를 위해 상기의 대상지표 선정에서부터 데이터 이용가능성 종합분석에 이르는 일련의 분석과정을 도식화한 그림이다. 이러한 과정을 바탕으로 다음 장에서 분석결과를 살펴본다.

〈그림 1〉 SDGs 지표의 데이터 이용가능성 분석 과정 종합



출처: 저자 작성

Ⅲ. SDGs 지표의 실제 데이터 이용가능성 (Data Availability)

1. SDGs Tier별 구성 분석

〈표 6〉 SDGs 전체 지표의 Tier별 구성

SDG NO.	TIER1	TIER2	TIER3	Tier1/2	Tier1/3, Tier1/2/3, untiered	합계
1	3	4	4	0	1	12
2	7	2	5	0	0	14
3	15	7	3	0	1	26
4	3	4	2	1	1	11
5	3	4	6	1	0	14
6	6	0	5	0	0	11
7	4	0	2	0	0	6
8	10	6	1	0	0	17
9	8	1	3	0	0	12
10	4	0	5	1	1	11
11	2	7	6	0	0	15
12	1	3	8	0	1	13
13	0	2	4	0	1	7
14	2	0	8	0	0	10
15	6*	1	5	0	2	14
16	9	7	6	0	1	23
17	15	2	5	0	3	25
합 계	**98**	**50**	**78**	**3**	**12**	**241**
중복지표 제외시	**96**	**44**	**76**	**3**	**11**	**230**

* IAEG-SDGs (2016) 보고서 상에서 15.c.1 (Proportion of traded wildlife that was poached or illicitly trafficked) 지표의 'Reviesed Tier(by Secretariat)' 란이 공백으로 되어 있음. 하지만 동 지표는 Tier1에 해당하는15.7.1과 중복(repeat of 15.7.1)된다고 표시되어 있다는 점에서 동 15.c.1 지표 역시도 Tier1로 계산하였음을 밝힌다.

출처: IAEG-SDGs (2016) 자료 바탕으로 저자 작성

상기 〈표 6〉와 같이 SDGs 전체 지표의 개수는 중복지표를 포함하여 총 241개이며, 아래 〈표 7〉와 같이 11개의 중복지표를 제외한 개수는 230개이다. 먼저 11개의 중복지표 현황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중복지표를 가지고 있는 Tier2는 총 4개의 지표가 각각 2~3번씩 중복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그 뒤를 이은 Tier1,3은 각각 총 2개의 지표들이 2번씩 중복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Tier1/3은 1개의 지표가 2번 중복되어 사용된다. 각 Tier별 지표의 개수를 비교해보았을 때, Tier1의 개수가 96개(중복제외)로, 전체 대비 약 42%를 차지하며, 반대로 Tier3의 개수는 76개(중복제외)로 전체 대비 약 33%로 Tier1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7〉 SDGs 각 중복 지표 현황[3)]

구분	최초 지표	중복 지표 1	중복 지표 2	지표 개수
Tier1	10.6.1	16.8.1		2
	15.7.1	15.c.1		2
Tier2	1.5.1	13.1.2	11.5.1	3
	1.5.3	11.b.2	13.1.1	3
	8.4.1	12.2.1		2
	8.4.2	12.2.2		2
Tier3	7.a.1	13.a.1		2
	10.3.1	16.b.1		2
Tier1/3	15.a.1	15.b.1		2
소계	**9**	**9**	**2**	**20**
총 중복 지표 개수		**11**		

출처: IAEG-SDGs (2016) 자료 바탕으로 저자 작성

아래 〈표 8〉은 SDGs 17개 목표별로 각각 Tier1의 구성이 어떠한지를 나타낸 표이다. 우선 각 목표별 전체 지표 중 Tier1 비중이 가장 높은 지표는 목표7(에너지)와 목표9(인프라·산업화)로,

3) SDGs 230개 지표는 중복 counting 된 지표를 제외한 개수이며, 중복지표 9개를 중복 counting한 전체 지표 개수는 241개가 된다. 해당 중복지표 9개는 다음과 같다; ① 10.6.1 Proportion of members and voting rights of developing countries i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16.8.1과 중복), ② 15.7.1 Proportion of traded wildlife that was poached or illicitly trafficked (15.c.1과 중복), ③ 1.5.1 Number of deaths, missing and persons affected by disaster per 100,000 people (13.1.2, 11.5.1과 중복), ④ 1.5.3 Number of countries with national and local disaster risk reduction strategies (11.b.2, 13.1.1과 중복), ⑤ 8.4.1 Material footprint (MF) and MF per capita, per GDP (12.2.1과 중복), ⑥ 8.4.2 Domestic material consumption (DMC) and DMC per capita, per GDP (12.2.2와 중복), ⑦ 7.a.1 Mobilized amount of United States dollars per year starting in 2020 accountable towards the $100 billion commitment (13.a.1과 중복), ⑧ 10.3.1 Proportion of the population reporting having personally felt discriminated against or harassed within the previous 12 months on the basis of a ground of discrimination prohibited und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16.b.1과 중복), ⑨ 15.a.1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and public expenditure on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biodiversity and ecosystems (15.b.1과 중복) (출처: IAEG-SDGs(2016.03)에서 저자 발췌 인용)

각 목표 내 전체 지표 개수 대비 66.7%를 차지하고 있다. 그 외에도 각 목표별 전체 지표 중 Tier1 지표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목표로는 목표17(이행수단·파트너십), 목표8(고용·일자리), 목표3(보건복지), 목표6(식수위생), 목표2(식량안보 및 농업) 등 총 7개이다. 반면 목표13(기후변화)는 Tier1 지표가 전무하며 목표12(소비와 생산) 역시도 해당 목표 내 Tier1 지표가 1개(7.7%) 밖에 없어 매우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8〉 SDGs 목표별 Tier1 구성 세부 분석표

목표 번호	목표별 전체지표 개수(a)	Tier1 개수	목표별 전체지표기준(a), Tier1 비중 (%)	전체 Tier1기준(b), 목표별Tier1비중 (%)
1 (빈곤종식)	12	3	25	3.1
2 (식량안보, 농업)	14	7	50	7.1
3 (보건 복지)	26	15	57.7	15.3
4 (교육)	11	3	27.3	3.1
5 (성평등)	14	3	21.4	3.1
6 (식수위생)	11	6	54.5	6.1
7 (에너지)	6	4	66.7	4.1
8 (고용 일자리)	17	10	58.8	10.2
9 (인프라 산업화)	12	8	66.7	8.2
10 (불평등)	11	4	36.4	4.1
11 (도시)	15	2	13.3	2.0
12 (소비와 생산)	13	1	7.7	1.0
13 (기후변화)	7	0	0	0
14 (해양자원)	10	2	20	2.0
15 (생물다양성)	14	6	42.9	6.1
16 (평화제도)	23	9	39.1	9.2
17 (이행수단, 파트너십)	25	15	60	15.3
합 계	**241**	**98 (b)**	**40.7**	**100**

출처: 저자 작성

또한 SDGs Tier1 전체 지표 98개가 각 목표별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면, 목표3(보건복지)과 목표17(이행수단·파트너십)이 전체 대비 15.3%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목표8(고용·일자리)이 10.2%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반대로 목표13(기후변화)는 Tier1 지표 자체가 없는 관계로 해당 비중은 0%를 보이며, 목표12(소비와 생산) 역시 1개 Tier1 지표를 갖고 있어 전체 98개 지표 대비 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위의 표를 바탕으로 이를 종합해보았을 때 목표3(보건복지), 목표8(고용·일자리), 목표17(이행수단·파트너십)이 각 목표별 내부적으로도, Tier1 98개 지표 전체적으로도 Tier1의 비중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어 비교적 지표의 안정성을 높게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목표12(소비와 생산), 목표13(기후변화)은 Tier1 지표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1개로 Tier1 비중이 전반적으로 매우 낮아 지표의 안정성이 취약하다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기후변화의 경우, '경제성장, 사회발전, 환경보호'라는 SDGs 3대 축을 구성하는 환경관련 독립목표임에도 불구하고 Tier1 지표가 전무하다는 점에서 사실상 실질적인 지표 이행 가능성에 있어 17개 지표 중 가장 큰 한계를 노정한다고 할 수 있다.

2. Data Accessibility 분석

동 연구에서 분석 대상이 되는 지표인 Tier1과 Tier1/2지표 총 101개에 대해 1차적으로 IAEG-SDGs(2016.03) 보고서 및 CGD(2016) 분석자료를 가지고 실제 SDGs 지표가 IAEG-SDGs 보고서상에 제시된 data base에서 얻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렇지 않다면 이를 대체할 metadata 또는 CGD(2016) 분석자료 상에 제시하고 있는 proxy URL로 원하는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우선 IAEG-SDGs(2016.03) 보고서 상에 각 지표별로 제시되어 있는 정보에 기반하여 ① 방법론(methodology) 존재여부(기 테스트 여부 포함), ② 동 방법론에 대한 국제적 합의(international agreeement) 여부, ③ 메타데이터(meta data) 보유 여부, ④ 데이터베이스(database) 보유 여부 등 4가지 기준으로 데이터 접근성(data accessibility)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여기서 'data accessibility'는 위의 네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며, 이 중 한 가지 요소라도 미충족될 경우 현재로서는 해당 지표에 대한 명확한 기준에 따른 데이터 확보가 어려운 지표라고 해석한다.

아래 〈표 9〉는 이러한 4가지 기준에 의거하여 접근성이 사실상 제한되어 있는 지표들을 보여준다. 동 표의 해석과 관련하여, 방법론(methodology)에서의 '△'는 방법론은 존재하나 아직 테스트가 되지 않은("There is a suggested methodology, but it has not been tested" 해당) 상태를 말하며, 데이터베이스(database)상에서의 '△'는 지표 상의 분석 대상 중 일부에 대해서만 데이터베이스가 제시된 경우를 말한다.

〈표 9〉 Tier1 지표 중 데이터 획득이 어려운 지표

지표 국문번역[4]	담당기관	URL	methodology	Int'l standard	meta data	database
2.1.2 식량불안경험척도(FIES)기준,보통또는그이하의식량불안인구현황	FAO	-	O	O	X	X
2.b.2 농업수출보조금	WTO	http://agims.wto.org/*	O	O	X	X
3.7.1 현대적인 피임법을 충족하는 가임기 여성 (15-29세)의 비중	UN DESA	-	O	O	X	X
6.5.1 통합물관리(IWRM)이행정도(0-100)	UNEP	http://iwrmdataportal.unepdhi.org/dataoverview.html	O	X	O	O
6.b.1 물과 위생시설 관리에 관한 운영정책과 지역사회 참여제도가 확립되어 있는 지방행정조직의 비율	WHO & UNEP	-	O	O	O	X
8.8.2 성별, 이민신분별 ILO 협약과 국내입법에 기반하여 (단체교섭과 교섭단체 구성의 자유 등) 노동권의 국내적 보장 증대	ILO	http://tur.la.psu.edu/	O	O	X	△
9.4.1 부가가치 단위 당 이산화탄소 배출	UNIDO IEA	http://www.iea.org/publications/freepublications/publication/co2-emissions-from-fuel-combustion-highlights-2015.html	O	O	X	△
9.c.1 기술별 모바일 네트워크 사용인구 비율	ITU	http://www.itu.int/en/ITU-D/Statistics/Pages/publications/wtid.aspx	O	O	O	O (구매필요)
10.4.1 GDP의 임금과 사회보호로 구성된 노동 비중	ILO	http://www.ilo.org/dyn/ilossi/ssimain.home	△	O	O	O
10.6.1 국제기구에서 개발도상국의 회원 및 의결권 비율 (16.8.1과 동일)	no info	-	X	X	X	X
10.a.1 최빈국과 무관세 개발도상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부과되는 관세선 비율	ITC/ UNCTAD/ WTO	www.macmap.org http://tao.wto.org	O	O	O	X
12.4.1 유해화학물질과 폐기물에 관한 국제 다자간 환경 협약 각각이 요구하는 정보제공에 관한 약속과 의무를 다하는 당사국의 수	UNEP	www.informea.org	O	X	O	X
14.4.1 생물학적으로 지속가능한 수준내의 어족비율	FAO	-	O	O	O	X
14.5.1 해양 보호구역 범위	UNEP-WCMC UNEP	http://www.protectedplanet.net/	O	X	O	O

지표 국문번역	담당기관	URL	methodology	Int'l standard	meta data	database
15.1.2 생태계 유형별 보호구역에 의해 보호되는 육상 및 담수 생태계 주요장소(sites)의 비율	UNEP-WCMC UNEP	http://www.protectedplanet.net/	O	X	X	O
15.4.1 산중 생물다양성 보호구역 범주	UNEP-WCMC UNEP	http://www.protectedplanet.net/	O	X	O	X
15.5.1 멸종 위기 지수	IUCN	-	O	X	O	X
15.7.1 밀렵되거나 불법으로 포획되어 거래되는 야생동물의 비율 (15.c.1과 동일)	UNODC CITES	-	O	X	O	X
16.2.2 성별, 연령별, 착취의 유형별 인신매매 피해자의 수 (인구 100,000명당)	UNODC	-	O	X	X	X
16.a.1 파리원칙상의 독립된 국가인권기구의 존재 여부	OHCHR	-	O	O	X	X
17.1.2 국내세금으로 충당되는 국내 예산 비율	IMF	-	X	X	X	X
17.10.1 전세계 가중 관세 평균	WTO ITC UNCTAD	http://www.trademap.org/ http://comtrade.un.org/ http://tao.wto.org	O	O	O	X
17.12.1 개발도상국, 최빈국, 중소도서 개발도상국들이 직면하는 평균 관세	WTO ITC UNCTAD	-	O	O	O	△
17.18.3 재원별 현재 이행되고 있고 재원이 충분히 확보되어있는 국가 통계 계획이 있는 국가수	PARIS21	-	O	O	X	X
17.19.1 개발도상국에서 통계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활용가능한 모든 자원의 달러 가치	PARIS21	-	O	O	X	X
17.19.2 a)지난 10년간 인구 및 가구 센서스를 적어도 1회 실시하고 b)출생신고 100% 및 80% 사망신고를 달성한 국가의 비율	UNSD	-	△	O	X	X

출처: IAEG-SDGs (2016) 자료 바탕으로 저자 작성

4) '김지현 (2016, 발간예정)' 보고서에서는 SDGs 전체 230개 지표에 대한 국문 번역을 제공하고 있으며, 동 연구에서의 '지표 국문 번역' 내용은 김지현 (2016) 보고서에서 차용하였음을 밝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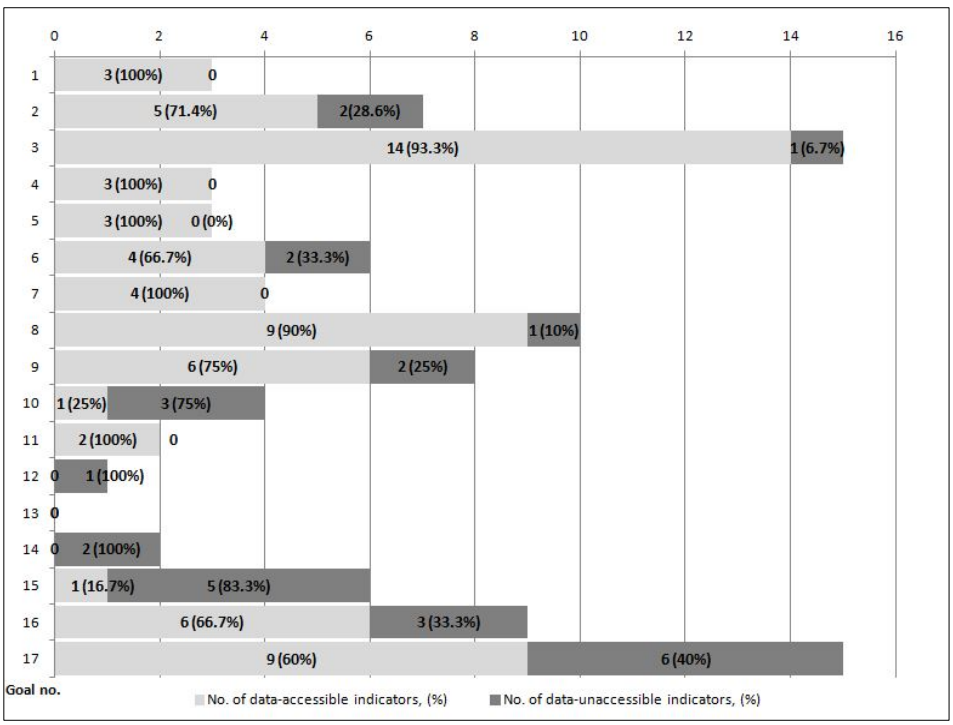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복되는 두 개 지표[5]를 포함하여 총 28개 지표를 살펴보면 28개 지표 중 3개 지표를 제외한 나머지 지표들이 방법론을 이미 가지고 있으며, 각 지표의 개념 및 범위 등에 대한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진 지표는 총 16개이다. 이를 통해 총 14개의 지표가 이미 방법론 및 지표 개념에 대한 국제적 합의 모두가 확보되어 있으며, 이는 Tier1 지표 전체적으로 방법론 및 국제적 합의 부분에 대한 완성도가 비교적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반대로 아직 Tier1지표임에도 불구하고 각 지표의 개념 및 범위에 대한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지표가 12개나 존재한다는 것은, 지표 해석의 모호함을 해소하고 보다 명확한 해석과 활용을 위해서 지표 개발 및 보완이 시급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또한 28개 대상 지표 중 지표 내용에 대한 데이터를 완전히 얻을 수 있는 지표는 6개에 불과하고 지표에 대한 부분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지표 역시 3개에 그친다. 이로 인해 나머지 19개 지표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아직 마련되지 못한 상태이다. 하지만 각 지표의 데이터 수준을 내려 raw data에 가까운 자료를 얻으면 좋지만 사실상 국제개발분야에서의 데이터는 목적에 맞추어 재가공된 메타데이터 활용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현재 데이터베이스가 마련되지 않은 지표에 대해 메타데이터를 통해 모델링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면 데이터베이스가 부재함에 따른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이러한 보완역할을 하는 지표, 즉 데이터베이스가 부재하나 메타데이터가 존재하는 지표는 9개이며, 두 데이터 모두가 부재한 지표는 11개에 이르는 실정이다.

이렇게 data accessibility에 해당하는 네 가지 기준에 따라 Tier1, Tier1/2지표를 살펴보면 전체 101개 지표 중 data accessibility가 보장되는 지표는 총 73개, 그렇지 않은 지표는 총 28개로 도출된다. 아래 〈그림 2〉는 SDGs 각 목표별 지표들의 data accessibility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5) 중복되는 두 지표는 다음과 같다. ①10.6.1 Proportion of members and voting rights of developing countries i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16.8.1 과 중복), ②15.7.1 Proportion of traded wildlife that was poached or illicitly trafficked(15.c.1과 중복) (출처: IAEG-SDGs(2016)에서 저자 발췌 인용)

〈그림 2〉 각 목표별 Tier1, Tier1/2 지표의 데이터 접근성 구성



출처: 저자 작성

위의 그림에서와 같이, 각 목표별 Tier1, Tier1/2 구성지표를 볼 때, 목표1(빈곤종식), 목표4(교육), 목표5(성평등), 목표7(에너지), 목표11(도시) 등 총 5개 목표의 모든 대상지표가 data accessibility가 보장되어 있다(100%). 또한 목표3(보건복지), 목표8(고용·일자리) 등 두 개의 목표도 각각 90%이상의 높은 data accessibility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반대로 구성 Tier1, Tier1/2 지표의 data accessibility가 현격히 낮아 지표의 측정 및 모니터링이 어려운 목표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목표10(불평등), 목표12(소비와 생산), 목표13(기후변화), 목표14(해양자원), 목표15(생물다양성)이다. 이 중에서 목표12와 목표14는 모든 대상지표들이 data accessibility가 제한되어 있어 현재로서는 이용가능한 데이터가 없는 상태이며, 목표10과 목표15는 데이터 접근이 가능한 지표가 각각 1개로 매우 낮은 data accessibility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전반적인 Tier1, Tier1/2 지표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동 연구에서의 country coverage 및 data frequency 분석의 대상지표로는 데이터 확보가 불가능한 상기 28개 지표를 제외한 나머지 73개 지표가 된다. 특히 각 목표별 차원에서 보면, 목표12(소비와 생산), 목표13(기후변화), 목표14(해양자원)은 데이터 접근이 가능한 지표가 없기 때문에 이를 제외한 나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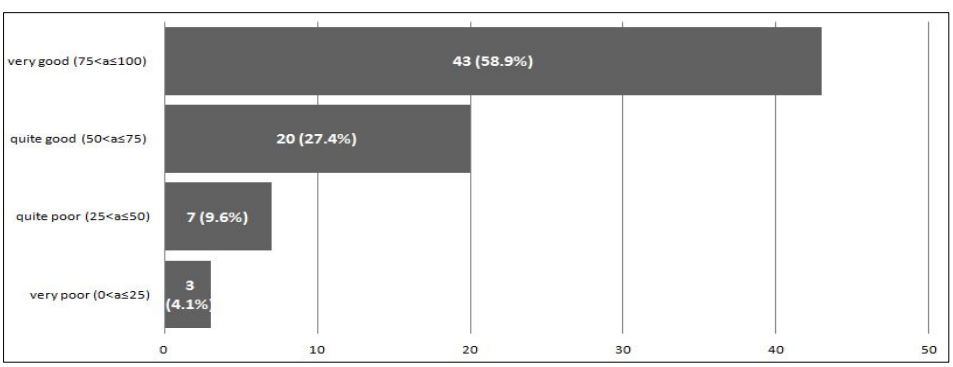
14개 목표가 동 연구에서의 country coverage 및 data frequency 분석 대상이 된다.

3. Country Coverage 분석

국가포함수준(Country Coverage)이란 총 UN 회원 193개국 중 2000년~2015년 사이에 한 해라도 데이터가 제공되는 국가의 비중(%)으로 정의한다. 데이터 이용이 가능한 73개 지표 각각의 countrycoverage를 살펴보기 위해 최소값 0%에서 최대값 100%으로 하여 각 총 4가지 점수 기준으로 분류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아래 〈그림 3〉은 Tier1과 Tier1/2 지표 총 73개 각각에 대해 UN 회원국 193개 국가들에 대한 country coverage를 25% 단위로 나누어 점수화한 그래프이다.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43개 지표(58.9%)와 20개 지표(27.4%)가 각각 very good, quite good 점수를 얻음에 따라 절반 이상의 국가에 대해 2000년부터 16개년 동안 적어도 1개년 이상의 자료를 얻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전체 73개 지표 중 10개를 제외한 대다수의 지표가 country coverage에 대해서는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다. 특히 country coverage가 99%이상을 보이는 지표가 9개[6]에 이르며, 그 중 지표 17.8.1(인터넷 사용 인구 비율)은 100%의 country coverage를 보이고 있다.[7]

〈그림 3〉 대상 73개 지표의 Country Coverage 점수화



출처: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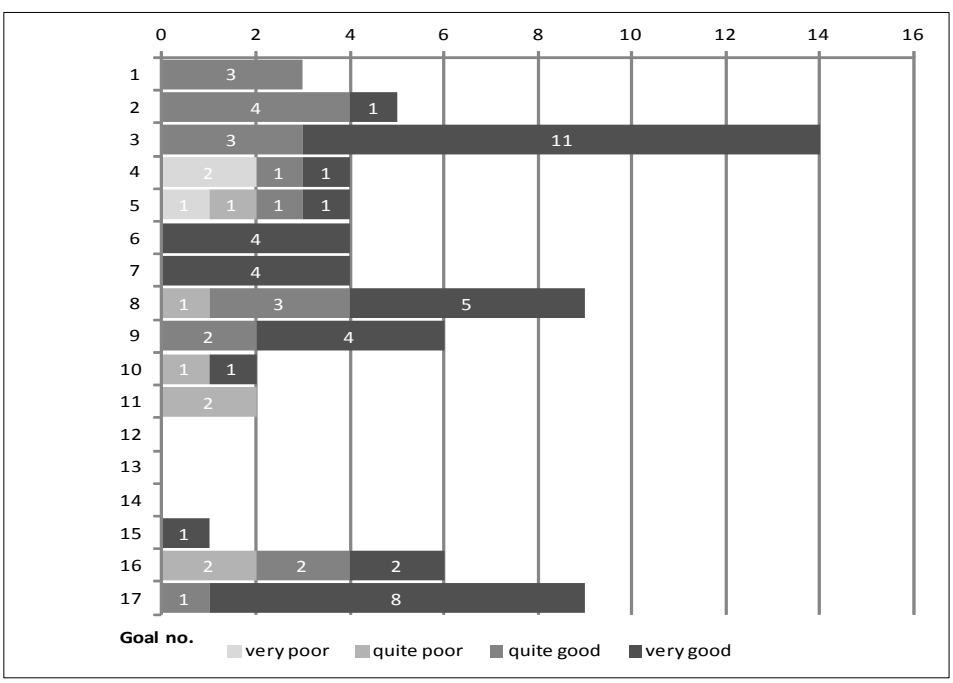
6) 해당 9개 지표는 다음과 같다. ① 3.2.1. Under-five mortality rate (99%), ② 3.2.2. National mortality rate (99%), ③ 3.3.2 Tuberculosis incidence per 1,000 population (99%), ④ 3.3.5 Number of people requiring interventions against neglected tropical diseases (99%), ⑤ 5.5.1 Proportion of seats held by women in national parliaments and local governments (99%), ⑥ 7.1.1. Proportion of population with access to electricity (99%), ⑦ 7.1.2. Proportion of population with primary reliance on clean fuels and technology (99%), ⑧ 16.1.1 Number of victims of intentional homicide per 100,000 population, by sex and age, ⑨ 17.8.1 Proportion of individuals using the Internet (100%) (출처: IAEG-SDGs(2016.03)에서 저자 발췌 인용)

7) Tier1, Tier1/2 지표별 country coverage 전체 비중 및 점수는 동 연구의 '[별첨] 73개 지표 전체 총괄표'를 참조하기 바란다.

반면 country coverage 비중이 25%이하로 very poor 점수를 얻은 지표는 4.a.1 (ⓐ전기, ⓑ수업용 인터넷, ⓒ수업용 컴퓨터, ⓓ장애학생을 위한 설비 및 교재, ⓔ기초식수, ⓕ성별로 분리되어 있는 기초위생시설, ⓖ기초손씻기 시설(WASH지표 정의에 의거)에 대한 접근성을 가지고 있는 학교 비율), 지표 4.c.1(국별기준에 부합하는 최소수준의 체계적인 자격전 및 재교육을 받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 교사비율)와 5.3.2 (15-49세 소녀 및 여성 중 여성 성기절제를 받은 인구의 연령별 비중) 등 총 3개로, 각각 21%, 16%, 15%의 낮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아래 〈그림 4〉는 각 목표별로 country coverage 점수화 구성이 어떠한지를 나타내고 있다. 목표별로 보면, 목표11(도시)에 해당하는 11.1.1(빈민가, 무허가 또는 적절치 않은 주거지에서 거주하는 도시 인구 비율), 11.6.2(도시내 PM2.5 및 PM10 등으로 표기되는 연중 미세먼지 평균 수준) 두 지표 모두의 country coverage가 각각 42%, 47%로 quite poor에 해당하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목표의 경우 quite good과 very good의 비중이 비교적 꽤 높다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는 목표6(식수위생)과 목표7(에너지), 목표15(생물다양성)는 해당지표 전체가 75% 이상의 높은 country coverage를 보이고 있으며, 목표2(식량안보·농업), 목표3(보건복지), 목표9(인프라·산업화), 목표17(이행수단·파트너십) 역시 모든 지표가 50% 이상의 높은 country coverage를 보인다.

〈그림 4〉 목표별 Country coverage 점수화 구성 현황



출처: 저자 작성

특히 목표3(보건복지)의 경우, Tier1의 개수가 전체 목표 중 15개로 가장 많은 동시에 3.7.1(현대적 피임법을 충족하는 가임기 여성(15-29세)의 비중)을 제외한 14개 지표 모두가 data accessibility를 확보하고 있다. 또한 동 목표의 country coverage가 very good이 11개, quite good이 3개로 구성되어 있어, 14개 지표 전체가 대상 국가들의 50% 이상을 커버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국별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다. 특히 Tier1, Tier1/2 지표 전체 기준으로 볼 때, country coverage가 99% 이상인 총 9개 지표 중 3.2.1(5세 이하 아동 사망률), 3.2.2(신생아 사망률), 3.3.2(인구 1,000명당 결핵 발생률) 등 3개 지표가 목표3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다른 목표들에 비해 country coverage가 매우 안정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렇듯 상기의 Tier1, Tier1/2 지표 전체 및 각 목표별 차원에서 country coverage를 분석해 보았을 때, 두 분석기준 모두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즉, 전체적 차원에서 보았을 때, 50% 이상의 country coverage를 갖는 지표의 개수가 총 63개(86.3%)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동시에 목표차원에서 볼 때에도 data accessibility가 결여된 목표12(소비와 생산), 목표13(기후변화), 목표14(해양자원) 및 country coverage가 50% 미만인 지표로만 구성된 목표11(도시) 등 4개의 목표를 제외 시, 나머지에서는 전반적으로 country coverage가 안정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4. Data Frequency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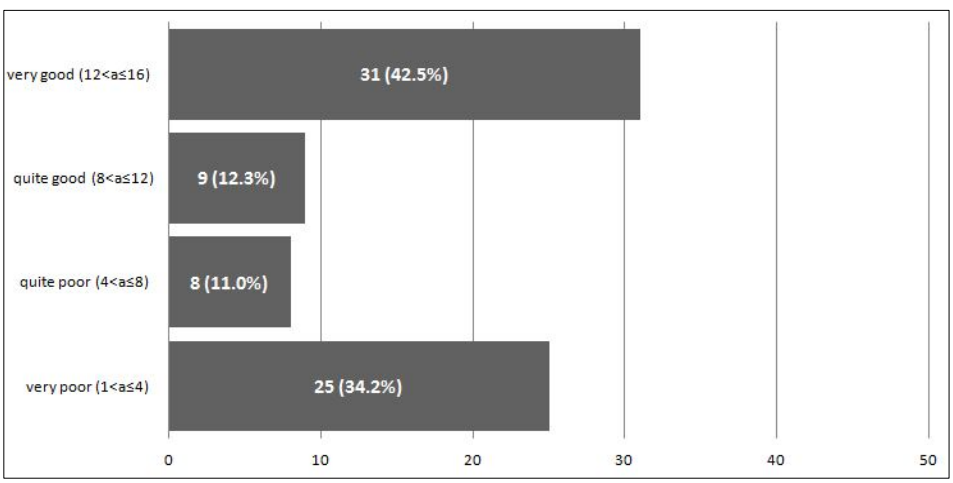
데이터 빈도수(Data Frequency)란, 각 지표별로 한 해라도 데이터를 제공한 193개 UN 회원국들의 평균 데이터 제공 연수로 정의한다. 상기의 country coverage 자체에서도 2000년에서 2015년까지 총 16개년 동안 1년이라도 데이터를 제공한 국가의 전체 비중이라고 정의한 바와 같이, Data frequency 역시도 이러한 country coverage 기준을 통해 걸러진 대상국가들의 평균 데이터 제공 연수를 나타낸다. 데이터 이용이 가능한 73개 지표 각각의 data frequency를 살펴보기 위해 동 단계에서는 최소값 0에서 최대값 16으로 하여 각 총 4가지 점수기준으로 분류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아래 〈그림 5〉는 Tier1과 Tier1/2 지표 총 73개 각각에 대해 2000년에서 2015년까지 총 16개년 동안 한 해라도 데이터를 제공한 193개 UN 회원국에 대한 data frequency를 25% 단위로 나누어 점수화한 그래프이다.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상국가들의 평균 데이터 제공연수가 12개년 이상인 지표는 31개로 전체 대비 42.5%라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data frequency가 평균 15.9년 이상, 즉 16개년 최대치에 근접한 지표가 5개[8]에 이르며, 그 중

8) 해당 5개 지표는 다음과 같다. ① 2.1.1 Prevalence of undernourishment(15.96), ② 3.2.1 Under-five mortality

8.2.1(취업인구 1인당 실질 GDP성장률)은 평균 16년이라는 최대치를 보이고 있으며, 15.1.1(총 육지 면적 중 산림 면적의 비율) 역시 평균 15.99라는 최대값에 매우 근사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9)]

〈그림 5〉 대상 73개 지표의 Data Frequency 점수화



출처: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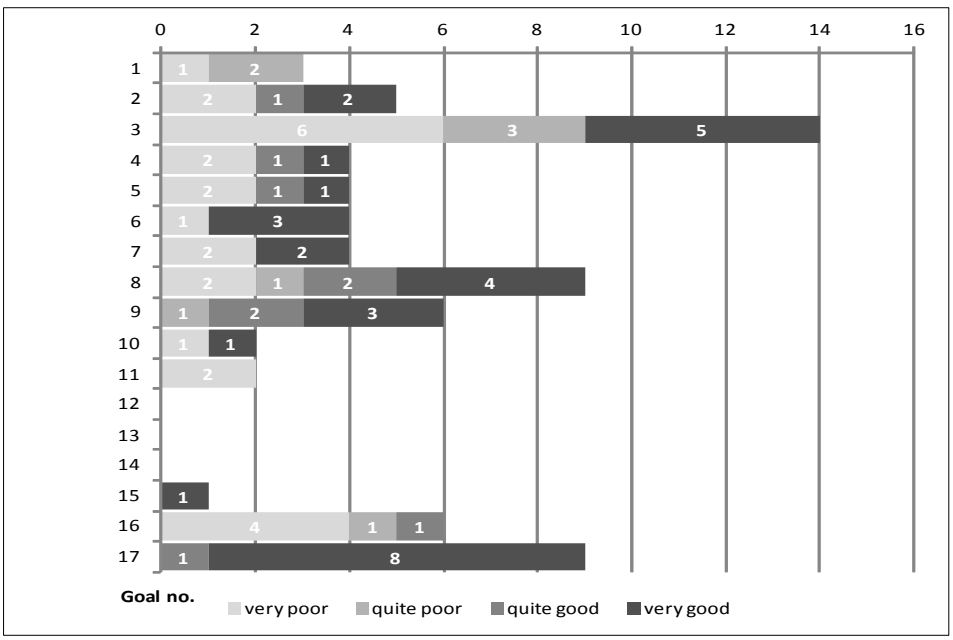
반면 data frequency 값이 평균 4년 이하로 very poor 점수를 얻은 지표 역시도 총 25개로 전체 대비 34.2%라는 비교적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이 중에서도 평균 데이터 제공 연수가 1년 이하인 지표가 전체 very poor 25개 지표 중 12개[10)]나 차지한다는 점에서 Tier1, Tier1/2 지표의 2000년 이후로의 data frequency는 사실상 불안정하다고 할 수 있다.

rate(15.93), ③ 3.2.2 Neonatal mortality rate(15.92), ④ 8.2.1 Annual growth rate of real GDP per employed person(16), ⑤ 15.1.1 Forest area as a proportion of total land area(15.99)

9) Tier1, Tier1/2 지표별 data frequency 전체 비중 및 점수는 동 연구의 '[별첨] 73개 지표 전체 총괄표'를 참조하기 바람.

10) 해당 12개 지표는 다음과 같다. ① 3.3.5 Number of people requiring interventions against neglected tropical diseases(1), ② 3.5.2 Harmful use of alcohol, defined according to the national context as alcohol per capita consumption (aged 15 years and older) within a calendar year in litres of pure alcohol(1), ③ 3.6.1 Death rate due to road traffic injuries(1), ④ 3.9.1 Mortality rate attributed to household and ambient air pollution(1), ⑤ 5.3.1 Proportion of women aged 20–24 years who were married or in a union before age 15 and before age 18(1), ⑥ 5.3.2 Proportion of girls and women aged 15–49 years who have undergone female genital mutilation/cutting, by age(1), ⑦ 7.1.2 Proportion of population with primary reliance on clean fuels and technology(1), ⑧ 8.7.1 Proportion and number of children aged 5–17years engaged in child labour, by sex and age(1), ⑨ 10.1.1 Growth rates of household expenditure or income per capita among the bottom 40 per cent of the population and the total population(1), ⑩ 11.6.2 Annual mean levels of fine particulate matter (e.g. PM2.5 and PM10) in cities (population weighted)(1), ⑪ 16.2.1 Proportion of children aged 1–17 years who experienced any physical punishment and/or psychological aggression by caregivers in the past month(1), ⑫ 16.9.1 Proportion of children under 5 years of age whose births have been registered with a civil authority, by age(1) (출처: IAEG-SDGs (2016)에서 저자 발췌 인용)

〈그림 6〉 목표별 Data Frequency 점수화 구성 현황



출처: 저자 작성

위 〈그림 6〉은 각 목표별로 data frequency 점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다. 우선 전반적인 목표별 구성을 보면 네가지 점수구성이 골고루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각 목표들마다 구성 Tier1, Tier1/2 지표들의 data frequency가 구성지표에 따라 각기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구성 지표 모두가 적어전체의 50%인 평균 8개년 이상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목표를 살펴보면 목표15(생물다양성), 목표17(이행수단·파트너십)을 들 수 있는데, 특히 목표15(생물다양성)의 경우 유일한 구성지표인 15.1.1(총 육지면적 중 산림 면적의 비율)은 평균 16개년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최대값을 보이고 있다. 또한 목표17(이행수단·파트너십)의 경우, quite good에 해당하는 17.6.2 (속도별 100명당 인터넷 광대역 사용자) 지표를 제외하고 나머지 8개 지표 모두 very good에 해당함에 따라 평균 12개년 이상의 높은 data frequency를 보이고 있다.

이렇듯 상기의 Tier1, Tier1/2 지표 전체 및 각 목표별 차원에서의 data frequency를 분석하였을 때, 두 분석 기준 모두에서 data frequency가 전반적으로 차이가 많이 남을 알 수 있다. 즉, 전체적 차원에서 보았을 때, 평균 8개년 이상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지표의 개수가 총 40개로 전체 대비 54.8%를 차지하는 반면, 그 이하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지표의 개수 역시 23개로 전체 대비 45.2%로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2000년 이후 data frequency가 평균

1개년에 그치는 지표의 개수가 12개에 이르며, 평균 4개년 이하의 data frequency를 가지는 지표 총 개수 역시 25개를 차지한다는 점을 볼 때 향후 안정적인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위해서는 Tier1, Tier1/2 지표 내에서도 data frequency를 보완하여 향후 안정적으로 데이터를 매년 업데이트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5. 종합 분석: Data Availability

데이터 이용가능성(Data Availability)이란, 상기의 country coverage와 data frequency의 점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얼마나 많은 대상국가들로부터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는가를 말한다. 따라서 country coverage와 data frequency 모두가 높을수록 데이터 이용가능성은 높다고 할 수 있으며, 반대일 경우 데이터 이용가능성이 전반적으로 낮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상기에서 데이터 접근가능한(data-accessible) Tier1, Tier1/2 지표 73개를 도출하여, 해당 73개 지표에 대한 country coverage와 data frequency를 각각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동 챕터에서는 country coverage와 data frequency의 상관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봄으로써 SDGs 지표의 전체적인 data availability를 평가하고자 한다.

아래 〈표 10〉은 대상 73개 지표의 country coverage와 data frequency의 상관관계를 각각 네 가지 점수화 기준에 따라 분류하여 나타낸 표이다. 우선 분류점수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country coverage와 data frequency가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부분은 둘 다 very good 점수를 받은 부분으로, 전체 73개 지표 중 26개 지표(34%)가 이에 해당한다. 즉, 전체 193개 UN회원국 중 약 144개 국가(75% 이상)에 대해 2000년 이후부터 적어도 12개년 이상의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는 Tier1, Tier1/2 지표가 총 26개인 것이다.

〈표 10〉 대상지표의 Country Coverage와 Data Frequency 상관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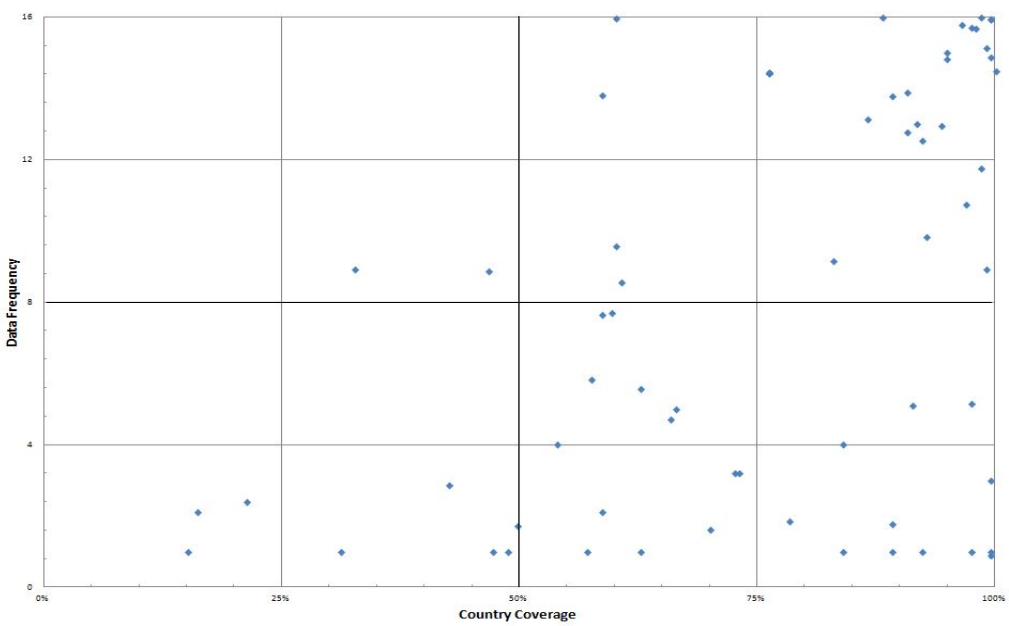
		Country Coverage				
		very poor	quite poor	quite good	very good	합계
Data frequency	very poor	3	5	8	10	**25**
	quite poor	0	0	5	2	**8**
	quite good	0	2	2	5	**9**
	very good	0	0	5	26	**31**
	합 계	**3**	**7**	**20**	**43**	**73**

출처: 저자 작성

하지만 그 다음으로 높은 점수(10, 8)을 보인 부분을 살펴보면, country coverage의 경우 very good, quite good에 해당함에 따라 전반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이는 반면 data frequency의 경우 very poor에 해당함에 따라 data frequency는 지표간 간극(gap)이 매우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country coverage와 data frequency 상관관계에 대해 전체적인 차원에서 볼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Country Coverage 전체 적인 점수의 순위를 보면 very good과 quite good이 각각 43, 20으로, 두 점수를 합한 값은 73개 지표 전체의 86.3%를 차지하고 있어 상당히 안정적으로 국가를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반해 data frequency의 경우, very good의 점수를 31점으로 가장 높게 얻은 동시에 very poor 점수가 25점으로 그 뒤를 이음에 따라 data frequency에 대한 지표간의 간극이 상당함을 알 수 있다. 특히 very poor에 해당하는 총 25개 지표 중에서 data frequency가 최하점인 '1'점을 보이는 지표 개수가 12개에 이른다는 점은 이러한 문제 현상의 심각성을 보다 가중시킨다고 할 수 있다.

〈그림 7〉 대상지표의 Country Coverage와 Data Frequency 상관관계 도식화



A: C.C(0<a≤50), D.F(0<a≤8), B:C.C(0<a≤50), D.F(8<a≤16), C:C.C(50<a≤100), D.F(0<a≤8), D:C.C(50<a≤100), D.F(8<a≤16)
출처: 저자 작성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은 data frequency 최하점인 1점을 보이는 지표들의 데이터 담당 기관이다. UNICEF는 데이터 접근이 가능한 총 73개 지표 중에서 총 5개 지표의 주요 데이터 담당 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5개 지표 전체가 data frequency에서 최하점인 1점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동 해당 지표들에 대해 UNICEF 자체만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은 데이터의 지속적인 제공측면에서 매우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타 관련기관들로부터 다른 대체 데이터를 얻거나 proxy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위 〈그림 7〉은 상기의 〈표 10〉상의 country coverage와 Data Frequency 상관관계를 도식화한 그림이다. 위 그림에 대한 해석의 편의를 위해 총 16개 구분을 good/poor 기준에 따라 네 가지(A,B,C,D)로 단순 점수화할 수 있는데[11], 이러한 방식은 두 기준간의 상관관계를 보다 명확히 보여준다는 점에서 용이하다. 위 그림 상에서 지표의 분포가 C와 D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통해 확인 가능하듯, 전반적으로 country coverage는 안정적인 반면, Data frequency는 very good과 very poor 중심으로 각 점수대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는 점에서 지표간 간극이 크다고 종합진단이 가능하다.

또한 country coverage와 data frequency 상관관계를 목표별 차원에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볼 때(〈표 11〉참조), 목표3(보건복지)과 목표17(이행수단·파트너십)이 전체적으로 가장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 우선 목표3(보건복지)의 경우, D영역에 해당하는 지표의 개수가 목표 17 다음으로 가장 많으며, country coverage와 data frequency 모두 very good에 해당하는 지표의 개수 역시 가장 많이 포함하고 있다. 특히 목표3을 구성하는 데이터 접근가능한(data-accessible) 총 14개 지표 모두가 50% 이상의 country coverage를 보임으로써 상당히 안정적인 국별 자료 기반을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목표3에서 또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은 이러한 높은 country coverage에도 불구하고 data frequency의 경우 그 간극이 유독 크다는 점이다. 즉, 전체 14개 지표에서 목표3은 5개 지표에서 very good 점수를 보이고 그 중에서도 2개 지표는 15.9 이상의 매우 높은 성적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1점 이하의 지표를 3개나 가지고 있음에 따라 총 9개의 1점 이하 지표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11) 4가지 점수구분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Country Coverage			
		very poor	quite poor	quite good	very good
Data frequency	very poor	A		C	
	quite poor	C.C(0<a≤50), D.F(0<a≤8)		C.C(50<a≤100), D.F(0<a≤8)	
	quite good	B		D	
	very good	C.C(0<a≤50), D.F(8<a≤16)		C.C(50<a≤100),D.F(8<a≤16)	

출처: 저자 작성

〈표 11〉 목표별 Country coverage & Data Frequency 상관관계

Goal	A	B	C	D	Very good on CC&DF	Very poor on CC&DF
1			3			
2			2	3	1	
3			8	6	4	
4	2			2		2
5	1		1	1	1	1
6			1	3	3	
7			2	2	2	
8		2	3	5	3	
9			1	5	3	
10	1			1	1	
11	2					
12						
13						
14						
15				1	1	
16	2		3	1		
17				9	7	
소계	**8**	**2**	**24**	**39**	**26**	**3**
합계	**73**					

A: C.C(0<a≤50), D.F(0<a≤8), B:C.C(0<a≤50), D.F(8<a≤16), C:C.C(50<a≤100), D.F(0<a≤8), D:C.C(50<a≤100), D.F(8<a≤16)
출처: 저자 작성

다음으로 목표17(이행수단·파트너십)의 경우에는 데이터 접근가능한(data-accessible) 총 9개 지표 모두 D영역에 포함됨에 따라 다른 목표들에 비해 가장 높은 country coverage와 data frequency들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country coverage의 경우 최대값인 100%에 해당하는 지표를 비롯해 총 4개의 지표가 90%이상의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매우 상이하게 분포되어 있는 data frequency의 경우에도, 목표 17의 경우 모두 quite good과 very good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data frequency를 확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73개 각각의 지표 수준에서 살펴보면, ① 3.2.1(5세 이하 아동 사망률), ② 3.2.2(신생아 사망률), ③ 15.1.1(총 육지면적 중 산림면적의 비율) 등 총 3개의 지표에서 country coverage와 data frequency 모두 최대값에 근접한 점수가 보인다는 점에서, 전체 중 가장 높은 data availability를 갖는 지표들이라 할 수 있다.

이렇듯 상기의 일련의 분석들을 통해서 보았을 때, 데이터 접근이 가능한(data-accessible) 73개 Tier1, Tier1/2 지표들의 전반적인 data availability는 비교적 평가가능하다. 특히 country coverage의 경우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data frequency의 경우 지표에 따라 그 편차가 크다고는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는 둘 간의 상관관계에서 C, D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사실상 17개 목표 각각의 이행 진척도를 제대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각 지표들 마다 193개 국가 모두 뿐만 아니라 다년간 충분한 데이터를 반드시를 확보함으로써 언제든지 해당 데이터 추적이 가능한 수준이 되어야만이 가능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SDGs Tier1, Tier1/2 지표의 data availability를 보면 193개 대상 국가들의 포함 비중은 비교적 높은 반면 데이터 이용가능 연도수는 상대적으로 불안정함에 따라 전체적인 data availability가 안정되지 못하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이러한 결론과 함께, 동 연구에서의 data availability 분석 결과를 SDGs 지표 전체로 확장하여 생각해볼 수도 있다. 먼저, Tier1, Tier1/2에 해당하지만 실제 접근가능한 데이터가 부재한 목표12, 목표13과 함께, Tier1, Tier1/2 지표자체가 부재한 목표13(기후변화)을 포함해 나머지 Tier2, Tier3, Tier2/3, Tier1/2/3, Untiered 지표 모두를 포함하면 전체 대상지표개수는 241개(중복제외시 230개)로 늘어나는 반면 현재 기준 이용가능한 지표 개수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데이터 이용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듯 data availability 논의를 SDGs 지표 전체 차원으로 확장하였을 때는 그만큼 데이터에 접근조차 불가한 지표의 개수까지 포함된다는 점에서 보다 회의적인 결론이 도출되지만, 동 연구에서의 data availability 논의를 위한 분석대상인 Tier1, Tier1/2 지표 범위자체가 사실상 SDGs 전체 차원에서 보았을 때도 데이터 이용가능성을 논하기 위한 유의미한 지표 범위와 일치한다는 점에서 98개(중복제외시 96개) 지표를 대상으로 한 동 연구의 결과로 SDGs 지표 전체에 대한 분석 결과를 대체하여 해석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고 할 수 있다.

Ⅳ. 결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현재 데이터 이용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분류되어 있는 Tier1, 그리고 좀 더 확장하여 Tier1/2 지표를 보았을 때, 시실상 제안된 보고서상의 분류체계와 현실간의 간극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즉 최종지표 선정과정에서 실질적인 데이터 이용가능성을 고려하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표상의 데이터 이용가능성이 결여되면 실질적으로 SDGs를 이행하고 모니터링하는데 현실적인 한계를 노정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SDGs의 본격적인 달성노력이 2016년부터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SDGs를 완전하게 이행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한 기반자체가 불완전하여 이를 보완하기 위한 추가 노력과 시간이 앞으로 더욱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Dunning and Kalow, 2016a).

물론 글로벌 지표 체계 수립이 현재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IAEG-SDGs는 앞으로도 tier system을 보완하고 2030년까지 지표와 모니터링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기술적인 지원을 해나갈 것이다. 따라서 현단계에서 IAEG-SDGs가 발표한 글로벌 지표 체계에 대해서 단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 하지만 지난 3월 UNSC의 최종지표 및 지표체계 발표 이후, 많은 국가들이 이에 맞추어 SDGs 이행을 위한 움직임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차원, 국내차원에서의 SDGs 이행체계 마련에 있어 기준이 될 글로벌 지표 체계가 보다 안정적이고 모범적으로 작동해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이용가능성이 높다고 제시한 Tier1 지표가 갖는 기대는 더욱 클 것이다. 하지만 동 분석 결과 현재 제시된 Tier1, 그리고 좀 더 나아가 Tier1/2 지표의 데이터 이용가능성을 살펴보았을 때, 국가포함수준(country coverage) 비교적 안정적인 반면, 데이터 빈도수(data frequency)는 상대적으로 불충분함에 따라 전반적인 데이터 이용가능성과 실제간의 간극(gap)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SDGs 각 목표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이행 정도를 제대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230개 지표 전체에 대해 193개 국가 모두 뿐만 아니라 다년간의 충분한 데이터 확보가 보장되어 언제든지 데이터를 추적할 수 있는(trackable) 체제가 되어야 한다. 또한 각 지표들이 요구하는 수준대로 세분화된 데이터를 확보할 수도 있어야 한다(Dunning and Kalow, 2016a). 이를 위해 현재 글로벌 지표 체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지역 및 국가 차원의 SDGs 이행체계를 잇는 플랫폼으로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 동 연구에서와 같은 면밀한 중간 점검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할 때에만이 IAEG-SDGs를 중심으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글로벌 지표체계 자체의 개선작업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위 단계에서의 SDGs 이행체계 마련 과정에서도 표준화된 글로벌 지표체계를 반영함으로써 보다 일관된 SDGs 이행 및 모니터링이 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김지현. 2016. “SDGs 지표 확정과 의의”『개발과 이슈』 제 25호.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발간예정)

IAEG-SDGs. 2016. “Provisional Proposed Tiers for Global SDGs Indicators as of March 2016”, available at http://unstats.un.org/sdgs/files/meetings/iaeg-sdgs-meeting-03/Provisional-Proposed-Tiers-for-SDG-Indicators-24-03-16.pdf

United Nations. 2016. “Report of the Inter-Agency and Expert Group o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Indicators” (E/CN.3/2016/2.Rev.1). New York: United Nations, available at https://documents-dds-ny.un.org/doc/UNDOC/GEN/N16/045/24/PDF/N1604524.pdf?OpenElement (접속일: 2016.07.15)

Dunning, Casey and Kalow, Jared. 2016a. “SDG Indicators: Serious Gaps abound in Data Availability”, posted on official website of Center for Global Development(CGD) (2016.05.17), available at http://www.cgdev.org/blog/sdg-indicators-serious-gaps-abound-data-availability (접속일: 2016.07.15)

_____. 2016b. “What SDGs Can We Track Now?” posted on official website of Center for Global Development(CGD) (2016.06.10), available at http://www.cgdev.org/blog/what-sdgs-can-we-track-now (접속일: 2016.07.15)

IISD. “News: SDG Group Discusses Indicator Selection, Way Forward” posted on 2 June 2015 on IISD website, available at http://sd.iisd.org/news/sdg-group-discusses-indicator-selection-way-forward/ (접속일:2016.07.15)

UN 대표홈페이지: un.org

[별첨] 73개 지표 전체 총괄표

지표 국문 번역[11]	C.C (%)	C.C score	D.F (yrs)	D.F score	데이터 담당기관	Database or proxy URL
1.1.1 성별, 연령별, 고용상태 및 도시/농촌등 지역별로 세분화된 세계 빈곤선 이하의 삶을 사는 인구비율	63%	quite good	5.56	quite poor	World Bank	http://data.worldbank.org/indicator/SI.POV.DDAY
1.2.1 성별 및 연령별로 세분화된 국별 빈곤선 이하의 삶을 사는인구 비율	66%	quite good	4.7	quite poor	World Bank	http://data.worldbank.org/indicator/SI.POV.NAHC
1.3.1 성별 및 아동, 실업자, 노인, 장애인, 임산부/신생아, 산재피해자, 빈곤계층과 취약계층별로 세분화되는, 사회보호안전망/시스템에 의해 보장되는 인구 비율	59%	quite good	2.1	very poor	World Bank ASPIRE	http://datatopics.worldbank.org/aspire/indicator_glance
2.1.1 영양 부족 현황	60%	quite good	15.96	very good	FAO	http://www.fao.org/economic/ess/ess-fs/ess-fadata/en/#.Vx-1IfkrKUk
2.2.1 5세이하 유아의 발달저해현황 (연령별 신장: WHO 아동성장 기준 중간값으로부터 표준편차 -2 미만)	73.1%	quite good	3.199	very poor	World Bank	http://data.worldbank.org/indicator/SH.STA.STNT.ZS
2.2.2 5세 이하 유아의 종류별(소모성,과체중) 현황 (신장별체중: WHO 아동 성장 기준 중간값으로부터 표준편차 -2 미만 또는 +2 초과)	72.5%	quite good	3.2	very poor	World Bank	Wasting: http://data.worldbank.org/indicator/SH.STA.WAST.ZS, Overweight: http://data.worldbank.org/indicator/SH.STA.OWGH.ZS
2.a.1 농업 지향 지수 (정부지출 중 농업 비중)	61%	quite good	8.56	quite good	FAO	http://faostat3.fao.org/download/I/IG/E
2.a.2 농업섹터에 지원된 전체 공적자금 (ODA 및 기타공적자금)	76%	very good	14.41	very good	FAO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CRS1
3.1.2 전문인력에의한 출산비율	91%	very good	5.1	quite poor	World Bank	http://data.worldbank.org/indicator/SH.STA.BRTC.ZS
3.2.1 5세 이하 아동사망률	99%	very good	15,932	very good	World Bank	http://data.worldbank.org/indicator/SH.DYN.MORT
3.2.2 신생아 사망률	99%	very good	15,927	very good	World Bank	http://data.worldbank.org/indicator/SH.DYN.NMRT
3.3.1 성별, 연령별, 주요 인구군별 감염되지 않은 인구 1,000명당 HIV 신규 발생률	84%	very good	4	very poor	WHO	http://apps.who.int/gho/data/view.main.22500A
3.3.2 인구 1,000명당 결핵 발생률	99%	very good	14.88	very good	WHO	http://apps.who.int/gho/data/view.main.57040ALL
3.3.3 인구 1,000명당 말라리아 발생률	54%	quite good	4	very poor	WHO	http://apps.who.int/gho/data/view.main.14111?lang=en

지표 국문 번역	C.C (%)	C.C score	D.F (yrs)	D.F score	데이터 담당기관	Database or proxy URL
3.3.5 소외열대질환 치료가 필요한 인구수	99.5%	very good	0.9	very poor	WHO	http://apps.who.int/gho/data/view.main.SDG33v?lang=en
3.5.2 15세 이상 인구 1인당 연간 알콜섭취량 (국별로 정의된 기준)	97%	very good	1	very poor	DESA PD	http://apps.who.int/gho/data/node.main.A1076?lang=en
3.6.1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	92%	very good	1	very poor	WHO	http://apps.who.int/gho/data/node.main.A997?lang=en
3.7.2 각 연령층별 1,000명 여성당 청소년 출산율 (10-14세,15-19세)	95%	very good	15	very good	World Bank	http://data.worldbank.org/indicator/SP.ADO.TFRT
3.9.1 가구 및 주변의 공기오염에 기인한 사망률	89.1%	very good	1	very poor	WHO	http://apps.who.int/gho/data/node.main.1?lang=en
3.a.1 15세 이상 인구 중 흡연자의 연령 표준화 현황	66%	quiet good	5	quite poor	WHO	http://apps.who.int/gho/data/node.main.65?lang=en
3.b.2 의학 연구 및 기초 보건분야에 대한 ODA총액(total net ODA)	76%	quiet good	14.41	very good	OECD-DAC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CRS1
3.c.1 보건 인력 비율과 배치	97%	very good	5.14	quite poor	WHO	http://apps.who.int/gho/data/node.main.A1444?lang=en
4.2.2 (공식 초등교육시작 1년 전에) 체계화된 학습 참여 비율(성별)	97%	very good	10.74	quite good	UNESCO-UIS	http://data.uis.unesco.org/
4.a.1 (a)전기, (b)수업목적의 인터넷, ©수업목적의 컴퓨터,(d)장애 학생을 위한 설비 및 교재, (e)기초식수, (f)성별로 분리되어 있는 기초위생시설 및 (g)기초손씻기시설(WASH지표 정의에 따른)에 대한 접근성이 있는 학교의 비율	21%	very poor	2.39	very poor	UNESCO-UIS	http://data.uis.unesco.org/
4.b.1 학습분야 및 형태에 따른 장학금 ODA 규모	76%	quiet good	14.41	very good	OECD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CRS1
4.c.1 국별 기준에 부합하는 최소 수준의 체계적인 자격전 및 재 교육을 받은 (a)유치원, (b)초등학교, ©중등학교, (d)고등학교 교사의 비율	16%	very poor	2.1	very poor	UNESCO-UIS	http://data.uis.unesco.org/
5.3.1 20-24세 여성중 15세 이전/ 18세 이전에 결혼 또는 동거를 했던 여성의 비중	63%	quite good	1	very poor	UNESCO-UIS	http://data.unicef.org/child-protection/child-marriage.html
5.3.2 15-49세 소녀 및 여성 중 여성성기 절제를 받는 인구의 연령별 비중	15%	very poor	1	very poor	UNICEF	http://data.unicef.org/child-protection/fgmc.html
5.5.1 의회와 지방 정부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	99%	very good	15.13	very good	World Bank	http://data.worldbank.org/indicator/SG.GEN.PARL.ZS

지표 국문 번역	C.C (%)	C.C score	D.F (yrs)	D.F score	데이터 담당기관	Database or proxy URL
5.5.2 여성 경영진 비중	33%	quiet poor	8.92	quite good	ILO	https://www.ilo.org/ilostat/faces/help_home/data_by_subject/subject-details/indicator-details-by-subject?subject=EMP&indicator=EMP_XFMG_NOC_RT&datasetCode=YI&collectionCode=YI&_afrLoop=723826570931069#%40%3Findicator%3DEMP_XFMG_NOC_RT%26subject%3DEMP%26_afrLoop%3D723826570931069%26datasetCode%3DYI%26collectionCode%3DYI%26_adf.ctrl-state%3D4rl8lfai6_301
6.1.1 안전하게 관리되는 식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인구비율	98%	very good	15.68	very good	World Bank	http://data.worldbank.org/indicator/SH.H2O.SAFE.ZS
6.2.1 비누와 물이 있는 손씻기시설 등을 포함한 안전하게 관리되는 위생시설을 이용하는 인구 비율	97%	very good	15.36	very good	JMP	http://data.worldbank.org/indicator/SH.STA.ACSN
6.4.2 물스트레스수준: 가용한 담수 자원 비율로서의 담수 취수	89%	very good	1.76	very poor	AQUASTAT	http://www.fao.org/nr/water/aquastat/data/query/index.html?lang=en
6.a.1 정부지출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물과 위생시설 관련 ODA 총액	76%	very good	14.41	very good	OECD-DAC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CRS1
7.1.1 전기접근성을 가진 인구 비율	99%	very good	3	very poor	World Bank	http://data.worldbank.org/indicator/EG.ELC.ACCS.ZS
7.1.2 청정연료와 기술들을 주로 사용하는 인구의 비율	99%	very good	1	very poor	WHO	http://apps.who.int/gho/data/view.main.EQSOLIDFUELSTOTv
7.2.1 전체 최종에너지 소비에서 재생에너지 비중	92%	very good	12.54	very good	World Bank	http://data.worldbank.org/indicator/EG.FEC.RNEW.ZS
7.3.1 일차 에너지와 GDP 차원에서 측정한 에너지 집중도	94%	very good	12.94	very good	World Bank	http://data.worldbank.org/indicator/EG.EGY.PRIM.PP.KD
8.1.1 실질 GDP p.c .성장률	95%	very good	14.83	very good	World Bank	http://data.worldbank.org/indicator/NY.GDP.PCAP.PP.KD
8.2.1 취업인구 1인당 실질 GDP 성장률	88%	very good	16	very good	World Bank	http://data.worldbank.org/indicator/SL.GDP.PCAP.EM.KD

지표 국문 번역	C.C (%)	C.C score	D.F (yrs)	D.F score	데이터 담당기관	Database or proxy URL
8.5.2 성별, 연령별, 장애여부별 실업률	92%	very good	13	very good	ILO	https://www.ilo.org/ilostat/faces/help_home/data_by_subject/subject-details/indicator-details-by-subject?subject=UNE&indicator=UNE_2EAP_SEX_AGE_RT&datasetCode=YI&collectionCode=ILOEST
8.6.1 15-24세 청(소)년 중 교육 또는 고용, 훈련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NEET) 인구 비율	60%	quite good	3.36	quite poor	World Bank	http://data.worldbank.org/indicator/SL.UEM.NEET.ZS
8.7.1 성별, 연령별 노동 아동의 수 및 비율	57%	quite good	1	very poor	UNICEF	http://data.unicef.org/child-protection/child-labour.html
8.8.1 성별, 이민신분별 치명 또는 비치명적 직업 관련 부상빈도 비율	47%	quite poor	8.88	quite good	ILO	Fatal:https://www.ilo.org/ilostat/faces/help_home/data_by_subject/subject-details/indicator-details-by-subject?subject=INJ&indicator=INJ_FATL_SEX_ECO_NB&datasetCode=YI&collectionCode=YI&_afrLoop=1422663932150231#%40%3Findicator%3DINJ_FATL_SEX_ECO_NB%26subject%3DINJ%26_afrLoop%3D1422663932150231%26datasetCode%3DYI%26collectionCode%3DYI%26_adf.ctrl-state%3Dbb34ptszm_1073 Non-Fatal:https://www.ilo.org/ilostat/faces/help_home/data_by_subject/subject-details/indicator-details-by-subject?subject=INJ&indicator=INJ_NFTL_SEX_ECO_NB&datasetCode=YI&collectionCode=YI&_afrLoop=1422664595267641#%40%3Findicator%3DINJ_NFTL_SEX_ECO_NB%26subject%3DINJ%26_afrLoop%3D1422664595267641%26datasetCode%3DYI%26collectionCode%3DYI%26_adf.ctrl-state%3Dbb34ptszm_1094
8.10.1 성인 100,000명당 상업은행 지점과 ATM수	93%	very good	9.82	quite good	World Bank	http://data.worldbank.org/indicator/FB.ATM.TOTL.P5
8.10.2 15세 이상 성인 중 은행, 기타금융기관, 또는 모바일 금융 서비스 제공자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인구 비율	78%	very good	1.85	very poor	World Bank	Mobile-moneyserviceprovider:http://databank.worldbank.org/data/reports.aspx?source=1228 Accountatfinancialinstitution:http://data.worldbank.org/indicator/WP_time_01.1

지표 국문 번역	C.C (%)	C.C score	D.F (yrs)	D.F score	데이터 담당기관	Database or proxy URL
8.a.1 무역을 위한 원조(AfT) 약정 및 배분	76%	quite good	14.41	very good	OECD-DAC	http://www.oecd.org/dac/aft/aid-for-tradestatisticalqueries.htm
9.1.2 교통수단별 승객 및 운송량	87%	very good	13.14	very good	World Bank	Airfreight:http://data.worldbank.org/indicator/IS.AIR.GOOD.MT.K1 Airpassengers:http://data.worldbank.org/indicator/IS.AIR.PSGR Railgoodstransported:http://data.worldbank.org/indicator/IS.RRS.GOOD.MT.K6 Railpassengers:http://data.worldbank.org/indicator/IS.RRS.PASG.KM
9.2.1 GDP와 GDPp.c.에서의 제조부가가치(MVA) 비율	91%	very good	13.87	very good	World Bank	http://data.worldbank.org/indicator/NV.IND.MANF.ZS
9.2.2 전체 고용에서 제조업 고용 비중	83%	very good	9.14	quite good	World Bank	http://data.worldbank.org/indicator/SL.IND.EMPL.ZS
9.5.1 GDP 중 R&D 지출	60%	quite good	9.58	quite good	UNESCO-UIS	http://data.uis.unesco.org/
9.5.2 거주자 백만 명당 (전일제) 연구 인력	60%	quite good	7.7	quite poor	UNESCO-UIS	http://data.uis.unesco.org/
9.a.1 인프라에 활용된 전체 국제공적지원 (ODA 및 기타 공공자금)	76%	very good	14.41	very good	OECD-DAC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CRS1
10.1.1 전체 인구 또는 하위 40%의 가구 지출 또는 1인당 소득의 증대율	49%	quite poor	1	very poor	World Bank	http://data.worldbank.org/indicator/SI.SPR.PC40.ZG
10.b.1 ODA, FDI 및 기타 자금 등 자금의 종류, 수원국별, 공여국별 개발을 위한 전체 자원 동원	76%	very good	14.41	very good	OECD-QWIDS	https://stats.oecd.org/qwids/
11.1.1 빈민가, 무허가 또는 적절하지 않은 주거지에서 거주하는 도시 인구 비율	42%	quite poor	2.85	very poor	UN Habitat	http://urbandata.unhabitat.org/wp-content/themes/urbandatatheme/urbandata/download.php?type=indicators&code=urban_population_living_in_slum&format=csv
11.6.2 도시 내 (인구 가중치 적용) PM2.5 및 PM 10 등으로 표기되는 연중 미세먼지 평균 수준	47%	quite poor	1	very poor	WHO	http://www.who.int/entity/phe/health_topics/outdoorair/databases/OAP_database.xls?ua=1
15.1.1 총 육지 면적 중 산림 면적의 비율	98%	very good	15.99	very good	World Bank	http://data.worldbank.org/indicator/AG.LND.FRST.ZS
16.1.1 성별, 연령별 고의적 살인 피해자 수(인구 100,000명당)	99%	very good	8.91	quite good	UNODC	https://data.unodc.org/

지표 국문 번역	C.C (%)	C.C score	D.F (yrs)	D.F score	데이터 담당기관	Database or proxy URL
16.2.1 지난 1개월 동안 보육자로부터 신체적 처벌이나 정신적 공격을 경험한 바 있는 1-17세 어린이의 비율	31%	quite poor	1	very poor	UNICEF	http://data.unicef.org/child-protection/violence.html
16.3.2 전체 수감인구 중 판결 없이 구금되어 있는 사람의 비율	59%	quite good	7.65	quite poor	UNODC	https://data.unodc.org/
16.5.2 지난 12개월 동안 적어도 1회 이상 공무원에 접촉한 적이 있으면서 뇌물을 주었거나 뇌물을 줄 것을 요구받은 민간기업의 비율	70%	quite good	1.61	very poor	World Bank Enterprise Surveys	http://www.enterprisesurveys.org/Custom-Query
16.6.1 섹터별 (또는 예산코드별) 승인된 예산 중 1차 정부지출의 비율	50%	quite poor	1.72	very poor	World Bank, PEFA	http://www.pefa.org/en/assessment_search
16.9. 15세 이하 아동 중 출생신고된 비율	83.9%	very good	1	very poor	UNICEF	http://data.unicef.org/child-protection/birth-registration.html
17.1.1 재원별 GDP 대비 총 정부수익	96.4%	very good	15.78	very good	IMF-WEO	https://www.imf.org/external/pubs/ft/weo/2015/02/weodata/weoselgr.aspx
17.2.1 최빈국 및 전체 개발도상국에 지원되는 ODA/GNI	76%	very good	14.41	very good	OECD-DAC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CRS1
17.3.1 총 국내예산 중 FDI와 ODA, 남남협력의 비율	76%	very good	14.41	very good	OECD-DAC	https://stats.oecd.org/qwids/
17.3.2 전체 GDP 중 해외송금 비율 (미화기준)	89%	very good	13.77	very good	World Bank	http://data.worldbank.org/indicator/BX.TRF.PWKR.DT.GD.ZS
17.4.1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 중 부채서비스의 비율	59%	quite good	13.8	very good	World Bank	http://data.worldbank.org/indicator/DT.TDS.DECT.EX.ZS
17.6.2 속도별 100명당 인터넷 광대역 사용자	98%	very good	11.76	quite good	World Bank	http://data.worldbank.org/indicator/IT.NET.BBND.P2
17.8.1 인터넷 사용 인구 비율	100%	very good	14.49	very good	UN Data	http://data.un.org/Data.aspx?q=internet&d=ITU&f=ind1Code%3a199H
17.9.1 개발도상국에 약정된 재정 및 기술지원의 달러화 가치 (북-남, 남-남, 삼각협력을 통한 지원 포함)	76%	very good	14.41	very good	OECD-DAC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CRS1
17.11.1 전세계 수출 중 개발도상국과 최빈국의 점유 비율	91%	very good	12.77	very good	WITS	http://wits.worldbank.org/CountryProfile/en/country/ALL/startyear/2010/endyear/2014/indicator/NE-EXP-GNFS-CD

출처: Dunning and Kalow (2016b) 자료 기반으로 저자 오류 수정 및 보완, 재구성

11) '김지현 (2016, 발간예정)' 보고서에서는 SDGs 전체 230개 지표에 대한 국문 번역을 제공하고 있으며, 동 연구에서의 '지표 국문 번역' 내용은 김지현 (2016) 보고서에서 차용하였음을 밝힌다.

해외긴급구호의 법적 기반 및 운영체계 연구: 일본, 호주, 스위스를 중심으로[1)]

권구순 (서울사이버대학교 교양학부 교수)[2)]
홍문숙(글로벌발전연구원 ReDI 지속발전협력본부 본부장)[3)]

목차

Ⅰ. 서론
Ⅱ. 일본의 해외 인도적 지원 및 긴급구호
Ⅲ. 호주의 해외 인도적 지원 및 긴급구호
Ⅳ. 스위스의 해외 인도적 지원 및 긴급구호
Ⅴ. 결론 및 제언

1) 본 논문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서울사이버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하여 수행한 연구인 〈해외긴급구호의 법적 기반 및 운영체계 관련 주요 공여국 사례연구 (권구순, 이윤제, 홍문숙, 이경신, 하경화, 홍지영, 신선연, 신호진, 구소연)〉 의 최종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연구책임자 권구순과 공동연구자 홍문숙이 재구성한 내용임을 밝힘. 연구보고서 전체 원문은 KOICA 홈페이지와 도서관(http://www.koica.go.kr)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음.

2) 02-944-5196 / jeremy-kwon@hotmail.com

3) 02-323-9110 / moonshiely@redi.re.kr

초록(Abstract)

한국은 정부차원에서 1990년대부터 전 지구적인 자연재난에 대한 긴급구호 활동을 개시하였고 2004년 동남아지진해일 구호를 계기로 체계적인 해외재난구호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7년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 및 시행령」을 제정하였다. 이를 토대로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orea Disaster Relief Team, 이하 KDRT)'를 조직하여 해외재난구호활동을 수행해왔다. 한편, 재난규모의 대형화와 피해당사국 정황의 복잡성과 같은 외부적 변수로 인해 KDRT의 평시대비와 관련한 법과 운영측면의 개선이 지속적으로 요구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중장기적으로 KDRT 운영의 질적 개선을 위해 주요 선진공여국 중 권역별로 일본(아시아), 호주(영미), 스위스(유럽)를 선정하여 인도적 지원 및 긴급구호의 법제와 정책, 운영에 대한 문헌조사 및 유관기관 방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다음과 같이 시사점 및 제언을 도출하였다.

법제는 3국 공히 인도적 지원만을 규정하는 법을 제정하기보다 국제개발협력법에 인도적 지원조항을 명시하거나 절차상 특별법을 제정한 점을 감안하여 현행법 개정 대신 중장기적으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인도적 지원 규범과 원칙에 부합하는 목적과 정의, 주요원칙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정책의 경우, 3국은 구체적인 해외 인도적 지원 및 구호관련 정책과 전략의 수립 및 이행체계 마련, 주기적인 점검과 개선을 실시하고 있었다. 따라서 우리 정부도 관련 정책과 전략의 방향성 검토를 통해 구체적인 이행전략과 주제 별 세부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초기 사전조사의 중요성을 감안, 사전조사단의 구성, 편성, 수행역할 등을 명문화하고 기 수립된 KDRT의 평시운영체계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운영협의회와 실무협의회를 통한 주기적인 모니터링 및 점검이 요구된다.

구호대 운영체계에 있어서는 3국 모두 충분한 인적·물적 기반을 토대로 재난상황에 부합하여 신속한 운영체계를 갖추고 있으므로 KDRT도 주무부처인 외교부의 총괄조정 하에 부처 별 협조체계를 보다 원활히 구축하고 KDRT 사무국은 인력관리와 장비유지 예산확보 및 구호대의 인력풀관리와 역량강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물류는 외주관리, 기관별 관리, 직영관리 중 재난대비 및 현지정황을 반영한 물류관리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

이와 더불어 재난취약국 대상 국가협력전략 수립 시 재난경감 반영, 민간섹터와의 다양한 협력체계 구축을 제언하였다.

주제어: 인도적 지원, 긴급구호, 구호대, 재난경감

Ⅰ. 서론

한국 정부는 1990년대 초부터 대규모 해외재난에 대한 구호 활동에 참여해왔다. 특히 2004년 동남아지진해일 구호활동을 계기로 체계적인 해외재난구호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7년「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 및 시행령」을 제정하였다. 이어서 외교부는 2008년 OECD/DAC (개발협력위원회, 이하 DAC)의 특별검토를 통해 제시된 5개 권고사항 중 하나인 '인도주의, 중립성, 독립성 강화 및 수원국 수요에 기반 한 인도적 활동 강화, 다자원조채널 적극 활용'에 대한 후속대책으로 2011~2015년까지의 무상 및 다자협력 계획을 포함한 '분야별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동 기본 계획에는 '분쟁·재해관련 인도적 지원 및 평화구축 노력 지원강화를 통해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가 6대 전략목표 중 제3목표로 포함된 바 있다. 이러한 법제 및 정책적 이니셔티브에 근거하여 중앙 119구조본부를 주축으로 하는 구조팀과 국립중앙의료원 의료인력 및 국제보건의료재단의 인력풀로 구성된 의료팀,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이하 KOICA) 직원들이 참여하는 지원팀으로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orea Disaster Relief Team, 이하 KDRT)'를 조직하여 각종 대규모 해외재난에 파견해왔다.

한편 현행 법률은 인도적 지원의 4대 기본원칙 중 인도주의만을 명시하고 재난 발생 직후의 긴급구호에 대해서만 규정하여 재난 대응 사이클 – 예방 및 경감, 대응, 조기복구, 개발과의 연계성과 수행요건 – 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재난을 자연 재해로 제한한 나머지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대두되는 '인적 재난, 만성적 재난, 무력충돌, 복합적 위기상황' 등에 개입하는데 한계가 있고 이러한 재난에 범위에 대응하는 광의의 인도적 지원 개념을 반영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반면 KDRT의 경우, 파견 대비를 위한 평시 관리가 각 팀별로 분산되어 있었으나 이를 유기적으로 통합 운영하는 방안이 추진 중에 있고 보다 체계적인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및 시뮬레이션 연습계획도 수립된 것은 중요한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한국정부가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해외재난 발생 시 신속한 파견과 원활한 현지 구호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연계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해외 인도적 지원과 긴급구호활동의 지식과 경험을 축적하고 있는 선진공여국의 우수사례를 조사함으로써 발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주요 선진공여국, 즉 아시아권에서 일본, 영미권에서 호주, 유럽권에서 스위스를 조사대상국으로 추출하여 각국의 해외긴급구호 및 인도적 지원 관련 법·정책·전략과 더불어 이를 근거로 구축한 유관 부처 및 기관별 조정체계와 실제 재난현장에 파견된 긴급구호대의 운영체계를 연구범위로 설정하였다. 연구는 정성적 연구방법을 채택하여 국내 및 조사대상국의 현황에 대한 기초 문헌 및 자료를 분석하였고 국내 및 조사대상국 유관부처 및 기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각국의 시사점을 토대로 현행 국내 법령과 정책의 개선방향 및 운영체계에 대한 제언을 도출하였다.

II. 일본의 해외 인도적 지원 및 긴급구호

1. 법적 체계 및 정책

일본은 한국과 가장 유사한 법적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자연재난의 경우 「국제 긴급원조대(Japan Disaster Relief, 이하 JDR)파견에 관한 법률」과 무력충돌 시 구호를 위한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등의 협력에 관한 법률」을 각각 제정하여 구호대파견에 관한 절차를 규율하고 있다. 또한 JICA 법(Law Concerning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2014년 최종 개정) 의 제3장 제13조는 JICA가 수행하는 인도적 지원 업무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제1항 제6호에서는 "개발도상지역 등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재난에 대해 국제긴급원조활동 「JDR 법」 및 기타 국제긴급원조를 위한 기자재 및 그 외 물자를 비축 또는 공여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해외긴급구호에 대한 물품 지원의 의무를 포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제2항 제1호, 제2호는 "기구는 전 항의 업무 이외에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JDR 법」에 기초한 국제긴급원조대의 파견, 이외 물자의 조달, 전송의 준비 등을 하는 것과 국제 긴급원조 활동에 필요한 기자재 제공"을 언급하여 인력파견 이외에도 JICA가 JDR과 관련된 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박스 1] 국제긴급원조대 파견에 관한 법률(2006년 개정)

- (국제긴급원조대 파견 법률의 목적) 해외 지역, 특히 개발 도상에 있는 해외 지역에 대해 대규모 재해가 발생하거나 또는 발생할 경우, 재해의 영향을 받거나 혹은 받을 우려가 있는 나라의 정부 또는 국제 기관(이하 '피해국 정부 등'이라 함)의 요청에 따라, 국제 긴급 원조 활동을 행하는 인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국제긴급원조대를 파견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규정하고 특히, 국제 협력 추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국제긴급원조대의 임무) 국제긴급원조대는 전조에서 규정하는 재해에 관한 다음의 제시된 활동(이하 '국제 긴급 원조 활동'이라고 함)을 실시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 1. 구조 활동, 2. 의료 활동(방역 활동 포함), 3. 전2호에 언급된 것 외의 재해응급대책 및 재해복구를 위한 활동이 이에 속한다.

- (관계행정기관 협의) 외무대신은 피해국 정부로부터 국제긴급원조대 파견 요청이 있을 경우,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 파견이 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국제긴급원조대의 파견에 대한 협력을 요구하기 위해 피해국 정부 등으로부터 해당 요청의 내용, 재해의 종류 등을 감안해, 별표에 명시한 행정 기관(다음조의 '관계행정기관'이라 함)의 장 또는 국가 공안 위원회와 협의를 실시한다.

- (외무대신의 독립 행정 법인 국제 협력 기구(JICA) 에 대한 명령) 외무대신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독립 행정 법인 국제 협력 기구에 대해, 국제긴급원조활동을 전조의 규정에 의거해 행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 공공 단체 또는 독립행정법인의 직원 그 외의 인력을 국제긴급원조대로 파견하도록 명할 수 있다.

출처: 国際緊急}援助隊の派遣に関する法律 (2006)

정책부문에 있어서는 인도적 지원을 '인간안보' 실현의 주요과정으로 인식하고 재난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재난경감(Disaster Risk Reduction, 이하 DDR)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관련 세부전략을 수립 및 이행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개발협력의 도전과제와 범위가 더욱 다양하고 복잡해지며 공적개발원조(ODA) 이외의 활동 및 재원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2015년 2월, 기존 대강을 '개발협력 대강(Development Cooperation Charter)'으로 변경하여 발표하였다. 본 정책문서에서 일본은 개발협력의 주된 철학으로서 평화, 안정, 번영에 대한 기여를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다. 특히, ① 비군사적 목적과 협력을 통한 평화 유지, ② 인간 안보 증진, ③ 일본 경험과 전문성에 근간을 둔 대화와 협력을 통한 자립 지원을 기본 정책으로 언급하고 있다(GOJ, 2015). 2015년 새롭게 제시된 일본 개발협력 정책 우선순위 역시 ① 보편적 가치의 공유 및 국제 평화 및 안정 증진을 위한 협력, ② 개발도상국 및 일본의 경제 성장을 위한 전략적 개발협력 제고, ③ 인간안보 증진, ④ 전략적 파트너십 수립이다. 또한 2015년 개발협력 전략 내에서도 국제 평화 및 안정과, 인간안보를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MOFA, 2015).

ODA백서(2013)는 "미래 투자로서의 개발협력(Development Cooperation as Investment in the Future)"에 방점을 두고 변화하는 ODA환경에 근거한 일본 ODA 방향 조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본 백서에서 일본 정부는 전 세계적으로 국제적 혹은 비국제적 무력충돌로 인해 발생한 다수의 피해자들을 감안하여 '인간안보(human security)' 원칙에 근거한 ODA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분쟁이나 내전 등으로 인한 상황에도 인간안보 개념에 근거한 ODA를 강조한다. 또한 본 백서에서는 재난경감과 긴급지원에 대한 협력의 중요성을 별도로 언급하고 있다. 재난으로부터 인간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복원력을 갖춘 사회(resilient society)가 되도록 재난경감을 주류화 하고, 모든 개발의 단계에서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긴급지원에 있어서는 국제사회 또는 피해당사국을 통해 JDR의 파견, 현물 및 현금을 지원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GOJ, 2014). 물론 일본의 ODA정책이 인도적 지원 정책과 완전히 부합되는 것은 아니나, 유사한 맥락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일본 ODA정책에서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는 '인간안보(Human Security)'의 개념은 인도적 지원 정책의 중요한 목적으로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정부의 인도적 지원 정책 중 특히 대응(response)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은 다섯 가지로 ① 난민 및 국내실향민(Internally displaced persons, 이하 IDPs)에 대한 지원, ② 긴급구호에서 조기 복구 및 개발로의 전환(smooth transition), ③ 자연재해의 적절하고 효과적인 지원, ④ 개발원조 담당자의 안전, ⑤ 민·군 간 임무조정이다.

구체적으로 일본 정부는 난민 및 국내실향민에 대한 지원이 인간안보 뿐 아니라 해당 지역 내 평화와 안정성에 크게 기여함을 언급하며, 물자지원 뿐 아니라 자발적 재정착, 재통합을 지원하고

있다. 난민 지원의 경우 대부분 세계식량계획(WFP), 유엔난민기구(UNHCR) 등 다자기구를 통한 현금지원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최근 UN에서도 가장 중요한 현안 중 하나로 대두됨에 따라 일본 정부 또한 관련한 지원을 증대할 계획이다. 둘째, 일본 정부는 긴급구호에서 조기 복구 및 재건으로의 전환(smooth transition)을 통한 재난 피해자들의 자립을 지원한다. 셋째, 일본은 자연재해에 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로서 긴급원조대의 파견 뿐 아니라 재난경감분야에서도 선두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넷째, 개발원조 담당자의 안전에 있어 '인도적지원 활동 공간(humanitarian space)'의 중요함을 언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민 · 군 간 임무조정과 관련해서 대규모 자연재해 시, 군 보유 자산의 동원이 가능하나 원론적으로 민간 차원의 대안이 없을 경우에만 군 보유 자산이 사용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군 자산 동원은 국내 정치와 맞물려 난제(難題)로 여겨짐에 따라, 외무성은 주로 '오슬로 가이드라인(Oslo Guideline)'을 참조하고, 아시아안보포럼(ASEAN Regional Forum, ARF) 훈련도 참석하는 등의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러한 일본 인도적 지원의 5대 정책 우선순위 결정은 당시의 인도적 지원 수행에 있어 가장 큰 장애가 무엇인지 판단하여 그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우선순위에 놓은 것이다. 특히 전통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도적 지원 개념(인간안보 등)과 국제적인 상황 및 당시 인도적 지원활동과 관련하여 국제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담론, 타국의 대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ODA를 통한 재난경감 이니셔티브(2005)와 재난경감 프로그램과 사업을 강조하고 있다. 일본 외무성은 ODA 주요 분야 중 하나이자 인도적 지원 정책의 주요 우선순위로 재난경감을 강조하고 있으며 관련 전략은 2005년부터 수립되어 시행중에 있다. 본 정책의 기본원칙은 재난경감과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인간안보의 개념에서 자연 재해의 위협에 대응하는데 있다. 개발도상국의 각 개인(특히 젠더 관점에서)을 중심으로 하되 전 지구적, 지역적, 국가적 차원에서의 고려가 필요함을 언급하고 있다.

일본 재난경감 전략의 주요 목적은 ODA를 통한 개발도상국의 자립을 돕는 것으로서 기본 정책은 ① 재난경감과 관련된 우선순위 제고(Raising the priority attached to disaster reduction), ② 인간안보의 관점(Perspective of human security), ③ 젠더 관점(Gender perspective), ④ 소프트웨어 관련 지원의 중요성(Importance of assistance regarding software), ⑤ 지역적으로 가용한 적정기술의 동원과 보급(Mobilization and dissemination of locally available and suitable technology), ⑥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파트너십(Promoting partnerships with various stakeholders)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재난경감의 주요 기본 정책과 원칙에 근거하여 일본 정부는 재난경감 관련 협력 업무 실시에 있어 재난의 각 단계에 적합한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 방안으로는 ① 재난 예방을 개발 정책으로 통합하는 것, ② 재난 직후 신속하

고 적절한 지원을 하는 것, ③ 재건에서 지속가능발전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을 제시한다.

각 방안별 구체적인 실행전략으로 첫째, 재난 예방을 개발 정책으로 통합하는 것과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재난예방의 관점을 포함하는 제도구축이다. 이에 재난 예방을 위한 전문가 교육과 역량강화가 필수적이며 지역사회의 재난경감에 대한 역량과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재난 직후 신속하고 적정한 지원을 위해서는 즉각적이고 적절한 긴급구호 및 지원, 긴급대응을 위한 전문가 훈련 및 파견, 재난에 따른 식량 부족에 대응한 식량 지원, 재난 각 단계에 상응하는 일관적인 협력 전략이다. 세 번째 방안으로는 재건에서 지속가능발전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 위해서 견고한 경제·사회 인프라와 건축물 확보를 위한 지원, 재난에 견고한 시스템과 기술의 보급, 그리고 재건 및 개발에 필수적인 재정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2. 국제긴급원조대 운영[4)]

일본은 주무부처인 외무성이 해외긴급구호의 배타적 의사결정권을 토대로 부처 간 협력을 주도하고 원조대 파견실무는 양자원조기관인 JICA 내 JDR 사무국(Secretariat)에서 총괄하고 있다. 따라서 인도적 지원 및 해외긴급구호에 대한 외무성의 결정사항에 따라 파견업무의 JDR 사무국에서 전담한다. 사무국은 「JDR 법」에 근거하고, JICA 내부 규정에 따라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JDR 사무국의 주요 역할은 원조대의 파견, 물자 비축 및 공여를 중심으로 재난 정보 수집, 원조대 요원 모집 및 등록, 훈련 및 연습, 장비 조달 및 관리, 국내 및 국제 조직 간의 연락 및 조정, 유엔재난평가조정단(UN Disaster Assessment and Coordination, 이하 UNDAC)과 국제도시탐색구조자문그룹(The International Search and Rescue Advisory Group, 이하 INSARAG)에 대한 기여 등이다. 사무국은 원조대의 인력 및 예산의 집행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장비수준 및 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한 훈련 등 지원이 체계화 되어있다. JDR 사무국 내 JICA 정규직원은 소수이며 순환보직 되더라도 장기 계약직 직원을 고용하여 긴급구호 업무의 연속성이 보장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

원조대는 구조팀과 의료팀으로 구성되는데 구조팀의 경우, 외무대신의 파견결정 이후, 24시간 이내에 출국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향후 40명 정도의 중소 구조팀과 장비로 출동하는 것을

4) 일본, 호주, 스위스의 국제구호대 운영(관리, 각팀별 현황, 인력관리, 장비관리, 장비 및 운송 절차, 단계별 대응절차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의 2장 2절을 참고하기 바람. 전체 보고서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 할 수 있음.
http://lib.koica.go.kr/search/detail/CATTOT000000039626?mainLink=/search/tot&briefLink=/search/tot/result?os=DESC_A_commandType=advanced_A_lmtsn=000000000001_A_p1=91_A_lmt0=TOTAL_A_type=local_A_si=TOTAL_A_q=%EA%B6%8C%EA%B5%AC%EC%88%9C_A_lmtst=OR_A_st=KWRD_A_oi=DISP06_A_y=0_A_x=0.

고려하는 등 구조조정(restructuring)을 현재 진행 중이다. 이는 네팔 지진 당시, 원조대 파견 및 물류 운송과정에서 우선순위 미 지정으로 인하여 물류 운송에 차질이 생겼고 네팔 현지 물류 시스템이 열악하여 지게차 없이 수작업으로 짐을 옮겨야 하는 등의 난관을 경험한 후 구조팀의 편성 인력 및 장비의 간소화 필요성 교훈을 반영하고자 함이다. 또한, 도쿄 경시청 소속 인력이 사무국에 파견되어 인명구조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 제공 및 구조팀을 구성하는 3개 기관(소방재난관리청, 경찰청, 해상보안청)간의 합동 훈련 기획 등 사무국의 필요에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각 기관은 「JDR 법」에 의거하여 인력의 파견 및 훈련을 소속기관의 임무로 간주한다. 인력풀을 대상으로 각 기관은 예방접종, 관용여권 관리를 실시하며, 재난 발생 시 이들 인력풀이 국제구호활동에 투입된다.

3개 기관이 독립적으로 인력풀을 관리하고, 각 기관에 배정된 인원을 내부절차와 선발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파견 시에는 각 파견기관이 사전에 정한 순서에 따라 인력풀 내에서 파견 인력을 신속히 선발하여 JDR 사무국이 통지한 집결시간에 맞추어 나리타 공항으로 집결한다. 파견 이후에는 원조대 대원이 복귀 후 개별적으로 건강 검진을 실시하면 비용을 지원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이하 PTSD)에 대한 검사 및 상담 지원도 외주 업체를 통하여 실시한다. 그러나 각 기관 간의 보유 역량의 차이로 인력 파견 기관은 대원의 역량 강화 훈련을 자체 예산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JDR 사무국은 연 2회 개최하는 합동 훈련을 통하여 편성 인력이 역할에 맞게 기능을 숙련하도록 한다.

의료팀은 주로 민간의료인력 중 소정의 연수를 이수한 인력풀에서 선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현재 국제보건기구(WHO)에서 정한 제1종(Type1) 긴급의료팀(Emergency Medical Team, 이하 EMT) 수준이나 궁극적인 개선 방향은 중형규모인 제2종(Type2) 수준으로 격상하는 것이다. 이로써 입원환자의 수술까지 역량을 강화하고 더 많은 의료진을 훈련시켜 재난현장에서 긴급의료팀 조정셀(EMT Coordination Cell)에 인력파견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전염병(예: 에볼라)에 대응할 수 있는 특수 의료팀을 조직하고자 계획 중에 있다. 민간 의료진을 자원봉사자로 활용하는 의료팀의 경우, 인도적 지원에 대한 개인적인 신념이 투철한 의료인력들이 참여하고 재정적인 보상은 별도로 없으나 체재비(숙박, 식비)를 JDR 사무국이 지불하는 방식이다. 사무국은 지난 10년간 EMT Type2를 준비해 왔으며, 국제사회의 EMT 담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가 원조대 대장을 역임하는데 평소 INSARAG 회의 및 훈련 등을 통해 국제구호활동에 대한 학습을 토대로 재난현장에서 국제기구와의 협력 등 JDRT의 활동에 대한 의사결정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현장과 본부 간의 의사소통은 3개 기관과 JICA 소속 인력이 각각 부단장을 맡아 기관 간의 의견을 조율한 후 보고 채널은 외교부 소속 대장을 통하여 외교부로 일원화하도록 매뉴얼 상에 규정하고 있다.

물류와 관련하여 JDR 사무국은 장비의 유지, 물류관리, 창고 운영 등의 물류 업무를 외주 계약으로 업체에 위탁한다. 장비는 약품 및 구조 장비의 조달업체와 계약을 맺어 정기적으로 유지 및 관리될 수 있도록 하며, 일본해외원조협회(Japan Overseas Cooperation Agency, 이하 JOCA)가 물류의 제반관리를 맡고 일본통운의 창고에 물품을 바코드 시스템을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보관중이다. 재난 발생 시, 사무국으로부터 파견 준비 요청을 받으면 지참할 기본물품 리스트를 전달받은 JOCA는 일본통운에 물품 불출을 지시하고, 공항까지 운송을 지시한다. 물품은 박스 단위로 포장되어 불출되며, 기적 가능한 사이즈에 맞게 파렛트로 포장한다. 원조대 장비의 구매는 전문가(구조-경찰청 파견 인력, 의료-JDR 의료팀 인력풀)의 조언(사양작업)을 토대로 JICA 조달 규정에 따라 입찰로 구매하고 의료 기자재 및 의약품 관리는 인력풀 내의 약사가 창고를 방문하여 약품을 관리한다. 약품 폐기와 관련하여 연 3회에 걸쳐 훈련을 실시하면서 물품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중요 필요물품을 먼저 항공 적재함으로 물류의 효율을 높이고 있다.

Ⅲ. 호주의 해외 인도적지원 및 긴급구호

1. 법적 체계 및 정책

호주는 해외 인도적 지원 또는 긴급구호 관련하여 별도의 법령을 제정하지 않고 정책문서를 통한 범정부 협의를 강조하는 체계를 구비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호주 외교통상부는 해외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위기 상황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민관전문가 파견이 가능하도록 별도의 법령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여 관련 법률을 제정하였다. 즉, 해외 인도적 지원 및 긴급구호 상황에서 타 정부 부처, 유관기관 및 연구기관, 시민사회 기관 등에서 적절한 전문 인력을 채용하고 이들을 해외로 파견하기 위해 법적 근거가 별도로 필요하다는 정책적 결정 하에 2011년 「구호전문가 파견에 관한 법률(Australia Civil Corps Act, 이하 ACC Act)」이 공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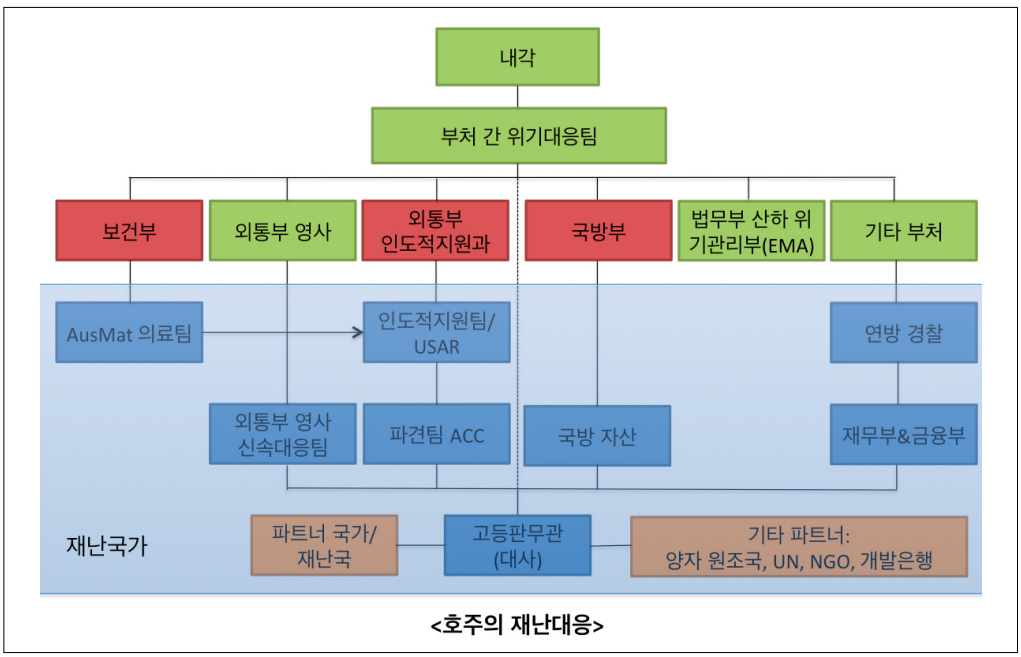
ACC Act는 해외 인도적 지원 및 긴급구호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유관전문가들이 한시적으로 호주 정부를 대표하는 공무원신분으로 파견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ACC Act에 의거 파견되는 전문가들은 현 소속과 무관하게 전원 호주 연방정부의 공무원의 신분으로 전환되며 이들의 활동은 호주정부 활동의 일환이 된다. 전문가 풀에는 연방정부, 주정부, 긴급구호 관련 유관기관 소속의 전 · 현직 공무원을 포함하여 각종 대학, 연구기관, 관련 전문기관 및 레드알(RedR)과 같은 민간단체에 소속된 전문가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ACC Act를 제외하고는 유관법률이 부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법령의 공백은 정책문서를 통해 범정부적 협의를 강조하는 것으로 보완하고 있다. 우선 범정부 차원에서 부처 간 기관 간 역할과 책무를 명확히 명시하고 이를 협의한 위기관리 프레임워크(Australian Government Crisis Management Framework, 이하 CMF), 호주정부의 해외지원 계획(Australian Government Overseas Assistance plan, 이하 AUSASSISTPLAN)을 중심으로 강력한 인도적지원의 정책 드라이브를 펴고 있다. 그리고 위의 위기관리 프레임워크 하에 외교통상부를 주축으로 부처 간 위기대응팀(Inter-departmental Emergency Task Force, 이하 IDETF)을 가동하고 있다. 또한 호주 외교통상부는 범정부 · 부처 · 원조기관 차원의 다양한 이행전략(Implementation Plan)을 수립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15년에 처음으로 개괄적인 인도적 지원 전략을 세운 한국과 달리, 인도적지원의 역사가 긴 호주의 경우 위기관리 프레임워크 하위의 다양한 콘텐츠의 전략을 수립하고 이행하고 있는 것이다. 인도적 지원 실행 전략(Humanitarian Action Policy), 재난경감 정책(DRR Policy: Investing in a Safer Future: A Disaster Risk Reduction Policy for the Australian aid program), 재난경감 프로그램에 있어 기후변화와 환경적 고려의 통합 활동 전략보고(Integration in Practice: Integrating disaster risk reduction, climate change and environmental considerations in AusAID programs DRR) 등 인도적 지원 전 분야의 분야별 우선순위와 실제 프로그램의 주요 방향성을 설명하는 전략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한국 정부도 2015년 인도적 지원 전략을 통해 분야별 세부 전 비교우위 분야를 아동, 여성, 난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인도적 지원 교육 역량 강화, 구호-재난-개발 연계, 재난경감(Disaster risk reduction, 이하 DRR) 분야를 강조하고 있지만 각각의 주제별 프로그램 전략 수립은 추가로 필요한 사항이다.

표제 연구가 진행된 2015년을 기준으로 호주정부는 모든 국내외 재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 오랜 시간동안의 협의를 거쳐 범정부적 조정(Whole-of-Government, 이하 WoG) 체계를 구축하였고 이와 같은 협조체계를 강조하는 것이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호주 연방정부와 관련한 주요 부처 및 유관기관은 이와 같은 WoG 체계를 기반으로 '호주정부 위기관리 프레임워크'를 준수하고 프레임워크의 프로토콜에 따라 위기 대응을 한다. 호주 정부는 프레임워크에서 합의된 바를 바탕으로 관련부처 및 유관기관 간에 적절한 협력이 필요한 해외 재난 시에는 부처 간 위기대응팀이 위기관리 메커니즘 하에서 작동한다. 반면, 호주의 인도적 지원 관련 평가 및 보고 체계를 살펴보면 해외긴급구호 관련 모니터링 및 보고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점도 제기되고 있다.

[그림 1] 해외재난 대응 범정부 조정체계(WoG) 구도



출처: CMF (2015)

2. 긴급구호대 운영

호주 연방정부는 위기의 성격과 규모, 재난이 호주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재난대응을 이끌 주무 부처를 배정할 권한이 있으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외재난 대응은 CMF 부속서 B. 6에 따라 외교통상부가 주무 부처로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해외재난 대응 시 외교통상부는 피해당사국의 재난지원 요청을 받아 지원을 위한 프로세스를 공식적으로 개시할 수 있다. 또한 재난지역의 정보 수집, 재정지원 등을 통해서 법무부 위기관리국(EMA), 보건부, 국방부 등 관련 부처가 해외 긴급구호대 파견 및 현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총괄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외교통상부의 역할과 책임에 있어서 2013년 토니 애벗 총리의 자유국민연립당(Coalition) 출범 후 외교와 ODA의 통합성 제고를 목적으로 호주 국제개발청(AusAID)이 통합되면서 외교통상부는 인도적 지원 및 해외 긴급구호 대응을 포함한 모든 대외정책을 담당하게 되었다. 그러나 외교통상부는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통합된 사무국을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 부처, 특히 재난대응을 위한 국내 프로세스에 조정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부 위기관리국과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이 효과적인 해외 재난대응에 있어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외교통상부는 피해당사국과

의 커뮤니케이션과 현지 대사관과 총영사관 및 외교통상부 소속의 위기대응팀(Crisis Response Team) 파견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재난현장의 정보를 신속하게 수집하여 재난대응 전략을 세우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재난대응 전략을 바탕으로 재난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 위기관리국과의 협력을 통해 지원 방식, 물류 수송 방식 등을 결정하고 각 부처 및 유관기관의 해외긴급구호대 파견에 필요한 재정 및 물류, 수송을 지원한다.

위기대응팀은 자국민 보호와 동시에 지원의 성격과 규모 등을 결정하기 위한 재난현장 정보 수집이라는 두 가지 서로 다른 목적을 위해 파견한다. 동 팀은 외교통상부 소속으로 파견되지만 본래 범정부 팀이기 때문에 물류, 조정 등 다른 역할을 각기 맡을 수 있도록 팀 구성원의 기술과 기능이 분화되어 있다. 파견 시 전반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훈련되는 것이 특징이다. 위기대응팀 규모는 풀(pool)에 등록된 사람이 약 100여 명으로 파견 시에는 등록된 사람 중 파견자를 선정하여 약 4~6명 정도의 소규모로 파견된다. 임무는 재난 현장에 파견되어 피해규모를 산정하고 향후 긴급구호 및 인도적 지원 활동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지 결정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다. 또한, 해외긴급구호대 파견 팀을 가지고 있는 관련 부처 및 유관 주정부 기관은 부처 및 기관 별로 임무 후 평가(after action review)를 의무적으로 진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관련 부처 및 기관에서 실시한 평가는 위기관리국을 거쳐 외교통상부에 전달되며 이들은 개별 부처 및 기관의 평가와 파견에 대한 범정부 조정체계에 대한 평가를 통합하여 전반적인 임무 후 평가를 실행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

호주의 경우, 연방제 국가이기 때문에 해외긴급구호의 조정과 실행이 이원화 되어있어 긴급구호대 운영 및 관리는 주로 주정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구조팀의 경우, 뉴사우스웨일즈와 퀸즈랜드 주정부의 소방국 대원들로 구성되고 의료팀은 보건부와 로얄다윈 병원 내 국립외상대응응급치료센터(National Critical Care and Trauma Response Centre, 이하 NCCTRC)를 거점으로 구성하나 재난피해지역과 재난상황을 전방위적으로 고려하여 의료팀을 파견한다. 이외에도 긴급구호에 있어 호주군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였고 인도적 지원에 있어서도 주요민간단체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 장비와 물류관리는 구조팀과 의료팀의 주축기관이 담당하고 있다.

뉴사우스웨일즈주 소방국의 탐색구조팀(AUS-2 USAR)은 주 정부의 소방 및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곧 해외 재난 파견 시 호주 정부의 대표성을 갖는 활동기반(fundamental)으로 귀결되므로 기초를 튼튼히 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구조팀은 INSARAG의 구호등급(IEC/IER) 등 동료검토 뿐만 아니라 타국의 소방 및 재난대응 역량에 대한 연구 및 의견 교환 등의 학습기회를 십분 활용하여 탐색구조팀에게 필요한 부분을 점진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적극 투자하고 있다. 예산의 규모, 시설 및 인력 등 주 정부 내에서 대응기관(Combat Agency)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으며, 특히 잉글번 훈련시설장은 실제 재난현장과

같은 정교함을 지니며, 통신 및 구조장비의 보관 시설, 파견인력의 모집 동선 등으로 볼 때, 운영의 효율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공간을 최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구조팀 인력은 소방국 이외에도 외교통상부, 위기관리국 뿐만 아니라 주의 유관기관들(경찰, 재난대응, 공공인프라 등)로 다양하게 편성되어 있으나, 상호 협약을 바탕으로 합의된 인식 하에(common understanding) 각자의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하되, 재난 상황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인력 및 장비를 배치한다.

뉴사우스웨일즈 의료팀(AusMAT)의 역할도 중요하다. 대규모 재난의 경우, NCCTRC를 거점으로 AusMAT을 구성하나 재난피해 지역과의 거리를 중심으로 호주 정부의 정책적 우선순위에 부합하는 재난 지역과 필요에 의거하여 의료팀을 파견한다. AusMAT 파견 결정의 근본 요인은 1) 재난지역으로부터의 공식적인 요청, 2) 지리적 근접성에 따른 외교통상부의 정무적 고려요소, 3) 주 정부의 보건 의료 역량 등이다. 그리고 다양한 역량을 보유한 의료팀을 전략적으로 파견하는데, 예를 들어 EMT Type2의 야전병원(field hospital)을 운영할 수 있는 NCCTRC와 함께 필요에 따라 뉴사우스웨일즈 등 주별 AusMAT의 Type 1도 활용하는 것이다. 주 정부 차원에서 AusMAT은 국내 및 해외 재난 파견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필요시 군과 함께 협진(Civil Military Medical Deployment)을 하는 등 재난현장에 따라 기능과 파견 형태를 다양화한다. 아울러 군수송기를 활용하여 의료진의 인력 및 의료장비를 수송하는 등 원활한 이동이 가능하다.

구조팀의 경우, 헤비(Heavy)[5] 등급에 부합하는 우수한 물류 역량은 자체 전담 인력(2명)의 창의적이고 지속적인 표준화(standardization) 노력에 기인하며 뛰어난 대비상태-장비의 포장, 내륙운송, 기적 등으로 인하여 '6시간 이내' 준비 완료가 가능하다. 또한 인력의 동원, 해제 계획을 비롯하여 현장지휘본부, AusMAT 의료캠프 설치 등에 대한 기본적인 구도(Layout Guidance)를 공유하고, 숙지해야 할 정보를 눈의 띄는 곳에 비치하여 누구든지 담당이 되면 할 수 있도록 한다. 의료팀의 물류는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는 NCCTRC가 의료진의 역량강화를 위한 훈련, 의약품 및 장비의 보관, 조달 등 실질적인 AusMAT 파견의 중심 역할을 담당한다.

5) INSARAG에서 정한 도시탐색구조(USAR)팀의 역량을 구분하는 3개 등급(Light-Medium-Heavy) 중 상위등급으로 55명 이상의 관리, 탐색, 구조, 의료, 물류담당 대원을 보유하고 동시에 24시간 동안 두 개의 재난지역에서 최대 10일 간의 활동이 가능한 기술적 역량을 갖춰야 한다 (INSARAG, 2012). 참고로 한국의 KDRT는 2011년 헤비등급을 취득했다.

Ⅲ. 스위스의 해외 인도적 지원 및 긴급구호

1. 법적 체계와 정책

스위스는 전쟁을 포함한 무력충돌과 위기, 자연재해 등 재난에 영향을 받는 이재민들에 대한 스위스 시민들의 책임감과 연대를 반영하는 강한 인도적 지원 전통을 가진 국가로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시작된 인도적 지원의 오랜 경험과 중립국이라는 특성을 바탕으로 국제 인도적 지원의 발전을 선도하고 있는 국가이다. 또한 해외긴급재난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과 더불어 보다 폭넓은 인도적 지원을 강조하여 재난의 예방과 대비에서 피해복구와 재건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총체적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인도적 지원 활동이 중장기적 차원의 개발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제개발과 인도적 지원에 오랜 전통을 가진 스위스는 연방 헌법에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스위스연방의 목표로 설정하였고 1976년「국제개발협력과 인도적 지원법(Federal Act on Development Cooperation and International Humanitarian Assistance)」을 제정하여 국제개발협력의 다양한 활동과 인도적 지원에 관련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왔다. 특히 동 법은 스위스에서의 인도적 지원이 국제개발협력의 다양한 활동 중 한 분야이기보다는 개발협력과 동등한 비중과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주요 골자는 국제개발협력과 인도적 지원의 목적, 원칙, 방식, 협력관계, 인도적 지원의 목표와 형태, 재정, 민간 활동 지원,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연방정부의 역할 등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이행에 관한 주요 의무를 스위스 연방평의회(Federal Council)에 위임하고 있다.

동 법의 제1장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일반 규정(general provisions)을 다룬다. 제2조는 국제개발협력 및 인도적 지원은 스위스와 다른 국제 공동체의 관계에서 연대성(solidarity)을 표현하는 것이며 전 세계 다양한 구성원들과의 상호의존적인 상황에 대응하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 또한 개발협력과 인도적 지원의 핵심적인 원칙으로써 협력대상국들의 권리와 이익, 상호 존중을 강조하고 해당 국가 국민들의 필요를 고려하여 이행되어야 할 것임을 명시한다. 제3조에 따르면 개발협력과 인도적 지원의 방식을 규정하는 데 개발협력과 인도적 지원은 일반적으로 양자나 다자 형태로 이루어지나 필요한 경우 스위스의 독자적 지원도 가능하다. 제4조는 스위스의 개발과 인도적 지원 활동을 위해 도입할 수 있는 협력구조를 설명하는데 가능한 한 협력대상국들의 노력 혹은 동일한 목적을 가진 국내외 자원과 긴밀하게 공조할 것을 언급하고 있다.

동 법의 제 3장 인도적 지원(Humanitarian Aid)에 속하는 제7조와 제8조에서는 범위, 목적,

형태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동 법 제7조에 따르면 인도적 지원이 요구되는 재난의 범위를 자연재해 뿐 아니라 무력충돌을 포함한 재난으로 인해 인간의 생명이 위협당할 때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인도적 지원이 재난의 예방, 구조 등 긴급 대응을 통해 생명을 구하고 고통을 경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을 재확인한다. 제8조에서는 인도적 지원의 일반적인 형태를 첫째, 물자지원, 둘째, 현금지원, 셋째, 전문가 및 구조대 파견으로 세분화하는 동시에 마지막으로 제7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타 모든 형태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며 필요시 여러 가지 형태의 지원을 동시에 결합하여 사용할 수 있음을 명시한다. 이어서 동 법 제9조 제1항은 개발협력 및 국제적인 인도적 지원에 대한 예산이 개방형 프로그램 방식으로 다년(several years)에 걸쳐 배분된다고 규정함으로써 스위스 연방정부가 4개년도 기준으로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동 법의 제3항은 연방평의회가 신규 프로그램을 위한 예산 배분을 의회에 제안할 때, 연방평의회에게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할 의무를 부과한다. 제11조 제1항은 연방평의회가 본 법에 명시된 목적을 준수하는 민간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스위스 비정부기구(NGOs)나 재난지역의 현지 NGOs들이 스위스개발협력청(Swiss Agency for Development and Cooperation, 이하 SDC)의 파트너로서 예산을 지원 받아 활동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민간과의 협력에 이어 동 법 제12조와 제13조는 각각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협력을 규정한다. 먼저 제13조는 연방평의회에 국제개발협력 및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 연방정부 내 조정의무를 위임하며 이를 위해 부처 간 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또한, 제12조는 스위스 연방평의회가 개발협력과 인도적 지원을 이행하는 주정부(Cantons)와 지방자치단체(Communes), 공공기관(public institution)과 협력하거나 그들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동 법령을 근거로 주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연방정부를 거치지 않고 직접 국제개발협력 및 인도적 지원 활동을 자체적으로 펼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예산을 연방정부가 지원할 수 있다.

따라서 스위스의 경우 국제개발협력과 인도적 지원을 같은 법률에서 다룸으로써 긴급재난구호를 비롯한 인도적 지원 활동이 국제개발협력 활동이 연계되어 이행될 수 있도록 법적 체계를 갖추고 있다.

스위스의 인도적 지원정책에 있어 궁극적인 목표를 첫째, 인명 구조와 고통의 경감, 둘째, 기초적 사회 서비스의 회복과 재난 피해지역의 역량 강화로 선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긴급재난지원, 재건과 회복, 재난위기 경감 등의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SHA, 2013). 특히 인명 구조와 고통의 경감 목적을 위해 첫째, 재난경감을 포함한 예방과 준비, 둘째, 재난 시 인명구조와 이재민들의 기초적 필요 충족, 셋째, 재건과 복구를 그 세부 목적으로 둔다. 또한 정책문

서는 이재민의 고통경감과 회복력을 기준으로 두고 우선전략 분야를 선정하고 있다. 재난 발생 시 긴급대응보다 재난 예방의 중요성에 주목하면서 인도적 지원활동과 개발협력 활동이 연계되는 통합적인 접근이 중시되었고 전문가 파견 등이 강조되고 있다.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 간 스위스의 인도적 지원 예산 규모는 전 세계 13위 규모이며 2009년 이후 인도적 지원 예산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대되어 2013년 당시에는 총 ODA 예산의 약 17.8%를 차지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16% 증가한 규모이다(GHD, 2003). 모든 인도적 활동에서 인도주의(Humanity), 중립성(neutrality), 공평성(impartiality), 독립성(independence) 등 4개의 핵심 인도주의 원칙과 모든 정치적 고려로부터의 자유 등의 원칙들을 고수하고 있다.

[표 1] 스위스의 주요 원조 정책과 인도적 지원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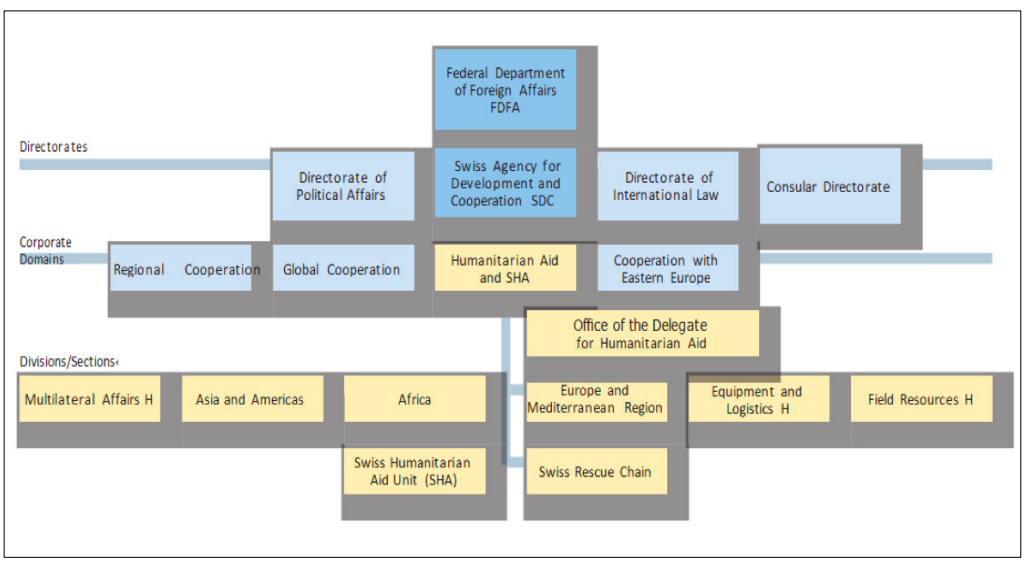
년도	주요 원조 정책	주요 인도적 지원 정책 및 전략
2002	–	(전략 분야) Switzerland position on the Post 2015 framework for disaster risk reduction
2005	Humanitarian Aid of the Swiss Confederation Strategy 2010	
2008	–	(기관 전략) SDC Guidelines on disaster risk reduction
2009	–	(기관 전략) SDC Cash for herders Asia Brief
2010	–	(전략분야) Reconstruction and rehabilitation concept
2011	Swiss Foreign Policy Strategy 2012–2015	(기관 전략) SDC Humanitarian Aid: Emergency Relief
	–	(전략분야) Effectiveness Reporter–DRR in International Cooperation
2012	–	(전략분야) Climate, Environment, and DRR Integration Guidance
	Message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2013–2016	(기관 정책문서) SDC Multilateral Humanitarian aid concept
		(기관 정책문서) SDC Portrait: The SDC– reliable, sustainable, innovative
2013	OECD DAC Peer Review Switzerland 2013	
	Swiss Humanitarian Aid	(전략분야) Swiss Working Paper on DRR in the post 2015 agenda
2014	–	(기관 평가) SDC–Evaluation completed lists 2013

출처: 문헌조사 및 관계기관 방문조사에 근거하여 저자가 재구성

2. 긴급구호대 운영

인도적 지원 정책 이행과 관련하여 SDC는 범정부적 차원에서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SDC는 특히, 해외긴급구호와 관련하여 연방평의회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아 구호대 파견 등을 포함하여 긴급구호활동과 관련한 전반적인 결정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고 또 결정사항을 이행할 수 있다. 구호대는 구조팀과 신속대응팀(Rapid Response Team)으로 구분되는데 구조팀은 8개의 민관군 기관의 전문 인력들이 참여하는 통합조직으로 구성되어 있고 구조팀의 활동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 현지 재난상황에 따라 모자보건 의료팀을 포함한 신속대응팀을 유연하게 운용함으로써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다. 장비 및 물류관리는 SDC의 인도지원국(Humanitarian Aid and Swiss Humanitarian Aid Unit, HA/SHA)에서 통합 관리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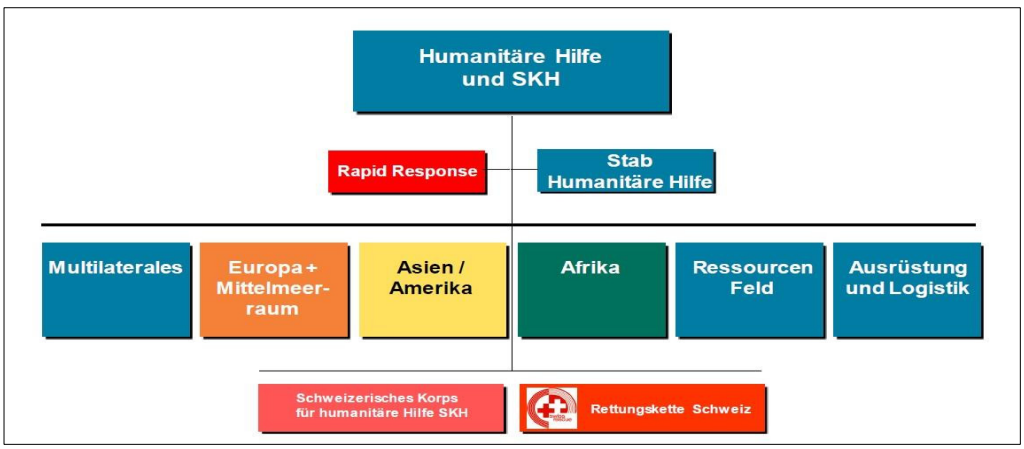
[그림 2] 인도적 지원 이행 체계 구조도



출처: SDC (2012) The SDC Multilateral Humanitarian Aid Concept

주목할 것은 구호대의 파견 및 운영에 관한 전권을 SDC의 부서장인 인도적 지원국장이 행사하면서 긴급구호의 신속성을 담보하고 있다. 이로써 현장의 다양한 수요와 변화에 긴밀한 대응이 가능하며 대응의 효과성을 증진하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 구호대의 형태도 현지 재난 상황에 부합하도록 다양한 형태와 모듈을 유지하여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다.

[그림 3] HA/SHA 조직도



출처: SDC (2015) Rapid Response

긴급대응 방식 중 구호대 파견이 항상 우선시 되지 않으며 비용의 효과성을 고려하여 전략적인 영역에서의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진다. 지리적인 이유로 구조팀 위주의 구호대 활동이 효과를 담보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대신 다양한 형태의 RRT를 파견하여 구호활동을 전개하거나 UN 등 협력기관에 전문가를 파견하여 대형 구호대 없이도 여러 개입방법을 선택함으로써 스위스의 인도적 지원 활동을 알리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RRT의 일환으로 모자보건 의료팀(Mother & Child)을 파견할 경우에도 피해당사국의 산부인과/소아과 수요가 있을 때에만 파견을 결정하여 지원의 중복을 방지한다. 또한 스위스 정부는 스위스 구조팀 및 RRT의 활동을 위하여 사전에 체계적 교육을 제공하여 유사시에 대비할 수 있는 역량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피해당사국의 재난대응역량강화를 위하여 스위스 구호대의 전문적 기술을 이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므로 재난대응의 현지화에 기여하고 있다.

주요물자와 비품의 물류관리의 경우 SDC 인도지원국에서 직영체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신속하고 효과적 대응을 위한 선제 조건 중 하나로 물류 분야에 충분한 인력과 자원을 확보하고 물류 전담 조직을 구비한 것이 특징이다. 소모품은 구호대 파견결정 즉시, 규모에 따라 HA/SHA 물류팀에서 10일간의 독자적 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물자를 사전에 계약이 체결된 업체에 주문서를 제출하면 해당업체는 업체의 물류창고에서 주문 완료된 물품을 준비하여 취리히 공항으로 7시간이내에 운송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 이처럼 자체물류관리와 더불어 다양한 유관 기관과 사전 협약 및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원활한 인력 및 장비, 구호물류수송이 가능하도록 구축되어 있다.

Ⅴ. 결론 및 제언

1. 법제

일본, 호주, 스위스의 해외긴급구호 및 인도적 지원 관련 법제를 조사한 결과 각 국별로 추구하는 인도적 지원 및 해외긴급구호의 목적과 정부조직체계가 서로 상이함에 따라, 법적 기반도 이러한 차이를 반영하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함의를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3국의 공통적 특징은 해외 인도적 지원 활동만을 별도로 법제화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국제인도법과 인권법, 난민법과 같은 관련 국제법이 이미 제정되어 여러 선진 공여국들이 이를 비준한 바 있고 대규모 재난피해자의 고통경감이라는 인류애에 근거한 인도적 지원은 전술한 국제법에 근거하거나 인도적 지원정책을 수립함으로써 수행이 가능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조사대상국의 법제화 유형은 기존 국제개발관련 법령에 인도적 지원을 동급 혹은 일부로 반영하거나 인도적 지원과 구호활동을 원활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스위스의 경우, 국제개발협력과 인도적 지원의 중요성을 동일하게 간주하여 국제개발 관련 법령에 해외 인도적 지원을 포함하여 법제화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또한 영국도 「국제개발법(International Development Act, 2002년 개정)」의 제1부 제3조에 인도적 지원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일본의 경우, 「JDR 법」을 제정하여 긴급구호활동에 있어 관계부처 간 협조절차 등을 규정하였고 호주는 해외 인도적 지원뿐만 아니라, 재난경감과 복구활동을 수행하는 민관 전문가들의 법적 지위와 제반 활동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한 바 있다.

셋째, 위와 같은 법제와 연계하여 각국들은 인도적 지원과 긴급구호활동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국제개발 혹은 인도적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특히 조사대상국 대부분은 주무부처(외교부)가 수립한 인도적 지원정책에 근거하여 제반 활동을 수행하고 변화하는 국제 인도적 지원환경과 맥락을 고려하고 자국의 외교정책을 반영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수정 및 개선시키는 양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현행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 및 시행령」의 개정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스위스나 영국과 같이 국제개발협력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인도적 지원 규범과 원칙에 부합하는 목적과 정의, 주요원칙을 명시하는 개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정책과 전략

정책과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일본, 호주, 스위스의 해외긴급구호 및 인도적 지원 관련 정책은 각 국별로 가지고 있는 정책과 인도적 지원을 주도하는 주무 부처 및 기관의 역할에 따라 다르게 발전되어 왔음을 확인하여 다음과 같은 함의를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국가별로 범정부 차원의 해외 인도적 지원 정책방향, 전략, 비전을 수립하고 주기적으로 혹은 필요시 재검점하고 있다. 국내외 위기관리 전략을 아우르는 호주의 범정부적 위기관리 프레임워크처럼 향후 우리 정부도 외교적으로 영향력 있고 효율적인 정책성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좀 더 명확한 정책의 방향과 실천 전략을 범정부 적으로 협의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의 조사대상국은 다양한 인도적 지원의 이행전략의 수립하고 주제별 세부 전략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다. 정책적 비전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호주 및 스위스에서 볼 수 있는 명확한 이행전략(Implementation Strategy)의 수립이 요구되며, 필요한 주무 부처와 이행 기관 차원에서 예산, 정책 대상 및 기준, 정책달성 목표, 달성 기간, 달성 지표, 관련 법령 · 체계 정비 및 인적 역량강화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이행전략을 수립하는 것도 필요하다. 특히, 호주의 강력한 정책과 협력 체계의 메카니즘 및 스위스의 다양한 인도적 지원 분야 프로그램 전략을 벤치마킹 할 수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정책 우선순위 대상에 따라 여성, 난민, 교육, 재난경감, 인도적 지원과 개발의 연계 등 각 분야에서의 정책 목표와 이행전략, 성과 평가 기준 등을 포함한 분야별 세부 전략이 수립된다면 보다 효과적인 인도적 지원과 긴급구호활동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긴급구호대의 평시 운영과 사전조사에 대한 내용이 주요 전략에 부각 될 필요가 있다. 우선, 평시운영과 관련 아국처럼 다수의 부처 및 유관 기관이 참여하는 해외긴급구호 운영체계 하에서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가능하게하기 위해서는 재난발생 대비, 파견대상자 훈련, 물류 준비, 현지정보 취합과 공유 등을 포함하는 평시 운영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KDRT 운영협의회 및 실무협의회가 조직된 것은 매우 고무적이며 두 협의체의 정례적인 회의와 논의를 통해 부처와 기관의 역할이 보다 구체화되고 사무국을 담당하는 KOICA 뿐만 아니라 참여기관 대원들의 전문성을 증대하기 위한 환경을 좀 더 적극적으로 구축해야 할 것이다. 사전조사는 스위스와 일본의 경우 외교부 및 긴급구호대의 사전조사에 대한 권한과 역할규정이 주목할 만하다. 왜냐하면 최근 인도적 위기의 성격과 지역적 정황에 따라 필요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사전조사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재난대응의 성과를 증진시키는 핵심적인 요소인 신속한 사전조사를 위해 민관합동해외긴급구호협의회가 주무 부처 및 KDRT 사무국에 사전조사의 명확한 권한과 책임의 정의를 관련 정책과 전략에 강조할 할 필

요가 있다.

넷째, 해외 인도적지원의 정책 및 전략을 세부적으로 조사한 결과, 인도적 지원 분야 평가, 모니터링 및 보고 체계 구축이 향후 가장 중요한 과제로 남을 것이다. 우리나라 인도적지원은 중장기 국제개발협력 사업 대비 인도적 지원 거버넌스 차원의 평가 체계, 기관 차원, 전략차원, 사업차원의 평가와 모니터링 체계가 미비한 상태이다. 해외긴급구호대책 수립 및 운영을 위한 권한과 국회에 대한 보고의 책임이 외교부장관에게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신속하고 효과적인 긴급구호대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평시대비, 평시 운영에 관한 내용과 유관부처의 관련 사항 이행을 주무부처가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인도주의 원칙인 GHD의 목표와 지표를 중심으로 인도적 지원의 효과성 제고 방안을 수립하여 전략차원과 사업차원의 평가와 보고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이를 위한 해외 동향과 평가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가 향후 중요한 인도적지원의 정책 과제로 부상될 것이다.

3. 긴급구호대 운영체계

KDRT의 운영측면에서는 한국의 인도적 지원과 해외긴급구호가 국제개발협력의 진화 및 발전과 맥을 같이하고 있지만, 대체로 재난대응이 중심이 되다 보니 KDRT를 포함한 인도적 지원 운영체계의 양적·질적 개선이 필요하다. 이러한 개선과제는 2008년 OECD/DAC의 특별검토나 2012년 실시된 동료검토에서도 권고된 바 있는데 한국의 경우 전략적으로 선정된 인도적 지원의 형태와 유형에 대한 사전 준비와 대응을 하는 운영체계를 갖기 위해서는 상위의 정책이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그 한 예로 재난취약국을 대상으로 국가협력전략 수립 시 재난경감을 포함시키는 것이다. 더불어 스위스와 같이 자국 구호대 파견에 대한 실익을 전략적으로 판단하며 재난취약국이나 그 주변국 중 동원가능한 정부구호대가 있을 경우, 이들에 대한 장기적인 역량강화 지원을 통해 KDRT 파견이 현실상 용이하지 않을 것에 대비하여 현지차원의 대응역량을 증진시키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다양한 민간섹터와의 협력체계 구성 또한 현재 정책과 운영체계 부분에서 심도 있게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다. 스위스는 정부구호대 자체에 민간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 협력체계에 관해 많은 시사점을 준다. 호주정부도 현재 정부구호대와 민간단체 간 협력체계가 없지만, 의료팀의 경우 민간단체가 기초보건유닛(Primary Health Unit)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 등 역량을 갖출 경우, 협진이나 환자이송과 같은 협업을 전향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3국의 조사를 통해 얻은 중요한 시사점은 해외긴급구호대책을 통해 마련된 관리체

계를 조직화, 상설화하는 동시에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여 평시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구호대 전문 인력풀을 늘리고 확보된 인력의 역량을 체계적으로 확충하며 각종 물자와 장비도 구호대의 역량에 부합하도록 구비하고 있다. 우리 외교부와 KOICA도 해외 타 부처와 해외긴급구호 전담 기관과 같이 각각 주무부처와 실행기관으로서 UNDAC 구성원 수준의 현지조사 및 대응역량을 개발하여 재난발생 시 KDRT를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역량이 구비되어야 할 것이다.

KDRT는 2010년의 조직된 짧은 역사 속에서도 피해당사국에 대한 현금과 물자공여와 더불어 한국정부의 인도적 지원의 한 축으로써 생명구호와 긴급의료서비스 지원을 통해 재난피해자들의 고통을 경감시키는 인도주의정신 실천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왔다. 특히 국내재난현장에서의 축적된 구호능력을 기반을 토대로 1997년부터 해외재난현장에 파견되어 해외구호의 경험을 쌓은 결과, 2011년 11월에 INSARAG 헤비 등급을 획득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한편,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 예산에서 인도적 지원 비율이 1~2% 수준에 그치고 있다. 선진 공여국들이 평균적으로 6%를 배분하고 적극적으로 인도적지원에 대한 전략과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있는 점을 감안 할 때, 우리나라 긴급구호대의 안정적 관리와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비율의 확대를 포함한 인도적지원의 예산 확대 그리고 동 수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과 이행과 평가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더욱 중요한 정책 과제로 부각되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목적에서도 명시했듯이 조사대상국의 해외긴급구호 및 인도적 지원 관련 법·정책·전략을 조사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는데 이와 더불어 다음과 같이 후속연구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해외 인도적 지원과 긴급구호 분야에 있어 조사대상국의 범위를 좀 더 확대하는 보완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범위가 방대하면서도 대상의 층위가 상이함으로 인해 심도 있는 연구를 수행하는데 다소 한계가 있었다. 이에 영미권과 유럽권 공여국들에 대한 추가조사가 이뤄진다면 법제와 정책, 구호대 운영과 관련한 전반적인 추세를 포착할 수 있고 각 부문 별 유형화가 가능하며 한국의 인도적 지원과 긴급구호에 있어 전략적으로 강화해야 할 부문을 보다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센다이 프레임워크에서도 강조한 바 있는 지역 재난경감 및 대응협력체계 구축과 관련 동북아 재난경감 및 대응에 관한 협력 프레임워크 연구를 통해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탐색구조대와 의료팀의 전문화 및 역량강화와 관련, 본 연구의 결과와 자료를 토대로 각 분야별로 심층적인 보완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인도적 지원 거버넌스 차원의 평가 체계, 기관 차원, 전략차원, 사업차원의 평가와 모니터링 체계가 구축을 위한 준비가 시급하다. 특히,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인도주의 원칙인 GHD의 목표와 지표를 중심으로 인도적 지원의 효과성 제고 방안을 수립하여 전략차원과 사업차원의 평가와 보고 체계를 구축위한 조사 연구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다섯째 호주와 스위스 공히 민간 전문가를 최대한 활용하고 민간단체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양태를 보이는 만큼 긴급구호 혹은 포괄적인 인도적 지원에 있어 민간인력 활용 및 민관 협력 프레임워크에 대한 연구도 중장기적으로 유효할 것이다.

〈참고문헌〉

관계부처 합동. 2010.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 서울: 국제개발협력위원회

_____. 2015.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서울: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기획재정부 · 외교부. 2010.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박명지. 2011. “한국 무상 ODA의 파트너십 제고 방안 연구: 정부 · 공공기관의 협력 체계 구축을 중심으로”.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외교부. 2015. “인도적 지원 전략”. 서울: 외교부

외교부·한국국제협력단. 2015. “해외긴급구호 대책안”

이명근 · 홍문숙 · 김현정 · 문기홍 · 여국회 · 신보경. 2012. “인도적 지원정책 및 사업 연구: 긴급구호 시스템을 중심으로”.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이영현 · 김주자 · 권구순 · 장은하 · 이경신. 2013. “인도적 지원 분야 역량강화를 위한 중장기 교육 및 훈련방안 연구”.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홍문숙 · 이태주 · 김형식 · 유성상 · 오수현. 2013. “타 해외 원조기관 정책 수립 및 사업 수행체계 연구”.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홍문숙 · 오수현 · 정성훈 · 신선연. 2014. “ODA와 아동: 국내외 원조기관 아동 정책 비교 연구”. 서울: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AHPPC. 2012. "National AusMAT Manuel Preparedness, deployment and post-deployment activities of Australian Medical Assistance Teams (AUSMAT)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AusAid. 2009. "Investing in a Safer Future: A Disaster Risk Reduction Policy for the Australian aid program". Canberra: AusAid

_____. 2010. "Integration in Practice: Integrating disaster risk reduction. climate change and environmental considerations in AusAID programs". Canberra: AusAid

_____. 2011a. "Humanitarian Action Policy". Canberra: AusAid

_____. 2011b. "An Effective Aid Program for Australia. Making a real difference- delivering real results". Canberra: AusAid

_____. 2012a. "2011 Humanitarian Action Policy Implementation Plan". Canberra: AusAid

_____. 2012b. "Progress Report for the DRR Policy". Canberra: AusAid

_____. 2012c. "Transparency Charter, Australian Aid Program". Canberra: AusAid

Australian CivMil Centre(ACMC) and ACFID. 2012. "Same Space -Different Mandates: A civil military guide to Australian stakeholders in international disaster and conflict response"

Galloway, C. 2013. "Municipal emergency response officers and local priorities in Australian emergency communication". *Australian Journal of Emergency Management* 28(3), pp.24-28

Government of Australia(GoA). 1998. "Australian Government Overseas Disaster Assistance Plan (AUSASSISTPLAN): Direction of the Director General Emergency Management Australia as Managing Agent for Disaster Assistance for the Australian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anberra: Government of Australia(GoA)

_____. 2009. "Strategic Partnership Agreement between the Department of Defence and the Australian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anberra: Government of Australia(GoA)

_____. 2010. "Australian Government Crisis Management Framework". Canberra: Government of Australia(GoA)

_____. 2015. "Australian Government Overseas Assistance Plan". Canberra: Government of Australia(GoA)

Government of Japan. 'Japan's ODA Charter(2003)'

_____. 2005. "Initiative for Disaster Risk Reduction through ODA". Tokyo: Government of Japan

_____. 2014. "Overview of Japan's ODA White Paper 2013: Development Cooperation as Investment in the Future". Tokyo: Government of Japan

_____. 2015. "Cabinet Decision on the Development Cooperation Charter". Tokyo: Government of Japan

Government of Japan, MoFA. 2011. "Humanitarian Aid Policy of Japan". Tokyo: Ministry of Foriegn Affiars of Japan(MoFA)

_____. 2011. "Outline of Humanitarian Aid Policy". Tokyo: Government of Japan. MoFA

_____. 2014. "Evaluation of Humanitarian Assistance in Case of Emergency". Tokyo: Government of Japan. MoFA

_____. 2015. "Priority Policy for Development Cooperation FY 2015". Tokyo: Government of Japan. MoFA

GHD. 2003. "The Principles and Good Practice of Humanitarian Donorship, Declaration made in Stockholm"

NCCTRC. 2011. "AusMAT Handbook 2011". Darwin: NCCTRC

OECD. 2011.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Peer Review Australia (2013) The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Enabling effective development". Paris: OECD

Swiss Confederation. 2012. "Message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2013-2016: Key point in brief". Bern: Swiss Confederation

Swiss Agency for Development and Cooperation. 2011. "SDC Humanitarian Aid: Emergency Relief. Evaluation". Bern: Swiss Agency for Development and Cooperation(SDC)

_____. 2012a. "SDC Multilateral Humanitarian Aid Concept". Bern: Swiss Agency for Development and Cooperation(SDC)

_____. 2012b. SDC Portrait: The SDC- reliable, sustainable, innovative.

_____. 2013. "Swiss Humanitarian Aid: Saving Lives, Alleviating Suffering". Bern: Swiss Agency for Development and Cooperation(SDC)

UNOCHA. 2015. "INSARAG Guidelines Volume II: Preparedness and Response Manual C: INSARAG External Classification and Reclassification". New York: UNOCHA

Vonderen, J., & Bligh, A. 2009. "Emergency Aid: The largest overseas emergency response ever mounted by Queensland has begun. Stateline QLD (ABC1 Brisbane)"

WHO. 2013. "Classification and Minimum Standards for Foreign Medical Team in Sudden Onset Disasters". Geneva: WHO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국제개발협력 : 유니레버의 공유가치 창출 활동사례를 중심으로

이효정 (KOICA 농어촌개발팀 과장)

목차

Ⅰ. 서론
Ⅱ.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국제개발협력
Ⅲ. 유니레버의 공유가치창출 사업 사례
Ⅳ. 결론 및 도전과제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배경

2015년 9월 UN총회에서 채택된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에서는 빈곤 극복과 환경 보전 등 인류의 미래를 위한 공동의 대응을 위해 17개의 목표를 설정하였다. 또한 개발협력분야에서 민간재원의 동원에 관한 논의는 2002년 몬테레이, 2008년 도하, 2015년 아디스아바바에서 각각 열린 제 1~3차 개발재원 총회를 통해 꾸준히 있어왔다. 특히 아디스아바바행동계획(Addis Ababa Action Agenda, AAAA)에서는 '지속가능한 개발 문제 해결과 그 과정에서 다양한 파트너의 참여를 위해 비즈니스 분야의 창조와 혁신을 수용하자'는 의제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이를 통해 SDGs가 목표로 하는 포용적(inclusive) 경제·사회·환경발전을 위한 기업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맥락 하에, 본 고에서는 기업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지속가능한 경제적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2. 사례분석 대상

세계적인 NGO인 OXFAM[1]은 2013년부터 「Oxfam's Behind the Brand」 프로젝트를 통해 글로벌 식품회사 10개사(Associated British Foods (ABF), Coca-Cola, Danone, General Mills, Kellogg, Mars, Mondelēz International, Nestlé, PepsiCo, Unilever)를 대상으로 7대 분야(기후변화, 물, 여성, 노동, 소농, 토지, 투명성)에서 기업별 활동 순위를 측정, 발표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동 평가(프로젝트)에서 2016년 1위[2] 를 차지한 다국적 식품회사인 유니레버의 사례를 통해 민간기업이 기업 고유 비즈니스 활동의 확장적 개념에서 개발도상국의 개발협력에 참여하고 있는 현황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민간기업의 활동이 어떻게 새로운 시장의 공유가치를 만들어냈으며, 또한 수원국 정부와 지역주민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이것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전략은 무엇인지 파악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민관협력 사업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국제개발협력

1. 국제개발협력분야 기업(비즈니스) 참여 의의

영국국제개발처(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DFID)는 "소득이 증가하는 것이 빈곤 극복의 원동력이며, 비즈니스에 대한 투자는 소득증대와 부의 창출에 있어 핵심 요인"이라고 하였으며(DFID, 2014), 세계은행(World Bank) 역시 "민간기업은 개발 분야의 중심에 있다"고 하였다(World Bank, 2005).

기업의 크기와 상관없이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관점에서 포용적(inclusive) 발전을 목표로 하는 SDGs에서는 특히 8번(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 9번(회복가능한 인프라 건설,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및 혁신 촉진), 12번(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양식의 보장)과 연관이 있다(오수현, 2015). 일부 기업은 보다 적극적으로 SDGs 논의에 참여하고 있으며, 기존의 인도주의적 차원의 단순 기부에서 벗어나 보다 지속적인 기업의 핵심 가치(비즈니스) 창출의 개념에서 참여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

1) OXFAM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기관 웹사이트를 참조(www.oxfam.org).

2) OXFAM의 Behind the Brand(2016년) 유니레버는 2016년 74%로 1위, 그 뒤를 네슬레가 69%로 따르고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https://www.oxfam.org/en/research/behind-brands 를 참조.

국제사회에서는 SDGs 목표달성을 위해 정부, 시민사회, 기업 등 다양한 영역의 글로벌 파트너십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논의 중이다. 기업이 SDGs 논의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기업은 비즈니스 생태계의 확장 차원에서 장기적 성공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기업에 대한 명성(평판), 시장의 포지셔닝 전략 및 안전망 구축, 고용인·소비자·이해관계자와의 신뢰관계 형성, 기술·상품 및 서비스·혁신적 비즈니스 등을 통한 신규 시장 확장 등의 장점을 키워나가게 된다. 또한 전통적인 개발협력 파트너의 관점에서는 개발도상국의 비즈니스가 확대됨에 따라 일자리 창출, 경제 성장에 기여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아래 〈표 1〉은 이를 위한 분야별 민관협력 협의체의 현황이다. 국제사회는 이와 같은 협의체를 통해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형성하여 협력을 모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논의에 본격적으로 참여하여 국제적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본 고에서는 이중 농업분야 아시아지역의 민관협력 협의체인 Grow Asia를 소개하고자 한다.

〈표 1〉 분야별 민관협력 협의체

분야	협의체
농업	• New Vision for Agriculture (Grow Africa and Grow Asia) • Sustainable Agriculture Initiative
교육	• Global Partnership for Education • Global Business Coalition for Education
보건	• Gavi, The Vaccine Alliance • The Global Fund to Fight AIDS, Tuberculosis and Malaria • Scaling Up Nutrition Business Network • Every Woman, Every Child
거버넌스	• Extractive Industries Transparency Initiative • Transparency International Integrity Pacts
인프라	• Sustainable Energy for All • Sustainable Development Investment Partnership (launched at the Thir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Financing for Development in Addis Ababa)
기후변화	• “We Mean Business” Coalition • Global Investor Coalition on Climate Change

출처: Zahid Torres-Rahman 외 (2015)

1) Grow Asia 개요 및 참여 의의

ASEAN 국가들의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농업 및 농촌개발을 목표로 하여, World Economic Forum와 ASEAN 주도하에 싱가폴에 설립된 다자간 파트너십으로 2015년 4월 자카르타에서 발족되었다. GROW ASIA 사무국은 각 국가별 농업관련 부처 및 민간기업, NGO간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으로 역할을 하며, 사업발굴 및 모니터링과 평가(Monitoring & Evaluation)과 같은 업무

를 수행한다. 호주와 캐나다 외교부의 재정지원(총 950만불)으로 운영되며, 이러한 협의체에 참여하므로써, 우리나라의 농업 및 농촌개발 분야 사업, 특히 농업가치사슬 확대 전략의 이행과 성과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2) Grow Asia의 사업추진 방향

Grow Asia는 민간부문의 투자와 협력을 가장 큰 목표로 한다. 통합적 비즈니스 가치창출(Inclusive business value creation)을 목표로 ASEAN 국가의 관련 부처(주로 농업 관련 부처 및 공공기관)를 주요 파트너로 하여, 네슬레, 유니레버 등의 민간기업의 투자 및 지속가능한 개발 참여에 플랫폼으로서 역할 강조한다. 성과관리 측면에서, 취약층인 소농(small farmers)을 국가별로 목표치를 구체화하여 설정하였는데, 2020년까지 ASEAN지역의 소농 1천만명 대상으로 생산성 증진 및 환경적 지속가능성 20% 제고를 목표로 한다 (국별 목표치와 세부 사업은 붙임을 참조).

2.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공유가치 창출

2000년대 초반 글로벌 경제위기를 계기로 기존 자본주의 문제를 극복하고 기업의 지속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기업 경영 패러다임이 필요한 상황하에 '자본주의 4.0', '공생발전', '상생협력' 등의 새로운 경영 이슈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환경, 기후변화, 교육, 자연재해 등 다양한 사회적, 환경적 도전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기업의 보다 적극적인 사회적 역할에 대한 기대가 증가하고 있다.

세계기업위원회(World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001)에 따르면, 기업의 사회적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이하 CSR)이란 '기업이 윤리적 행동과 경제 발전에 대한 공헌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피고용인, 지역사회, 나아가 사회 전체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일이다'라고 정의하였다. 공유가치창출(Creating Shared Value)은 M. Porter교수가 2011년 Harvard Business Review에 '자본주의를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How to Fix Capitalism)'라는 논문을 발표하면서 주창한 개념으로, 기업이 수익창출 이후에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활동 자체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면서 동시에 경제적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Connections between societal and economic progress*"). 경제 · 사회적 여건을 개선시키면서 동시에 사업의 핵심 경쟁력을 강화하는 일련의 기업정책 및 경영활동으로, 기업의 경쟁력과 주변 공동체의 번영이 상호 의존적이라는 인식에 기반한다.

그렇다면, CSR과 CSV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CSV는 처음부터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는 방법을 고민하지만, CSR은 기업이 이미 만들어 낸 이익의 일부를 좋은 일에 쓰는 방식이다. CSR은 비용으로 인식되는 반면, CSV는 사회·경제적 효용을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회로 인식되고 있으며, CSR을 위한 예산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활동이 제한적이나, CSV를 위해서는 기업 전략을 재창조해야 하므로 기업 전체의 조직과 예산이 투입되는 특징이 있다.

〈표 2〉 CSR과 CSV의 비교

항목	CSR	CSV
가치	선행(Doing good)	투입비용대비 높은 사회경제적 가치
인식	평판관리 기업의 수익 추구와는 무관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요소 기업의 자원과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사회적, 경제적 가치 모두 추구
활동	시민의식, 자선활동	기업과 공동체 모두를 위한 가치창출
예산	기업의 CSR 예산에 한정	기업 전체 예산에 CSV 개념 반영
한계	CSR 예산 규모에 따라 활동 폭이 제한	CSV 활동에 대한 낮은 인식 수준
사례	공정구매(Fair trade purchasing)	조달시스템 자체를 혁신해 품질을 개선하고 생산량을 증대

출처: Porter, M. and M. R. Kramer (2011)

가난한 농부가 재배한 농작물에 제값을 쳐주는 공정무역은 CSR 관점에서 빈곤을 해결하는 선행이지만, 이는 현재의 파이를 재분배하는 것에 그친다는 한계가 있다고 M. Porter교수는 설명한다. 반면 CSV는 농법을 개선하고 농부를 위한 지역 협력과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방법으로 접근하여, 농부들이 더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작물을 재배해 수확량과 품질을 개선하도록 돕는 방식이다. 기업이 추구하는 근원적인 가치(이윤 추구)를 제품을 생산하는(혹은 원재료를 생산하는) 지역커뮤니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돕는 기업경영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는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인 유니레버의 공급사슬(Supply Chain) 전략이다. 대표적 차(tea) 브랜드인 Lipton과 Knorr 등 의 전체 공급량, 전략적 중요성, 소비자 관심 등의 기준에 따라 주요 10개 원재료(raw material)를 선정하여 이를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Unilever's Sustainable Agriculture Code”를 통해 전 공급망에 걸친 친환경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운영 중인데, 이와 관련한 내용은 다음 절에 소개한다.

Ⅲ. 유니레버의 공유가치창출 사업 사례

1. 사례 기업(유니레버)의 소개

본격적인 사례연구에 앞서 유니레버의 활동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우선 기업에 대한 대략적인 소개를 한다. 1930년 네덜란드의 Margarine Unie와 영국의 Lever Brothers의 합병으로 탄생한 유니레버는 본사를 영국 런던과 네덜란드 로테르담 두 곳에 두고 있다. 전세계 190여개국에서 매일 20억명이 이용하는 13개의 대표적인 소비재 브랜드를 가진 기업으로, 2015년 533억 유로의 매출을 올렸으며, 전세계 169,000명을 고용하고 있다(Unilever, 2016). 다우존스 지속가능지수(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에서 항상 상위권을 차지하는 기업으로, 기업의 경영활동 과정에서 생겨나는 환경적 영향(footprint)을 줄이고, 사회적 영향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증대시키는 것을 비전으로 한다.

전사적 경영목표를 '첫째, 2020년까지 건강 및 웰빙을 향상시킨다. 둘째,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생산된 농산물 원자재만 구매한다. 셋째, 자사의 가치 사슬에 있는 모든 이의 생활수준을 향상한다.'로 하여(〈그림 1〉 참조), 생산단계(원재료 조달)부터 소비단계(소비자가 가정에서 유니레버 제품을 사용하는 단계)까지 전체 가치 사슬에서 사회적, 환경적 및 경제적 성과 관련 목표를 이루기 위한 세부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성과를 매년 경영보고서에 보고하고 있으며, 이는 아래 절에서 보다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2. 유니레버의 친환경생활계획 전략과 목표 분석

1) 유니레버의 친환경생활계획

2010년 이후 유니레버의 전사적 목표로 설정된 친환경생활계획(Unilever Sustainable Living Plan, USLP)은 2020년까지 10억명의 건강과 웰빙 증진, 자사 제품의 환경적 영향 절반이하 감소, 모든 가치사슬 단계에서 관련된 소비자의 생계 증진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그림 1〉 참조).

〈그림 1〉 유니레버의 친환경생활계획



출처: Unilever (2016)

① 건강 및 웰빙 증진

- 목표: 2020년까지 10억 이상의 인구가 개인 위생 습관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돕고 5억 인구에게 안전한 식수 제공. 이를 통해 설사와 같이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을 줄일 수 있음
- 성과지표: 손씻기를 통해 설사 및 호흡기 질환 예방, 구강 케어 증진, 직장 내 부상 및 사고 예방, 안전한 식수 제공, 자긍심(self-esteem) 향상

② 영양

- 목표: 2020년까지 세계 표준 식습관 가이드에 기반한 가장 엄격한 영양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의 비율을 두 배로 늘려 수백만 소비자에게 더욱 건강한 식품 제공
- 성과지표: 소금 함유량 축소, 포화 지방 함유량 축소,필수 지방산 보완, 트랜스 지방 제거, 칼로리 감량, 직원 건강 및 영양 개선, 설탕 함유량 축소, 건강한 식사 정보 제공, 심장 건강 증진

③ 온실가스

- 목표: 2020년까지 라이프사이클 전반에 걸친 유니레버 제품의 온실 가스 효과를 절반으로 축소
- 성과지표: 세탁 시 온실 가스 배출량 감소(농축, 재배합, 소비자 행동), 제조 시 GHG 배출량 감소(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CO2 배출, 재생 가능한 에너지, 신규 공장, 냉동 시 GHG 배출량 감소, 직원 출장 줄이기, 운송 시 GHG 배출량 감소, 사무실에서 에너지 소비 줄이기)

④ 물

- 목표: 2020년까지 유니레버 제품의 사용으로 인한 물 사용량을 절반으로 줄임
- 성과지표: 세탁 시 물 사용량 줄이기(헹굼이 용이한 제품, 물 사용량을 줄인 제품), 머리 감기 및 세안 시 물 사용량 줄이기, 농업용수 사용 줄이기, 제조 시 물 사용량 줄이기(취수량 줄이기, 신규 공장)

⑤ 폐기물

- 목표: 2020년까지 제품 처리 시 발생하는 폐기물을 절반으로 줄임
- 성과지표: 포장재 줄이기, 포장재 재활용(재활용률 및 회수율 향상, 재활용 소재의 사용 확대, 포장재 재사용, 일회용 포장재 폐기물 처리), 제조 시 폐기물 줄이기(총 쓰레기량 줄이기, 고체폐기물 매립률 0%, 신규 공장), PVC 퇴출, 사무실 쓰레기 줄이기(재활용, 재사용, 복구, 종이 소비량 줄이기, 제조 공정에서 종이 퇴출)

⑥ 지속가능한 방식의 원자재 조달

- 목표: 2010년까지 10%, 2012년까지 30%, 2015년까지 50%, 2020년까지 100%의 농산물 원자재를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조달
- 성과지표: 팜유, 종이 판지,설탕, 대두 및 대두유, 방사란, 유제품, 유채씨유, 해바라기유, 차, 카카오, 과일, 채소, 사무용품의 지속가능한 조달 확대, 조달 확대, 공정 무역 확대의 공정 무역

⑦ 생활개선

- 목표: 2020년까지 공급망 내에서 50만 명 이상의 소농과 75,000곳의 소규모 유통업체와 협력
- 성과지표: 소농지원, 소규모 유통업체 지원

2) 지속가능한 방식의 원자재 조달에 대한 유니레버의 접근 개념

본 고에서 소개하고자 하는 농촌개발사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유니레버의 원자재 조달과 관련한 경영 목표에 대해 자세히 소개한다. 유니레버는 자사에서 생산하는 제품 원재료의 절반을 농장 및 산림에서 조달받고 있으며 원재료의 공급자 및 공급자와의 협력 방식에 대한 결정이 전 세계 자원, 기후 변화 및 농업자의 생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장기적 관점에

서 안정적 공급채널 확보, 비용 절감, 자원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어 팜유(Palm oil) 공급처 추적을 통해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원자재를 확보와 산림 벌채, 토지 사용과 사회 및 지역 사회 문제에 대한 책임감 있는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총 농산물 원재료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는 상위 10가지 농산물(팜유, 종이 판지, 대두, 설탕, 차, 과일 및 채소, 해바라기유, 유채씨유, 낙농 재료 및 카카오)을 포함하여 통합적 관리를 위해 15년간의 연구결과 'Unilever Sustainable Agriculture Code'를 만들었으며, 전사에 걸쳐 2010년 이후 적용하고 있다. 이것은 자체 평가 또는 외부 인증 표준을 통해 이 코드를 준수해야 함을 의미한다.

단순한 원재료 조달 뿐만 아니라 고용, 기술역량 강화, 공급망 확대 등을 통해 자사의 가치사슬에 있는 다양한 커뮤니티의 경제여건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에서는 특히 수백만의 소농, 유통업자 및 소매업자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 전체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개도국 대부분의 소농은 2헥타르 미만의 경작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며, 일반적으로 이들은 최신 경작법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수익을 늘리지 못하고 있다. 소농이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더 나은 품종과 비료를 사용할 수 있다면 더욱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장기적 관점에서 유니레버의 기업활동에도 이득이 되는 상황으로 연결되어 진다. 개도국의 국가 발전에 따라 유니레버에서는 소농이 재배한 농작물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될 것이며, 소농의 경제여건이 개선되어 수익이 늘어나면 투자할 여력이 생기고, 자사의 식품 제품에 필요한 원재료 공급량을 훨씬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원자재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다. 이를 위해 교육 대상 소농의 수를 늘리고 투자를 확충해왔으나, 자사의 개입으로 인해 소농의 삶이 얼마만큼 개선되었는지를 입증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표 3〉은 유니레버가 다년간의 실험을 통해 도출한 농업분야 지속가능성 항목에 대한 평가 지표이다. 이 결과를 자사의 지속가능 경영지표에 활용하고 매년 성과를 발표하고 있다.

〈표 3〉 유니레버의 농산물 원재료 평가측정 분야와 지표

분야 구분	측정 지표
토양 비옥도 및 건전성	토양 중 유기물질 함유율, 유익한 유기체(㎡당 지렁이 개체수 등)의 수, 포식자수
토양 손실	토양 피복율, 토양침식도
영양 조성	무기질소/인/칼륨 시비량(ha당, 생산량당), 질소고정량
병해충관리	통합적병해충관리방식(Integrated Pest Management, IPM)에 의한 작물재배 비율, 살충제 사용량
생물다양성	생물다양성 비율(재배지역 단위면적당 새, 곤충 종(species)등 의 숫자))
가치사슬	단위면적당 생산가치, 농장 수익, 품질(영양 조성, 살충제 잔류량 등), 토양 유실 비율, 재무적 위험관리, 재화 및 서비스 기회창출
에너지	투입/산출 에너지 비율, 재생에너지 이용 비율, 온실가스 배출 비율
물	단위 면적당 물 사용량(관개 등), 지표수/지하수 사용량/NPK비율
사회적·인적 자본	사업지역 커뮤니티 조직의 지속가능한 성과에 대한 사업인지도, 연계성, 제도, 혁신)
지역 경제	지역 재투자율, 지역에서 조달된 재화/서비스 비율, 지역주민 고용률
동물 복지	수의 관리, 급수, 사료영양, 사육시설

출처: Pretty, J. et al (2008)

3. The Farmer Field School Project 사례

1) 사업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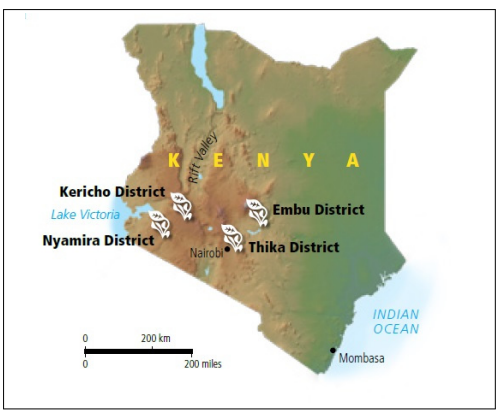
본 장에서는 케냐 차 재배 소농 지원을 위해 2006년 영국 국제개발처(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케냐 차 발전위원회(the Kenya Tea Development Agency)와 유니레버(립톤)[3]가 공동 시행한 The Farmer Field School Project(이하 FFS)를 소개한다. 차는 물 다음으로 많이 마시는 비알콜 음료로, 립톤은 세계 제1의 차 브랜드이다. 전세계 홍차의 10%를 구매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원재료 조달 방법을 선도하고 있어, 개발도상국 농업 및 농촌지역개발을 위한 개발협력 프로젝트의 사례로 의미가 있다.

2006년 3월 시작된 FFS 프로젝트는 Momul, Nyansiongo (이상 Rift Valley 서편), Ngere, Mungania (이상 Rift Valley 동편) 등 4개 지역에서 수행되었다. 사업대상지는 각각 차 수매센터가 위치한 곳으로, 농민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전체 사업비 509,000파운드 중에서 유니레버(립톤) 35.5%, DFID 45%, 케냐 차 개발위원회(Kenyan Tea Development Agency, KTDA) 19.5%의 재정지원으로 수행되었다. 동 사업은 사업의 수혜자인 농민이 직접 학교 운영과

3) 유니레버의 브랜드 중 하나로, 세계 최대의 차(tea) 판매 브랜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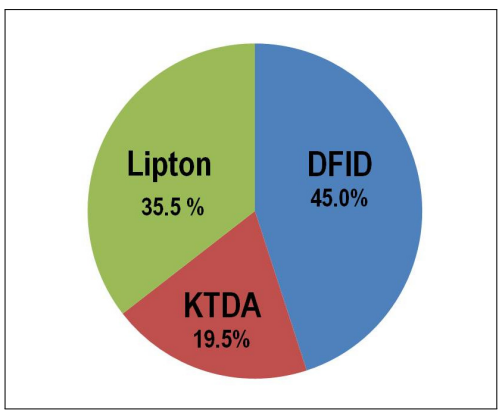
교육과정(관찰, 실습, 평가)에 참여하는 피교육자 중심 접근방식(learner-centered approach)으로 추진되었다. 농업기술 지도사(extension agents), 연구자, 외부 참여자는 '교육자'로서가 아니라 중계자(facilitator)로서 역할을 하였으며, 이들은 꾸준한 대화와 강의, 현장방문 등을 통해 농민의 여러 가지 시도에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그림 2〉 The Farmer Filed School (FFS) Project 사업대상지



출처: Unilever

〈그림 3〉 The Farmer Filed School (FFS) Project의 예산지원 비율(2006-2008)



출처: Unilever

- KTDA(The Kenya Tea Development Agency): 케냐의 가장 큰 차(tea) 거래 기관으로 소농이 생산한 차를 구매하여 납품하는데, 동 사업에서는 FFS의 운영을 위한 농업기술 지도 역량강화에 중심 역할을 했다.
- 립톤(Lipton) : 립톤은 전세계 차 거래량의 12%를 수매하는 가장 큰 바이어이며, Rainforest Alliance의 인증을 거친 원재료를 조달하고 있다. 동사업을 통해 립톤은 품질과 생산량이 안정적인 소싱이 가능해졌다.
- DFID : 기초선 조사, 데이터분석, M&E 등을 담당했으며, 그 외의 기술적인 분석(토양분석, 조달, 농민 교육)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하는 역할을 했다.

① 1차년도 (2006년)

회의의 운영을 각 학교별 농민이 결정하였는데, 총 4개의 FFS 중 3개 학교는 찻잎을 따는 간격(plucking interval)에 따른 수확량의 비교 실험, 전정 이후 재성장기간까지 다른 높이로 수확하는 것(차 나무를 같은 높이로 맞추기 위해 새로운 싹을 자르는 것) 등과 같은 커리큘럼을 농민

들이 스스로 결정하여 추진했다. 특별과목으로는 차의 전체 공급채널(tea supply chain from field to cup), 시비법(fertiliser application), 화학제품의 안전한 이용법, 기계 전정(pruning), 문서 기록법 등에 관한 내용을 배웠다. 이러한 교육은 KTDA의 농업기술 지도사, 프로젝트 참여 전문가, 또는 외부 인력 등이 수행했다.

그리고 각각의 관심사에 따라 지방의 차 생산 공장이나, 대규모 시설, 대학(Egerton University), 케나 차 연구소(the Tea Research Foundation of Kenya), 다른 FFS 방문 등의 활동도 수행되었다. 또한 연구자들(KTDA 전문가 혹은 외부 전문가)이 현장을 농가 현장을 방문하여 토양 샘플을 채취, 비옥도 등의 차 적합성 분석을 수행했으며,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다.

② 2차년도(2007년)

2006년의 성공적인 활동으로 2007년에는 20개 FFS로 확대되었다. 신규 사업 참여농민을 대상으로 기초선 조사 항목에 대한 조정을 거쳤으며, 1차년도 성공을 경험한 농민들의 소득증대 경험을 바탕으로 1개 FFS는 자조그룹(self-help group)으로 등록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4개 공장, 농민 120명 대상을 기초선 조사를 수행했으며, 립톤에서 2015년까지 Rainforest Alliance의 인증을 받은 찻잎만 조달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③ 3차년도(2008년)

프로젝트의 종료(FFS 졸업생 배출) 이후 참여 농민의 절반이 농업기술, 지식, 생계 향상 등의 성과를 이루었으며, 특히 경작법에서 많은 기술 발전이 있었고 이러한 지식 전수를 통해 향후 지속적인 발전을 예상된다.

2) 사업의 성과 및 의의

동사업은 재정적·제도적 차원에서 개발도상국 국가기관이 담당할 수 없는 농업기술지도를 민관협력을 통해 농민의 기술 지도, 소득 증대 성과를 도출한 사업으로 의미가 있다. 기업(립톤)의 원재료 공급채널 확보를 통해 농민은 지속적으로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으며, 가정의 소득 증대에서 나아가 마을(커뮤니티), 지역의 소득 증대까지 이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KTDA는 농업기술지도에 확실한 역할을 담당했으며, 지역 주민의 의견이 주민위원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반영된 것이 성공의 핵심 요소로 조사되었다.

Ⅳ. 결론 및 도전과제

국제사회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최근 몇년간 CSR, CSV 등 다양한 기업활동 참여 방식을 통해 기업의 비즈니스 기회 확대와 개발도상국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여러 노력들이 있어 왔다. 시장경제의 확대로 경제발전에 있어 정부의 개입보다 민간기업의 역할과 규모가 다양해지고 커짐에 따라, 전통적으로 정부와 연관성이 있던 개발 사업, 예를 들어 기초 인프라인 물, 전기, 보건, 교육 등에 대해 이제는 시민사회와 시장참여자가 상당부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CSR, CSV의 한계는 여전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도전과제들이 남아있다.

첫째, 기업의 CSR, CSV 참여 의사결정 구조이다. 기업은 이윤추구를 가장 큰 목표로 한다. 새로운 시장의 창출을 통한 비즈니스 기회확대 등 여러 기업의 성공 사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CSR, CSV 활동은 기업 최고경영자의 의사결정에 따른다(Petrenko, Oleg, V. et at, 2016). 경영진을 설득하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채널(혹은 전담 부서)을 기업 내에 구축하는 것이 사업의 지속성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다.

외부와의 파트너십이라는 것은 일회성의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추진한다는 개념이라기보다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상호간의 신뢰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이해관계자간의 채널일 수도 있고, 파트너 국가간의 채널을 의미하기도 한다. 최근 ISO 26000이나 사회적책임투자(SRI) 등 기업의 사회적 공헌과 관련한 각종 규제 방법들이 보완, 제시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기업의 의사결정을 강제할 수 있는 제도는 없다.

둘째, CSR 활동에 있어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 차이가 여전히 존재함을 인지해야한다. 기업이 개발도상국에서 비즈니스 활동 중에 나타나는 경제, 사회 및 환경적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자발적 이니셔티브가 부족하다. 이럴땐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한계에 봉착하게 된다(EDCF, 2012). 기업의 CSR, CSV 계획과 정책이 개도국 정부의 사회문제 해결 우선사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이를 통제할 권한과 책임이 어디에 있는가에 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셋째, CSR, CSV 활동이 SDGs 달성에 기여하는 실증적인 증거가 부족하다. 앞서 살펴본 유니레버의 'Unilever Sustainable Agriculture Code'와 같이 자사 제품의 생산-판매까지 전체 가치사슬 단계별 품질 관리를 위한 표준(standard)을 설정하고, 이를 통한 경영이 가능한 기업은 많지 않다. 자사 내에 연구 역량을 갖추거나, 거액으로 아웃소싱할 수 있을만한 재무적 역량이 못미치는 기업의 참여를 확산시키기 위해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과학적인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해당 분야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기업의 고유 활동(비즈니스)에도 이익이 된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민간기업의 자발적이고 지속가능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환경 조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민간기업을 육성하고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각종 정책적,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기업의 해외진출 제고를 위한 다양한 이해관계자간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확보하는데 지원해야한다. 기업의 입장에서 CSR, CSV는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공동으로 도출해야 지속가능한 것이다. 특히 개발협력 관점에서 사업 또는 프로젝트를 이해하고 성과관리를 하는데 기업과, 공여기관, 학계, 시민사회의 통합적 참여가 필요한 상황이다. 민관협력파트너십에 참여하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니즈를 충족시켜줄 때 해당 분야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음을 주지해야할 것이다.

〈참고문헌〉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2012.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개발”. 『EDCF Issue Paper』 Vol1. No.3. pp.1-8. 서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오수현. 2015.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달성을 위한 민간파트너십과 재원메커니즘”. 『개발협력이슈』 1: 3~19.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DFID. 2011. “The engine of development: The private sector and prosperity for poor people”. London: DFID, available at https://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67490/Private-sector-approach-paper-May2011.pdf (접속일: 2016.07.11)

Jane Nelson, Beth Jenkins, and Richard Gilbert. 2015. "Business and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Building Blocks for Success at Scal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Petrenko, Oleg V., Federico Aime, Jason Ridge, and Aaron Hill. 2016.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or CEO narcissim? CSR motivations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37:262-279

Porter, M. and M. R. Kramer. 2011. "Creating Shared Value". Harvard Business Review. Jan-Feb 2011:62-77

Pretty, J., G. Smith, K.W.T. Goulding, S.J. Groves, I. Henderson, R.E. Hine, V. King, J. van Oostrum, D.J. Pendlington, J.K. Vis and C.Walter. 2008. "Multi-year assessment of Unilever's progress towards agricultural sustainability I: indicators, methodology and pilot farm results". International Journal of Agricultural Sustainability 6(1):37-62

Rangan, V. K., M. Chu, and D. Petkoski. 2011. "Segmenting the Base of the Pyramid". Harvard Business Review. June 2011:113-117

Unilever. 2016. "Annual Report and Accounts 2015". London: Unilever, available at https://www.unilever.com/Images/annual_report_and_accounts_ar15_tcm244-478426_en.pdf (접속일: 2016.07.11)

World Bank. 2005. "World developm ǀ Climate for Everyone". Washingtong D.C. : World Bank, available at http://siteresources.worldbank.org/INTWDR2005/Resources/FNL_WDR_SA_Overview6.pdf (접속일: 2016.07.11)

World Bank Institute. 2006. "A School Feeding Program in Nigeria: Tetra Pak's Business and Development Goal". Washington D.C.: World Bank Institute

이수열. 2010. "CSR 3.0 시대로 진화하는 지속가능 경영". 대한상공회의소지속가능경영포털전문가칼럼. 2010.10.27.
http://www.csr-korea.net/upload/Board/1_CSR3.0.pdf (접속일: 2016.07.10)

Grow Asia homepage: www.growasia.org (접속일: 2016.07.10)

OXFAM homepage: https://www.oxfam.org/en/research/behind-brands (2016.7.10일 접속)

World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homepage: http://www.wbcsd.org/home.aspx (접속일: 2016.07.10)

[참고] GROW ASIA 사업 소개

1. 베트남

① 주요 협력 분야
- ▸ 지역 이해관계자의 협력 확대
- ▸ 식량안보 및 경제성장 목표 달성을 위한 소농의 참여 및 기여 확대
- ▸ 작물별 파트너십 기회 확대(베트남 커피 협력위원회의 경험 공유)

② 주요작물 및 분야 : 커피, 옥수수, 향채류(고추), 수산물, 과채류, 차, Agro-Finance

③ 주요 대상지역 : Dac Lac, Dac Nong, Gia Lai, Lam Dong

④ 주요 협력 파트너
- ▸ 공공기관 : 베트남 농업농촌부(MARD) 산하 청 및 관련기관
- ▸ 공여기관 : IFAD, International Finance Cooporation, World Bank 등
- ▸ 민간기업 : Agribank, Bayer, Cargil, Monsanto, NEdcoffee, Nestle, PepsiCo, Rabobank, Syngenta, Unilever등 33개사
- ▸ NGO : 4C Association, Rainforest Alliance, SNV, UTZ Certified 등

2. 미얀마

① 주요 협력 분야
- ▸ 시범사업의 확대 및 운영위원회 활성화
- ▸ 작물별 운영위원회 확대
- ▸ 지역 이해관계자(특히 시민사회 및 농민그룹)의 협력 확대
- ▸ 공여기관 등의 외부 파트너십 강화

② 주요작물 및 분야 : 커피, 낙농, 원예, 설탕, Agro-Finance, 모바일서비스, 지속가능한 생산

③ 주요 협력 파트너
- ▸ 공공기관 : 미얀마 농업관개부, 축수산 및 농촌개발부, 국가경제사회자문위원회(NESAC)
- ▸ 공여기관 : IFAD, IFC(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USAID, FAO, Netherlands Economic Mission to Myanmar
- ▸ 민간기업 : Adama, ANZ Bank, Awba Group, DuPont, Nestle, PepsiCo, Syngenta, Unilever 등 22개사

3. 인도네시아

① 주요 협력 분야
- ▸ 정부의 국가발전계획과 인도네시아의 지속가능한 농업개발파트너십(PISAgro :Partnership for Indonesia's Sustainable Agriculture) 운영계획의 우선순위 합치
- ▸ 주요 작물 가치사슬의 액션플랜 수립
- ▸ 글로벌 및 지역파트너 기관간 협력 확대
- ▸ 운영위원회간 공급채널 확대

② 주요작물 및 분야 : Agri-Finance, 코코아, 커피, 옥수수, 낙농, 원예, 팜오일, 감자, 쌀, 고무, 콩

③ 주요 협력 파트너
- ▸ 공공기관 : 인도네시아 농업부, 재무부, 산업부, 무역부
- ▸ 공여기관 : DFAT, World Bank 등
- ▸ 민간기업 : Bank Andara, Bank BNI, BASF, DuPont, Nestle, Monsanto, Syngenta, Unilever 등

4. 필리핀

① 주요 협력 분야
- ▸ 필리핀 농촌개발프로젝트(the Philippines Rural Development Project, PRDP)에 따른 주요 작물 선정, 사업계획 수립
- ▸ 지역의 민간부문, 필리핀을 기반으로 하는 이해관계자간 네트워크 구축
- ▸ 이해관계자 확대를 위한 사무국과의 파트너십 제고

② 주요작물 및 분야 : 검토 중

③ 주요 협력 파트너
- ▸ 공공기관 : 필리핀 농업부
- ▸ 공여기관 및 NGO : ADB, GIZ, OXFAM, USAID
- ▸ 민간기업 : DuPont, Nestle, Syngenta, Unilever 등

출처: www.growasia.org

III

KOICA 개발협력자료 이용

1. KOICA ODA도서관 이용 안내
2. KOICA 2016년도 2분기 발간물 목록
3. KOICA 통합원조정보 공유시스템 이용 안내
4. 국제개발협력 원고 기고 방법 안내
5. 국제개발협력 원고 집필 규정

한국국제협력단(KOICA) ODA도서관

한국국제협력단 ODA도서관은 국제개발협력 및 개발도상국 관련 전문도서, 정기간행물, 보고서 등을 수집·정리하여 국제개발협력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개발도상국과의 우호협력적 관계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관련 자료에 중점을 두고 운영·관리 하고 있습니다.

ODA도서관은 개가제로서 누구나 자유로이 이용 가능 하시며 자료보유현황 및 열람시간, 자료열람 방법 및 이용범위, 자료검색, 자료 이용문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자료보유 현황(2016년 7월 현재)

- 한국국제협력단 발간 보고서 : 9,353권
- 국내/국외 학술DB : 8종
 ※ 구독목록은 'KOICA ODA도서관 2016년도 학술DB(국내/국외) 구독 목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도서 : 34,843권
- 비도서자료 : 1,641점

2. 자료 열람시간

구분	시간	비고
평일(월~금)	09:00~18:00	점심시간 11:50~12:50 제외 토요일 및 공휴일 휴관

3. 자료 열람 방법 및 이용범위

- 직원 : 열람, 대출, 복사 가능
- 외부이용자 : 열람, 복사 가능
 (단, 자료 복사는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가능하며, 한국국제협력단 발간 원문 공개파일은 외부이용자 모두 열람 및 출력 가능)

4. 자료 검색

- KOICA 홈페이지(http://www.koica.go.kr) → ODA도서관
- KOICA ODA도서관 홈페이지(http://lib.koica.go.kr)

5. 자료 이용문의

- 전화 : 031-7400-618, 619
- 이메일 : library@koica.go.kr

KOICA ODA도서관 2016년도 학술DB 목록

'학술DB 통합검색'은 ODA도서관 → 자료검색 → '학술DB' 부분에서 검색 할 수 있습니다.

번호	DB명		내용	비고
1	KISS 한국학술정보 논문검색서비스 Koreanstudies Information Service System	한국학술정보 (KISS)	국내 학회지, 학위논문 원문검색시스템으로 1,324개 학술기관의 학술지 및 논문(1,790여종)을 창간호부터 최근호까지 원문과 서지정보를 제공	단내에서 원문 이용 가능
2	DBpia	누리미디어 (DBpia)	국내 학회, 협회 및 출판사 367개 기관에서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1,921여종의 원문과 서지정보를 제공	단내에서 원문 이용 가능
3	Academic Search Complete	Academic Search Complete	ASC(Academic Search Complete) 예술, 문학, 철학, 역사, 교육학, 행정학, 법학, 사회학, 심리학 등 인문사회과학을 비롯하여 생물, 환경, 수학, 물리, 화학, 지리, 컴퓨터, 전기, 전자, 토목공학, 재료공학, 의학 등 광범위한 다 학문분야 (Multi-disciplinary) 원문 데이터베이스 학문 전분야에 걸친 13,800여종의 해외 학술저널 색인, 초록정보를 바탕으로 그 중 9,100여종의 저널에 대한 원문 제공	단내에서 원문 이용 가능
4	Business Source Complete	Business Source Complete	BSC(Business Source Complete) 비즈니스 분야 연구정보원으로서 경영/경제/회계/금융/무역/행정 등 비즈니스 전반의 3,800여종의 학술저널 및 매거진을 비롯한 21,000여종의 출판물에 대한 원문 제공 전세계 200여 국가 1,000여종의 국가보고서를 비롯하여 5,600여종의 산업보고서, 시장보고서, Case Studies, Company Profiles등 폭넓은 연구정보 수록	단내에서 원문 이용 가능
5	ECC	EBSCO Customized Collection(5종) – Oxford Development Studies – Review of Political Economy – Journal of Development Studies – 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 Tropical Medicine & International Health	ECC(EBSCO Cutomized Collection)을 통해 5종 저널구독 Oxford Development Studies, Review of Political Economy, Journal of Development Studies, 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Tropical Medicine & International Health	단내에서 원문 이용 가능
6	OECD iLibrary	OECD iLibrary	OECD Publishing에서 발행하는 단행본, 정기간행물, 통계자료 원문 구독 OECD Books(17종, 5,710권), Papers(18종), Statistics(34종), IEA Statistics(10종), 무료 컨텐츠(64종) 원문 제공	단내에서 원문 이용 가능

번호	DB명		내용	비고
7	OECD	OECD OLIS Net	OECD의 보고서, 출판물, 통계, 회의자료 등 주요 자료를 OECD 회원국 중 입증된 기관에게만 제공	
8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EIU Country Reports	EIU사에서 제공하는 국가별 경제, 정치, 국가 기본정보 및 분석 리포팅 서비스. 도서관에서 구독하는 국가에 한해서만 열람가능	로그인 후 이용

KOICA 2016년 4월~2016년 7월 발간물 목록

번호	간행물명	발간부서	발행년	발행처
1	일본 JICA 출장 결과보고서: JICA 지역센터 운영현황 조사	ODA교육원	2016	한국국제협력단
2	21세기 한국-우즈베키스탄 친선 아동 전문병원 의료인력 역량강화 사업 (2015-2020 / 700만불) 2차 예비조사 결과보고서 2016.2	교육보건팀	2016	한국국제협력단
3	이라크 어학실습실 지원사업 PMC 용역 초청연수 결과보고서 2010.6	교육팀	2010	한국국제협력단
4	KOICA의 체제전환국 개발협력사업 성과연구: 유럽연합의 체제전환국 지원과의 비교 2016.2	기획조정팀	2016	한국국제협력단
5	협동조합 분야(2개 사업) 통합 사업기획 조사 및 ODA 모델 개발 용역 최종보고서 2016.6	농어촌개발팀	2016	한국국제협력단
6	해외긴급구호의 법적 기반 및 운영체계 관련 주요 공여국 사례연구 2016.2	다자협력인도지원실	2016	한국국제협력단
7	캄보디아 국가 지급결제시스템 구축사업 심층기획조사 결과보고서 2016.4	동남아시아1팀	2016	한국국제협력단
8	미얀마 IT기반 통계국 역량강화사업 통계 DB 관리 및 시스템 구축 용역 2015.9	동남아시아1팀	2015	한국국제협력단
9	캄보디아 밧티에이병원 역량강화사업 최종결과보고서 2015.6	동남아시아1팀	2015	한국국제협력단
10	캄보디아 밧티에이병원 역량강화사업 PMC 용역 최종보고서 2015.6	동남아시아1팀	2015	한국국제협력단
11	미얀마 간선도로망 마스터플랜 수립사업 최종보고서: 제3권 도면집 - (1)간선도로망 도로대장 2015.8	동남아시아1팀	2015	한국국제협력단
12	미얀마 간선도로망 마스터플랜 수립사업 기술자문용역 최종보고서 2015.9	동남아시아1팀	2015	한국국제협력단
13	미얀마 간선도로망 마스터플랜 수립사업 최종보고서: 제3권 도면집 - (2)타당성조사 2015.8	동남아시아1팀	2015	한국국제협력단
14	미얀마 간선도로망 마스터플랜 수립사업 최종보고서: 제2권 부록 - (2)추가과업 자료 및 기타 2015.8	동남아시아1팀	2015	한국국제협력단
15	미얀마 간선도로망 마스터플랜 수립사업 최종보고서: 제2권 부록 - (1)워크샵 자료 2015.8	동남아시아1팀	2015	한국국제협력단
16	Master Plan for Arterial Road Network Development in Myanmar: Volume Ⅰ: Main Text - (2) Feasibility Study 2015.8	동남아시아1팀	2015	한국국제협력단
17	Master Plan for Arterial Road Network Development in Myanmar: Volume Ⅰ: Main Text - (1) Master Plan 2015.8	동남아시아1팀	2015	한국국제협력단
18	미얀마 간선도로망 마스터플랜 수립사업 최종보고서: 제1권 본보고서 - (2)타당성조사 2015.8	동남아시아1팀	2015	한국국제협력단
19	미얀마 간선도로망 마스터플랜 수립사업 최종보고서: 제1권 본보고서 - (1)마스터플랜 2015.8	동남아시아1팀	2015	한국국제협력단

번호	간행물명	발간부서	발행년	발행처
20	캄보디아 시엠립 주립병원 역량강화사업 PMC 용역 종료보고서 2010.10.27 ~ 2013.04.30	동남아시아1팀	2013	한국국제협력단
21	Construction of Spatial Database System On North Coast of Java Island, Indonesia Final Report 2015.12	동남아시아2팀	2015	한국국제협력단
22	인도네시아 자바 북구해안 공간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사업수행경과자료 2015.12	동남아시아2팀	2015	한국국제협력단
23	인도네시아 자바 북구해안 공간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완료보고서 2015.12	동남아시아2팀	2015	한국국제협력단
24	몽골 광물자원 개발 인프라 구축 재원조달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사업 최종보고서 2016.4	동북아태평양팀	2016	한국국제협력단
25	The Project for Establishment of a Master Plan for the Mineral Resources and Infrastructure Development and Financing Requirements of Mongolia, Final Report 2016.4	동북아태평양팀	2016	한국국제협력단
26	몽골 광물자원 개발 인프라 구축 재원조달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사업 최종보고서 2016.4	동북아태평양팀	2016	한국국제협력단
27	몽골 친환경 농업생산성 향상 지원사업 PMC 용역 최종보고서 2015.12	동북아태평양팀	2015	한국국제협력단
28	수단 농업기술훈련원 공사완료 보고서	동아프리카팀	2016	한국국제협력단
29	수단 주혈흡충 및 소외열대질환퇴치사업 사업수행계획서 2015.12.30 ~ 2018.12.31	동아프리카팀	2015	한국국제협력단
30	수단 주혈흡충퇴치 2차 사업 (2011-2014/180만불) 종료평가 결과보고서 2015.12	동아프리카팀	2015	한국국제협력단
31	The Second Phase of the Project for Combating Schistosomiasis in Sudan Final Evaluation Report 2015.12	동아프리카팀	2015	한국국제협력단
32	우즈벡 응급후송시스템 구축사업 (2007-2008/205만불)	보건의료팀	2009	한국국제협력단
33	투르크메니스탄 토지등록 및 지적제도 현대화 사업 실시협의 결과보고서 2010.7	산업에너지팀	2010	한국국제협력단
34	포용적 성장에 대한 논의동향 및 개도국 포용적 성장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2015.12	연구개발팀	2015	한국국제협력단
35	Post-2015체제의 개발재원 논의분석 2015.12	연구개발팀	2015	한국국제협력단
36	개발협력사업 성과관리 계량화 연구: 표준지표(수혜자수) 활용을 중심으로 2015.12	연구개발팀	2015	한국국제협력단
37	사랑해, 파라과이: KOICA 해외봉사단원 활동경험담	월드프렌즈 운영팀	2016	한국국제협력단
38	(2015) 월드프렌즈코리아 통합 만족도조사 결과보고서 2016.3	월드프렌즈총괄팀	2016	한국국제협력단
39	해외봉사단 효과성 증진을 위한 봉사단 분야별, 직종별 추진전략 2016.4	월드프렌즈총괄팀	2016	한국국제협력단
40	월드프렌즈사업 성과관리 지표개발 연구 2016.3	월드프렌즈총괄팀	2016	한국국제협력단
41	(2010-2014) Collection of the Best Theses by Indonesian Participants of KOICA Master Degree Programs	인도네시아 사무소	2015	한국국제협력단

번호	간행물명	발간부서	발행년	발행처
42	Establishment of Educational Center for e-Government in Azerbaijan Final Report 2015.3	중동중앙아팀	2015	한국국제협력단
43	아제르바이잔 전자정부 교육센터 구축사업 종료보고서 2015.3	중동중앙아팀	2015	한국국제협력단
44	Follow-up Project: Automation Project for Intellectual Property Management System of Azerbaijan Project Completion Report 2015.10	중동중앙아팀	2015	한국국제협력단
45	아제르바이잔 지식재산권 관리시스템 구축 사후관리 용역 종료 보고서 2015.10	중동중앙아팀	2015	한국국제협력단
46	키르기즈공화국 선거역량 강화사업 실시협의 결과보고서 2014.10	중동중앙아팀	2014	한국국제협력단
47	우즈베키스탄 시범온실 지원사업 준공도서 2013.4	중앙아시아.CIS팀	2013	한국국제협력단
48	우즈베키스탄 직업 훈련원 건립사업 CM 업무 완료 보고서: 건축부문 2010.7.12 ~ 2012.5.30	중앙아시아.CIS팀	2012	한국국제협력단
49	우즈베키스탄 타쉬켄트시 직업훈련원 건립사업 PMC 용역 종합결과 보고서 2012.8	중앙아시아.CIS팀	2012	한국국제협력단
50	System Guide of the Project for the improvement of the Land Cadastral System in Azerbaijan	중앙아시아.CIS팀	2011	한국국제협력단
51	Final Report of the Project for the improvement of the land cadastral system in Azerbaijan	중앙아시아.CIS팀	2011	한국국제협력단
52	Final Report of the Project for the improvement of the land cadastral in Azerbaijan 2011.1	중앙아시아.CIS팀	2011	한국국제협력단
53	The Feasibility Study on the Baku Bay Marine Bridge Construction in Azerbaijan Interim Report 2011.2	중앙아시아.CIS팀	2011	한국국제협력단
54	아제르바이잔 바쿠만 해상교량건설 타당성조사 중간보고서 2011.2	중앙아시아.CIS팀	2011	한국국제협력단
55	투르크메니스탄 토지등록 및 지적제도 현대화 사업 착수보고서 2011.5	중앙아시아.CIS팀	2011	한국국제협력단
56	아제르바이잔 지적제도 개선사업 시스템 최종보고서	중앙아시아.CIS팀	2011	한국국제협력단
57	우즈벡 Kaparask 식수공급개선사업 기자재 설치 및 운영자문용역 기술자문보고서 2011.5	중앙아시아.CIS팀	2011	한국국제협력단
58	아제르바이잔 지적제도 개선사업 항공사진측량 용역 최종보고서	중앙아시아.CIS팀	2010	한국국제협력단
59	캄보디아어 1	캄보디아 사무소	2016	한국국제협력단
60	캄보디아어 2	캄보디아 사무소	2016	한국국제협력단
61	캄보디아어 3	캄보디아 사무소	2016	한국국제협력단
62	우즈베키스탄 시범사업 기자재 및 시스템 공급용역 Billing System 개발 완료 보고서 (보안시스템 적용) 2014.1	한국국제협력단	2014	한국국제협력단

번호	간행물명	발간부서	발행년	발행처
63	이란 자동차정비 직업훈련원 지원사업 PMC 용역 최종사업관리 결과보고서 2012.9	한국국제협력단	2012	한국국제협력단
64	투르크메니스탄 토지등록 및 지적제도 현대화 사업 최종보고서 2012.6	한국국제협력단	2012	한국국제협력단
65	아프가니스탄 바그람 의료 · 직훈 사업(병원) 4/4분기 보고서 2011.1	한국국제협력단	2011	한국국제협력단
66	아프가니스탄 바그람 직업훈련원 운영(PMC) 용역사업 3분기 보고서 2011.10	한국국제협력단	2011	한국국제협력단
67	아프간 파르완주 PRT 기지운영 기술자문 용역 최종보고서 2010.12	한국국제협력단	2010	한국국제협력단
68	우즈베키스탄 호레즘주 열공급시스템 개선사업 최종결과보고서 2010.12	한국국제협력단	2010	한국국제협력단
69	카랴파스크 식수공급개선사업 (2009-2010/150만불)	한국국제협력단	2010	한국국제협력단
70	우즈베키스탄 전염병관리 역량강화사업 (2009-2010/300만불)	한국국제협력단	2010	한국국제협력단
71	아프간 바그람 의료 · 직훈사업(병원) 최종보고서 2010.12	한국국제협력단	2010	한국국제협력단
72	아프가니스탄 한국병원 등 신축공사 공사현황 보고서 2009.12	한국국제협력단	2009	한국국제협력단
73	아프가니스탄 재건지원 병원 등 신축공사 순회 감리 보고서	한국국제협력단	2009	한국국제협력단
74	Feasibility Study for Upgrading Water Intake Structures at Northern Rivers and Improvement of Absheron Main Canal for Irrigation in Azerbaijan: Invitation of Azerbaijan Officials to the Training Courses on Irrigation Development Techniques and Management, 25th September(Sat.) ~ 9th October(Sat.) 2	산업에너지팀	2010	한국국제협력단
75	사회적 경제 접근법을 활용한 민관협력사업 혁신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2016.5	혁신파트너사업팀	2016	한국국제협력단
76	사회적 경제 접근법을 활용한 민관협력사업 혁신방안 연구용역: 국내외 사례집 2016.5	혁신파트너사업팀	2016	한국국제협력단

KOICA 통합원조정보공유시스템 이용

대한미국 대개도국 무상원조 전담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은 ODA관련 지식과 노하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유관기관 간 효율적으로 공유하기 위해 "ODA원조정보공유시스템(www.oda.go.kr)"을 구축하여 서비스를 개시하였습니다.

정부부처, 공공기관, 연구기관, 대학, NGO 및 민간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원조정보 공유체계 구축을 위해 2010년 2월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이들은 원조사업 관련 정보 수집시 불편함이나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70%)하였으며, 이는 △원조관련 정보의 분산(41%), △필요한 정보를 어디서 찾아야 할지 모름(26%), △관련기관 및 단체의 정보 비공개(22%)에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통합원조정보공유시스템 구축완료 후 참여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참여를 희망한다는 응답이 94%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ODA원조정보의 공유가 절실히 요망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축된 동 시스템은 정부부처, 공공기관, NGO및 민간기업 등 ODA 유관기관 간 서로 원조정보를 등록, 조회, 평가, 검색 및 공유할 수 있으며, 중복사업 추진 방지를 위해 기관별 연간 사업계획 공유, 정보 Q&A, 커뮤니티 개설 및 이슈토론방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관 간 공유가 가능한 자료로는 원조정책, 사업계획, 사업수행 및 평가관련 정보, 선진원조 동향, 연구보고서, 국별, 지역별, 분야별 정보, 사업수행 가이드라인, 평가 및 통계 자료 등입니다. 또한, 한국국제협력단은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 대한 무상원조사업 수요조사를 동 시스템을 통해 상시 접수 할 예정으로, 우량사업에 대한 적기의 검토와 수행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나아가 ODA원조정보공유시스템은 ODA 유관기관 간 원조정보 및 지식, 노하우의 공유를 가능하게 하여 우리나라의 원조 분절화 방지 및 OECD개발원조위원회 가입에 따른 원조 선진화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회원제로 운영되는 동 시스템의 회원으로 가입하려면 각 기관 담당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 신청을 완료한 후, 기관 신분증 또는 재직증명서를 아래의 팩스 번호로 송부해주시면 됩니다.

- E-mail : oda@koica.go.kr
 FAX: 031-7400-658
- ODA원조정보 공유시스템: www.oda.go.kr

『국제개발협력』 원고 기고 방법

한국국제협력단은 계간지 국제개발협력에 게재할 원고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주제는 국제개발협력 관련 이슈 중 아래에 정한 내용이어야 하나, 이 외에도 최근 국제사회 및 우리나라에서 논의되는 국제개발협력 관련 주제도 환영합니다.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의 발전과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국민의 인식제고를 위해 국제협력사업 종사자 및 국제협력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투고를 기대합니다.

Ⅰ.『국제개발협력』 발간 목적

『국제개발협력』은 공적개발원조(ODA) 관련 이슈뿐만 아니라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한 모든 제반 문제에 대한 이론과 정책대안을 모색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OECD/DAC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국제개발협력 이슈들을 알리고 이에 대한 우리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모색하는 장이 되도록 하겠다.

Ⅱ.『국제개발협력』 원고게재 절차

기고 → 접수 → 심사 → 게재

1. 기고 및 접수

- 기고 및 접수는 E-mail 전송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우편으로도 접수가능하다. 단, 우편접수시에는 논문이 원본 파일이 저장된 CD 1대를 동봉한다.

 Email: callforpapers@koica.go.kr

 Tel: (+82)31-740-0556 FAX: (+82)31-740-0682

 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 한국국제협력단 연구개발팀 (13449)

- 원고접수는 각 호의 원고마감일에 따른다.

호	개발협력이슈 주제	원고마감일
2016년 3호	무역을 위한 원조(AfT)와 ODA	2016년 8월 31일

『국제개발협력』 원고 집필 규정

Ⅰ. 원고 제출 및 게재

1. 『국제개발협력』은 공적개발원조(ODA) 관련 이슈뿐만 아니라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한 모든 제반 문제에 대한 이론과 정책대안 모색에 관한 연구논문을 대상으로 하며 논문의 성격 및 형태는 순수이론적인 논문, 실증분석논문, 사례연구, 응용연구 및 정책분석 등 방법론상의 제약을 두지 않는다.

2. 제출 원고는 순수학술논문이어야 하며 다른 곳에 게재되었거나 게재될 계획이 없는 창작 글이어야 한다. 단 제출된 원고가 편집방향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국제개발협력』 편집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원고를 반려할 수 있다.

3. 『국제개발협력』은 매년 분기별로 네 차례 발간한다. 매호의 원고는 출판일로부터 1개월 전에 접수된 것에 한하며, 매호의 원고마감일은 직전 호의 국제개발협력지에 별도 안내된다.

4. 원고는 『국제개발협력』 편집위원회가 별도로 정한 '원고집필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이를 따르지 않은 원고는 수정을 위해 저자에게 반환된다.

5. 원고 제출시 연구자는 영문 또는 국문초록이 포함된 논문게재신청서(별지서식 1호)와 원고를 한국국제협력단 연구개발팀 전자메일 (callforpapers@koica.go.kr)로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우편으로 제출한다.

> 전자메일 : callforpapers@koica.go.kr
> 전화 : (+82)31-740-0556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 한국국제협력단 연구개발팀 (13449)

6. 제출된 원고의 게재여부는 소정의 비공개 심사를 거쳐 『국제개발협력』 편집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며 게재 승인을 받은 논문의 저작권은 협력단에 귀속된다.

7. 협력단은 『국제개발협력』 편집 제반규정에 따라 교정 및 수정 등의 편집권한을 갖는다.

8. 원고 게재가 결정된 원고 제출자가 별쇄본을 요구할 경우 별도의 비용을 납부해야한다.

9. 게재희망 원고 중 외부의 연구지원을 받은 원고는 그 사실을 밝혀야 한다.

10. 공동집필인 경우에는 대표저자와 공저자를 명기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 접수된 원고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Ⅱ. 원고 작성의 일반적 요령

1. 원고 분량

1) 원고는 표지, 목차, 표 또는 그림 일체를 제외한 기타 부분(참고문헌 산입)에 대해 200자 원고지 기준 100매로 제한한다.

2) 원고 분량이 본 규정보다 지나치게 초과 또는 미달하는 경우, 본지 편집위원회가 저자에게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원고분량의 경우 200자 원고지 3.5매를 A4 1매로 산정한다.

2. 원고 구성

1) 원고는 표지, 국문(영문)요약, 주제어(3~5개), 본문, 참고문헌, 순서로 구성한다.

2) 표지에는 논문제목, 목차, 필자의 이름, 소속, 연락처(이메일 · 전화 · 팩스), 간단한 필자소개를 명기해야 한다. 필자가 복수일 경우에는 횡렬로 기재한다. 감사의 말이나 연구비 수령 사실은 각주로 기재한다.

3) 본문은 논문 제목을 첫머리에 기재하는 것으로 시작하며, 필자를 알아볼 수 있게끔 하는 표시나 서술은 삼가야 한다.

4) 본문과 각주에서 출전을 표시할 때는 괄호를 이용해 약식으로 언급하고, 완전한 문헌정보는 논문 말미의 〈참고문헌〉에 포함시킨다. 참고문헌은 새로운 면에서 〈참고문헌〉이라는 제목을 단 후 시작한다.

5) 각주는 꼭 필요한 것만 달도록 하여, 가급적 10개 내외로 최소화시킨다.

6) 표와 그림은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1) 표와 그림의 번호는 "〈표 1〉 · · ·"과 "〈그림 1〉 · · ·"과 같은 형식으로 순서를 매겨서 삽입한다.
 (2) 설명주는 "주:"로 시작하고, 출처는 "출처:"로 시작하여, 표나 그림의 아래에 적는다. 범례도 그림의 하단에 표시한다.
 (3) 표 속의 칸과 행에는 적절한 범주명을 반드시 넣어주어야 한다.
 (4) 그림은 색을 넣어 그려도 좋으나, 인쇄 시에는 흑백으로만 표현됨에 유의 한다.

7) 원고의 각 쪽에는 반드시 쪽번호를 표기해야 하며, 표지인 첫 페이지를 제외한 다음 페이지부터 시작한다.

3. 원고의 형식

1) 원고는 '한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작성하며, 편집체계는 다음과 같다.
: 글자크기 13p, 줄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머리말 및 꼬리말 15

2) 본문 서술의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장 · 절 · 항 · 목의 번호는 " Ⅰ .", "1.", "1)", "(1)"의 순차로 매긴다.
(2) 강조어는 ' ', 인용구는 " "로 둘러싼다.

4. 저자명 표기

1) 저자는 제1저자를 제일 처음 명기하며, 공동저자는 논문 기여도를 고려하여 가나다 순서로 명기한다.

5. 표 및 그래프 작성

(1) 제목은 "〈표 1〉…"과 같은 형식으로 표나 그림의 위에 적는다.
(2) 설명주는 "주:"로 시작하고 출처는 "자료:"로 시작하여, 표나 그림의 아래에 적어 놓는다. 범례도 그림의 하단에 표시한다.
(3) 표와 그림의 길이는 가로 113mm를 초과할 수 없다.

Ⅲ. 전거 표시 요령

1. 전거 표시 요령은 한국사회학회 전거 표시 요령을 준용한다.

2. 전거는 저자명과 간행연도를 반드시 표기하고, 필요시 인용 페이지를 덧붙여 기재한다. 같은 저술을 되풀이 인용할 때에도 그 방식은 같다.

구체적인 전거표기의 예는 아래와 같다.

(1) 저자명은 서술의 흐름에 따라 본문에 노출시킬 수도 있고, 괄호 속에 넣어야 할 경우도 있다.
[예1] "…이상백(1949: 23)…"; [예2] "…라 했다(이상백, 1949: 23)."

(2) 외국인 저자명을 본문에 노출시킬 경우, 한글로 먼저 표기한 후 괄호 속에 원어로 표기한다. 또한 외국인 저자명을 본문에 노출시키지 않을 경우, 번역서와 원서에 관계없이 저자명은 원어로 표기한다.
[예] "…밀스(Mills, 1956)"

(3) 2인 공동저술일 경우, 두 저자명을 중간점으로 구분하고 항상 병기한다.
[예] "…(이상백 · 김채윤, 1966)"

(4) 3인 이상의 공동저술일 경우, 첫 번째 전거표기에서는 모든 저자의 이름 제시하고 그 다음부터는 "외"(et, al.)를 사용한다.
[예] "…(문승규 · 윤근섭 · 한상복, 1967)"; "…(문승규 외, 1967)"

(5) 출간예정인 저술은 "출간예정"(forthcoming)을, 미간행물은 "미간행"(un-published)을 명기한다.
[예] "…(김일철, 1999 출간예정)"; "…(Lee, forthcoming)"

Ⅳ. 참고문헌 작성 요령

1. 참고문헌 작성 요령은 한국사회학회 참고문헌 작성요령을 준용한다.

2. 참고문헌의 나열은 본문에 인용 또는 언급된 것만으로 제한한다. 먼저 한국어 문헌을 저자명의 가나다 순으로 제시하고, 이어서 동양어 문헌을, 마지막으로 서양어 문헌을 알파벳 순으로 제시한다. 단, 중국어 및 일본어 저자명은 괄호 속에 영문 또는 한글 표기를 한다.
 1) 국문저서나 간행문명은『 』, 신문제호는「 」, 논문제목은 " "로 둘러싼다.
 2) 동일 저자의 저술을 두 편 이상 제시할 때는 출판연도 순으로 나열한다.
 3) 동일 저자의 저술로서 같은 연도에 출간된 것이 두 편 이상일 때는 제목의 가나다 또는 알파벳순으로 나열하되, 연도표기 뒤에 a, b, c, …를 부기하여 구별하도록 한다.
 4) 저자가 2인 이상일 때는 모든 저자의 이름을 기재해야 한다.
 5) 학술회의 발표문은 발표 장소와 날짜를 명기한다.
 6) 참고문헌 기재의 구체적인 예는 아래와 같다.

(1) 서적

- 이상백 · 김채윤, 1996.『한국사회계층연구』. 민조사.
- 차종천. 1990a. "동아시아와 서구의 사회이동 비교." 송호근 편.『노동과 불평등』. 나남출판. pp.125-149.
- _____. 1990b. "세대간 사회이동의 지역격차." 한국사회학회 편.『한국의 지역주의와 지역갈등』. 성원사. pp.193-122.
- 菅谷章 (스가랴 아키라). 1988.『日本社會政策史論』. 東京; 日本評論論社.
- 森田桐郎(Morita, Kirirora). 1987. "資本主義の世界的展開と國際勞力移動." 森田桐郎 編,『國際勞力移動』.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pp.1-54.
- Beger, Peter. L., and Xinhuang Michael Xiao (eds.). 1988. In Search of an East Asian Development Model. New Brunswick, NJ: Transaction.
- Cannel, Charles F., Peter Miller, and Louis Oksenberg. 1981. "Research on Interviewing Techniques." pp.389-437 in Sociological Methodology, edited by Samuel Leinhardt. San Francisco, CA: Jossy-Bass.
- Amsden, Alice H. 1989. Asia's Next Giant: South Korea and Late Industrializa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인근달 역. 1990.『아시아의 다음 거인: 한국의 후발 공업화』시사영어사).

(2) 학술지, 학위논문, 보고서, 인터넷문서

- 최재석, 1964. "한 · 일 · 중 동양 삼국의 동족 비교"『한국사회학』1(2): 88-99.
- Heckman, James. 1979. "Sample Selection Bias as a Specification Error." Econometrica 47(1): 153-162.
- Shin, Ho Hyun. 1990. "Schooling and Employment of Married Women in Korea." Unpublished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Hawaii.
- Krafcik, John F., and John Paul MacDuffie. 1989. "Explaining High Performance Manufacturing: The International Automotive Assembly Plant Study." Working Paper of International Motor Vehicle Program (IMVP),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MIT).
- Kollock, Peter, and Marc Smith. 1994. "Managing the Virtual Commons: Cooperation and Conflict in Computer Communities." http://www.sscnet.ucla.edu/soc/csoc/vcommons.htm.

(3) 번역서

- 베버, 막스(Weber, Max). 1990.『유교와 도교』이상율 역. 문예출판사.
- 클레그 · 히긴스 · 스파이비(Clegg, Stewart R., Winton Higgins, and Tony Spybey). 1994. “경제문화: 포스트 유교주의와 사회민주주의.” 공유식 · 김혁래 · 박길성 · 유흥준 편.『신경제사회와의 이해』. 역사비평사. pp.195-210.
- Weber, Max. 1951(1920). The Religion of China, translated by Hans H. Gerth. New York: Free Press.

연구자료 연구개발 2016-02-091

국제개발협력 2016년 제2호

발 행 2016년 7월
발 행 인 김 인 식
발 행 처 한국국제협력단
편 집 인 김수진 (연구개발팀 연구원), 박동현 (연구개발팀 인턴)
주 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 (우:13449)
전 화 031) 740-0556
팩 스 031) 740-0682
홈 페 이 지 http://www.koica.go.kr
인 쇄 동 화

[무단복제를 금함]

ISSN 2093-212X